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 guideline of TAEAN

Ⅱ . 가이드라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 guideline of TAEAN

II. 가이드라인

제 출 문

태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충남연구원장 윤 황

CONTENTS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II. 가이드라인

1	디자인 가이드라인-1	1.1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개요 008 1.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010 1.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056 1.4 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 075 1.5 공공용품 가이드라인 094 1.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08 1.7 분야별 체크리스트 122
2	디자인 가이드라인-2	2.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130 2.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 167 2.3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178 2.4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211
3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3.1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활용 개요 224 3.2 표준디자인(안) 233 3.3 특화디자인 239 3.4 시설물 보완 245
4	부록	4.1 회의록 252 4.2 참고문헌 257

01

디자인 가이드라인-1

- 1.1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개요
- 1.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1.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 1.4 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
- 1.5 공공용품 가이드라인
- 1.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1.7 분야별 체크리스트

1.1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개요

| 유형별 추구방안

- 태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따르며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다.

공공시설물
다양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지향하여 규모의 간결화, 설치의 통합화, 기능의 단순화, 구조의 견고화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
공공공간
보행권 확대와 활동 확대를 위한 안전성과 커뮤니티 증진을 지향하여 보행 환경 마련, 시설물의 조절 가능성, 안전을 위한 개방성, 공간의 연계성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
공공시각이미지
다양한 청취자에게 정보를 쉽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내시설물과 연계성, 쉽고 정돈된 정보의 체계성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활용
공공용품
해당 공공용품에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사용자의 편리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효율적인 정보매체 (이용방법 등) 활용, 단순한 기능 및 활용 방법을 유도하는 구조 및 색채 계획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활용

| 유형별 성격 및 규정항목

- 태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모두가 쉽고 편리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며, 범죄여려 없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을 추구하며 태안군 지역특색인 농어촌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각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형태, 구조, 설치, 배치, 재료, 색채를 비롯하여 조경 및 식재, 야간 조명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형별 분류

- 태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충청남도에서 정한 범위를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다루는 대상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상은 지역 특색에 맞게 보강하였다.
- 적용 범위는 크게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 외에 사적영역이면서 공공디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옥외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	옥외광고물
공동 사항/안전 및 편의		편의		
형태 및 구조 설치 및 배치 재료 및 색채	구조 및 배치 재료 및 색채 조경 및 식재 야간 조명	형태 및 구조 설치 및 배치 재료 및 색채 표기 요소	형태 및 구조 설치 및 배치 재료 및 색채	형태 및 규격 수량 및 설치 재료 및 색채 표기요소
지역별 특화 기준/농어촌, 해양관광지				

I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분류

분류		
공공 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 방음벽, 지하차도/지하보도(상단 캐노피 포함), 터널, 교량
	교통시설물	교통수단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보행시설물	보행로 등 보행 공간에 설치되어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시설물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행유도등, 볼라드, 안전펜스
	편의/휴게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와 휴게를 위한 시설물 쓰레기통, 벤치, 퍼걸러/그늘막, 재활용거치대
	공급시설물	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물 맨홀덮개, 지상기기(배전함, 분전함 등)
	가로녹지시설물	가로수 등 수목의 보호와 가로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안내시설물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정보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시설물 게시판, 안내표지판/이정표, 현수막게시대, 인포메이션 부스
	안전시설물	재해나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구명장비보관함
	임시시설물	사용인원이나 사용기간이 불규칙한 경우 임시로 활용되는 시설물 이동식화장실, 공사장 가림막
	광장	공중이 자유롭게 머물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조성된 넓은 공간 교통광장, 일반광장
공공 공간	공원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가로공간	교통기능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의 부설 및 방재, 도시 미관을 위한 공적 공간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항만공간	선박의 안전한 정박 및 해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연적,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임항시설(항구, 어항,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표기요소	태안군 시각이미지 구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요소 색채, 공통서체, 픽토그램
공공 시각 이미지	정보이미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필요한 유도시설물에 적용되는 시각이미지 주차안내, 버스·택시안내, 규제안내
	관광안내이미지	관광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에 표시되는 이미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관광유도표지판, 관광해설표지판
	용품이미지	공공용품에 표시되는 시각이미지 비상용품 관련이미지, 복지용품 관련이미지
	안전용품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품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미러시트/반사경, 안전손잡이
공공 용품	비상용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한 용품 구명장비/응급구급용품, 자동제세동기, 제설함
	복지용품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품 비상응여성/영유아용품, 기저귀교환대, 스마트폰충전소, 우산대여함, 전동휠체어충전소, 폭염대응생수

1.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개요

- 공공시설물은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에게 활동의 편의와 안전,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지역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공공시설물 규정항목

- 태안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물의 개요 및 일반사항, 규정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규정항목은 외관 형태, 재료 및 설치 방안을 담고 있으며 준수 여부의 강도에 따라 필수항목과 이행항목, 권장항목, 지양항목, 금지항목으로 구분된다.

개요	- 해당 시설물의 정의 및 파생되는 유형을 설명한다.
일반사항	- 규정할 항목이 아닌 해당 시설물의 일반적인 형태 및 용도를 설명한다.
안전 및 편의	- 시설물에 적용되는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형태 및 구조	- 이용자 및 공간 특성과 원활한 유지 관리에 부합되도록 크기, 기능, 구조 방식을 규정한다.
재료 및 색채	- 견고성과 안전성, 통합성을 전제로 사용되는 재료 및 마감 방법, 적용 색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설치 및 배치	- 구조적으로 견고함과 안전성을 갖추고 시설물의 설치 방식 및 설치 지점, 간격 및 배열,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특화	- 해안지역 또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예시	-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부합되는 기존 시설물 및 설치 사례를 보여준다.

I 적용대상

분류		
공공 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
		방음벽, 지하차도/지하보도(상단 캐노피 포함), 터널, 교량
	교통시설물	교통수단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보행시설물	보행로 등 보행 공간에 설치되어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시설물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행유도등, 볼라드, 안전펜스
	편의/휴게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와 휴게를 위한 시설물
		쓰레기통, 벤치, 퍼걸러/그늘막, 재활용거치대
	공급시설물	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물
		맨홀덮개, 지상기기(배전함, 분전함 등)
	가로녹지시설물	가로수 등 수목의 보호와 가로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안내시설물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정보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시설물
		게시판, 안내표지판/이정표, 현수막게시대, 인포메이션 부스
	안전시설물	재해나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구명장비보관함
	임시시설물	사용인원이나 사용기간이 불규칙한 경우 임시로 활용되는 시설물
		이동식화장실, 공사장 가림막

I 관계법령

참고법령	대중교통 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편의 시설물	공급 시설물	녹지 시설물	안내 시설물	도로 시설물	임시 시설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	○	○	○	○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	○	○		○	○	○	○
[도로설계기준]	○	○	○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권고 기준]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	○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	○
[보도공사 설계시공 메뉴얼]		○					○	

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요약

형태 및 구조

(필) 필수, (이) 이행, (권) 권장, (지) 지양, (금) 금지

- 불필요한 장식 요소는 최소화하고 기능에 충족하는 구조 및 형태로 간결하게 계획한다. (필)
- 동일한 도로나 구간에 설치할 때에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하여 연계성을 갖게 한다. (필)
- 간결한 구조로 하되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쉬운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나 중복되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거나 축약한다. (지) (권)
- 해안 등 경관이 양호한 장소에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조 및 부착물을 최소화한 구조를 채택한다. (권)
- 이용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서리 및 통로의 기둥은 원형이나 각지지 않은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다. (필)
- 사용수요에 따라 연속적으로 확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 윗부분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곡면이나 경사진 형태로 한다. (권)
- 관광지에 설치하는 경우, 장소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채택한다. (권)
- 지역별 특화된 형태보다는 일관된 형태와 방식을 갖추어야 할 용품은 통일된 형태 및 표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는 해풍 및 염분에 대응해 내구성이 강한 재질 및 도료를 사용하고 견고한 다층막 도장을 한다. (권)
- 변색이나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필)
- 시설물은 파손 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재료를 적용한다. (필)
-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하여 부착이 이루어지는 표면에 부착방지 물질을 도포하거나 별도 패드를 덧씌운다. (권)
-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다. (권)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표면의 광택을 줄이는 가공을 한다. (권)
- 부분적으로 반사시트나 도료 등을 적용, 차량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게 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권)
- 인접한 다른 가로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계획적인 색채를 적용한다. (권)
- 색상은 시설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도색이 용이한 지정색을 사용하며 도시형과 해안관광지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 목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도색보다 재료 자체색을 유지한다. (권)
- 재료 고유의 색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부를 도장할 때에는 무채색 계열 또는 재료색과 동일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교량 등 하부에 공간이 생성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방된 형태로 하며 주변에 조명시설과 안전시설물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 설치 공간 및 보행공간이 좁은 장소에서는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권)
-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구조는 개인 간 위생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간격을 두어 배치한다. (필)
-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나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권)
- 보도 유효 폭에 따른 적절한 크기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필)
- 설치 간격은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1.5m 내외로 한다. (필)
- 휠체어 사용자 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권)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설치한다. (이)
- 인구 이동 특성에 따라 이용이 집중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권)

관리

- 훼손되거나 마모된 부품은 즉시 교체한다. (필)
- 고유번호가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권)
-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시내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시외 지역에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은, 부근에 보안등 및 방범용카메라, 비상안전벨을 설치한다. (필)
- 추가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한 부분교체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필)
- 동일한 디자인이 단종된 경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유사한 형태, 크기, 색채, 재질의 유형으로 대체한다. (권)
- 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권장한다. (권)
- 야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목재부는 견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훼손 시 즉시 보수한다. (필)
-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 시키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관리 한다. (필)

세부가이드라인

1) 도시기반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은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말한다.

방음벽	지하차도/지하보도	터널	교량
■ 범죄예방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범용카메라, 보안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 유니버설	안전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태로 보행권을 강화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경계에는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하는 펜스를 설치한다. (이)
- 차도, 보도,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으로 관통하여 시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한다. (권)
- 낮에도 어두운 곳에는 상시 조명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한다. (필)
- 가로등은 보행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지점에 적합한 규모와 유형으로 설치한다. (권)

형태 및 구조

- 불필요한 장식 요소는 최소화하고 기능에 충족하는 구조 및 형태로 간결하게 계획한다. (권)
- 시설 주변이 녹지인 경우 입구와 출구가 주변 환경과 연속성을 갖도록 조성한다. (권)
- 부품의 부분교체를 할 수 있게 해체 및 재시공이 가능한 구조의 유형을 채택한다. (권)
- 중심 장소 및 관광지에 설치하는 경우 장소성과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권) (관광지)

재료 및 색채

-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특히, 해안지역에는 해풍 및 염분에 강한 재질 및 도료를 사용한다. (필)
-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보수·교체를 위해 부품 조달 및 대체가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주변 녹지와 연속성을 갖도록 식재를 적극 도입하고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교량 등에 하부 공간이 생길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방적인 형태로 하며 조명시설과 안전 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 (필)
- 도시기반시설물 하부 공간은 여러 사람의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 시설 및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권)
- 관광지 등 명소에는 야간경관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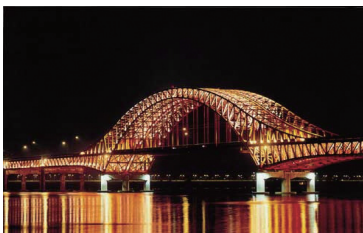
관리

- 원활한 유지 및 관리·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관리 동선을 계획한다. (권)

농어촌 특화사항

- 설치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경관 및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디자인 한다. (이) (농어촌)
- 계단이 있는 시설물에는 고령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에 맞는 안전손잡이 및 휴식 참 등 편의 시설 및 공간을 함께 설치한다. (필)

예시



▲ 야간경관의 심미성을 높이는 조명을 연출 한 사례



▲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과 안전 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 사례



▲ 불필요한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보행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간결하게 디자인 한 사례

방음벽

- 방음벽이란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벽으로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인 도로와 들리는 장소인 주거단지나 학교 등의 경계에 벽 형태로 설치된다.

■ 일반사항

- 긴급 상황 시 대피나 유지관리를 위한 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통로를 통해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필)
- 방음벽 하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방음벽에 의해 빗물 등의 배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이)
- 방음벽 형태는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정한다(규모, 형태, 재료의 투명성 및 반사정도 등). (이)
-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소음 차단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족하는 단순한 구조 및 형태로 계획한다. (필)
-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다한 패턴의 디자인은 지양한다. (지)
- 동일한 도로나 구간에 설치할 때에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하여 연계성을 갖게 한다. (권)
- 조류가 서식하는 장소에는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버드세이버를 부착한다. (이)
- 방음벽의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 길이를 분절하거나 패턴으로 변화를 준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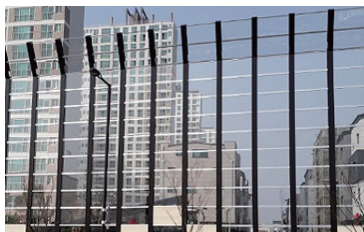
■ 재료 및 색채

- 기둥 및 불투명 벽체는 목재 등 자연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권)
- 목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도색보다 재료 자체 색채를 활용한다. (권)
- 소음저감 효과를 고려하여 음향을 흡수하는 재료를 적용한다. (필)
- 투명한 수지재료는 균열이나 백화현상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선택한다. (필)
- 냉쿨식물 식재 및 화단 설치로 주변 녹지와 연속성을 갖으며 방음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 (권)
- 식재 수종은 차량 배기 등 대기 오염에 강하고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권)
- 조망과 채광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투명한 재료와 불투명 재료를 조합하여 계획한다. (필)
- [태안군 경관계획-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표준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금)

■ 관리

-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부분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계획한다. (필)
- 시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능평가를 하고 기록한다. (이)
- 관리 출입구 등 통로가 조성된 경우, 잠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필)
- 방음벽에 의해 사각지대가 생겨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필)

■ 예시



▲ 투명한 재료와 불투명한 재료 사용을 배분하여 개방감과 조망, 채광을 확보한 사례



▲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식재를 적극 도입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된 사례

지하차도/ 지하보도

- 지하차도란 입체 교차로의 한 형태로서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곳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면 아래에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 지하보도란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의 지면 아래에 차량의 방해받지 않고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 일반사항

- 지하차도는 차량이용 증가 및 도로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선 증설 등에 근거하여 계획한다. (권)
- 지상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지하차도 설치를 지양한다. (지)
- 내부 시설물은 분산 설치보다 간결하게 통합 설치하여 운전자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필)
- 지하차도와 보도 경계부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충격을 막는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필)
- 시설 내·외부에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필)

■ 형태 및 구조

- 지하차도 입구 상단부(캐노피)에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과다하거나 돌출된 장식물 설치는 지양한다. (지)
- 지하차도 명칭은 입구의 상단부에 표시하고, 표시가 어려울 경우 도로 밖 우측에 지주식 표지로 표시한다. (권)
- 입구의 경사각은 주변 지형에 순응되게 하며, 운전자에게 경직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직형태는 피한다. (지)
- 지하차도 주변이 녹지인 경우 지하차도 입구 상단부에 식재를 하여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한다. (권)
- 지하차도는 운전자가 공간이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입구부에 조명 등 전광표지를 설치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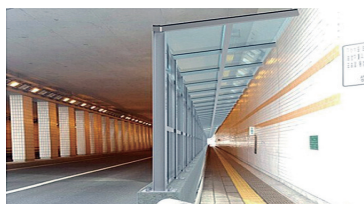
■ 재료 및 색채

- 표면재료나 주재료로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고 재료 본래 질감을 유지한다. (권)
- 시설물은 견고성을 가지며 파손 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한다. (필)
- 외관에 인공 도료를 사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저채도·저명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권)
- 광원이나 음향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필)
- 도로시설물의 마감재 재질 색상계열의 간결한 색채로 연출한다. (권)
- 지하차도 내 조명은 원색 계열의 LED 조명이나 점멸식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지)
- 지하차도 내 조명은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적정 휘도의 주광색 대역의 조명으로 계획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지하보도는 바닥 패턴 등을 활용한 동선 분리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향상시킨다. (권)
- 차로 변경은 설치 이전에 완료하여 차도 입구 가까이에서 차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권)
- 지하차도 내에 설치되는 가로등, 안전펜스 등은 공공시설물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필)

■ 예시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명 방호시설을 설치한 사례



▲ 지하차도 입구의 윗부분에 식재를 통해서 인공적 이미지를 완화한 사례

터널

- 터널이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는 산, 바다, 강 등 자연지형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 만든 굴 형태의 통로를 말한다.

■ 일반사항

- 터널 조성계획은 교통적인 측면과 함께 터널 완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경관적,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한다. (이)
- 터널 전후 입구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운전자가 터널의 존재와 공간이 전환되는 것을 진입 전에 인지하도록 표지등 기능의 황백색 대역 가로등으로 설치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터널은 자연지형에 조성되는 인공물로서 주변 자연경관을 단절하지 않고 조화로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권)
- 터널 입구 입면부와 상부에는 터널 명칭 표기를 제외한 장식물 및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다. (금)

■ 재료 및 색채

- 내부 벽과 천장은 광원이나 음향이 반사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금)
- 표면재료 또는 주재료로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면에 별도의 도료를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질감을 살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운전자가 터널 내의 상황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터널 구간에는 상시 조명을 설치한다. (이)
- 터널 내부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방호시설과 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공간 및 비상 통로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필)

■ 관리

- 터널 내부에는 벽면 청소와 조명교체 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로를 마련한다. (이)

■ 예시



▲ 별도의 장식이 없는 간결한 입구



▲ 터널 내부에 비상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사례



▲ 사인시설물 설치 사례

교량

- 교량이란 하천, 계곡 또는 바다의 좁은 해협 및 그밖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경로를 단축하여 가로질러 갈수 있도록 조성한 구조물이다.

■ 일반사항

- 조망권, 배후경관, 주변 기반시설물 등을 검토한 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량 형식을 선정한다. (이)
- 주변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교량의 재질, 색채, 형태가 연계되게 한다. (권)
- 관광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장소성과 상징성을 반영하여 태안군의 랜드마크가 되게 디자인한다. (권) (해안관광지)

■ 형태 및 구조

- 보도와 교량이 연결되는 부분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전거 통행 및 보행이 편리하게 한다. (권)
-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는 복잡하거나 변화 없이 일관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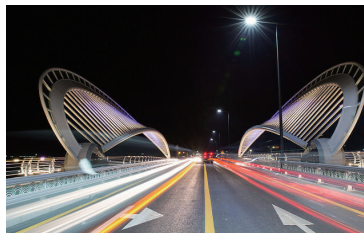
■ 재료 및 색채

- 교각, 보, 상부 바닥판, 난간시설 등은 재질감이 유사하거나 서로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권)
-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이나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필)
- 재료 고유의 색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부 구조물에 도장할 때에는 무채색 계열 또는 재료색과 동일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한다. (이)
- [태안군 경관계획-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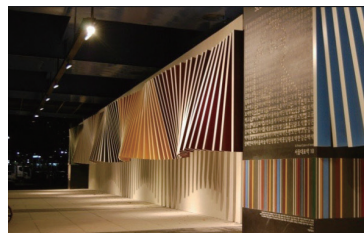
■ 설치 및 배치

- 교량 하부는 야간 이용 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 (필)
-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 [도로설계기준 6.2교량]을 준용한다. (이)

■ 예시



▲ 장소성, 상징성을 반영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디자인 사례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량 하부의 조명설치 사례

2) 대중교통시설물

- 교통수단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 범죄예방	농어촌 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우 비상벨, 방범용카메라, 보안등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문화를 위해 보행폭을 여유 있게 계획한다. 영역이 구분되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이용자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구조체는 각지지 않은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다. (필)(유니버설 디자인)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
-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시내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교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보안등 및 방범용카메라, 비상벨을 설치한다. (권)
- 다중이 밀집한 밀폐 공간구조의 경우에는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위생 환경을 유지한다. (필)
- 개인 간의 위생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벤치 간격 유지 등 개인 영역을 확보한다. (필)
- 시설물 내 정보매체는 정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체는 태안군 지정서체(산돌고딕, 산돌명조)를 사용한다. (이)

형태 및 구조

- 간결한 구조로 하되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개방성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나 중복되는 정보는 표시하지 말거나 축약한다. (권)
-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준 픽토그램을 적극 사용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파손 시 이용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소재를 선택한다. (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 오염, 갈라짐 등 외부 노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필)
- 해안지역에 설치할 때에는, 태안군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면을 부식에 강한 방식으로 도장한다. (필)(지역)
-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권)
- 색상은 이후 재 도색이 용이하도록 태안군 공공시설물 지정색을 사용한다. (이)

설치 및 배치

-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터미널, 아파트 단지, 학교 및 관공서, 시장 등)나 마을 진입로 전에 설치하되 설치 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한다. (필)
- 정보매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시각이미지 편을 참고한다. (이)

농어촌 특화사항

-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승강장은 내부 필요한 위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편리함을 제공한다. (권)

예시



▲ 도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게시판 등을 설치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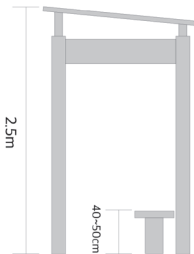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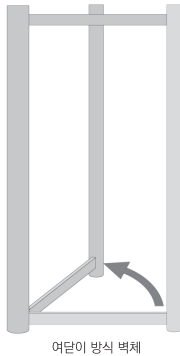
▲ 협소한 공간에 정보매체를 지주형태로 계획한 사례



▲ 사용자의 인식이 쉽도록 픽토그램을 사용한 사례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이란 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조성된 가로 시설물로서 다른 보행자나 차량, 우천 등의 기후 요건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분리된 공간에 설치된다.



모서리 부분 강조색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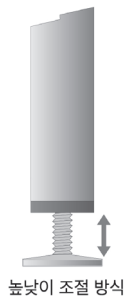
- 태안군의 기후 및 공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 및 구조가 되도록 계획한다.(이)
-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일반적인 규격의 표준형 외에 다양한 형태 및 규격의 응용형을 함께 개발한다.(권)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이)

■ 형태 및 구조

- 비, 눈, 바람,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 등 차양시설을 설치하며, 겨울철 찬바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전면벽체가 접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여닫이 방식 등)(권)
-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구조로 개인 간 위생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간격을 이격한 벤치를 적용한다.(필)
- 출입통로는 차로방향을 향하게 하며 보행로가 좁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다(지붕 경사는 출입통로 쪽이 높게 설계).(필)
- 장거리 승객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장 부근 승강장에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여유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온열 벤치, 선풍기 등 냉풍 장치를 부가 설치한다. (권)
- 해안 등 경관이 양호한 장소에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조 및 부착물을 최소화한 구조를 채택한다.(권)
- 이용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서리 및 통로의 기둥은 원형이나 각지지 않은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다.(필)
- 작은 승강장 등 설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벽체나 벤치를 설치하지 않는다.(지)
- 승강장의 높이는 2.5m 이상, 내부 벤치의 높이는 40~50cm로 계획한다.(필)
- 버스 진입방향과 마주한 면은 버스가 진입하는 상황이나 버스 내부에서 대기 승객이 보일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필)(금)
- 유리면에는 노선안내표, 관광지 안내지도 외에 다른 부착물을 게시하지 않는다.(필)
- 외부에는 해당 승강장 및 전후 승강장 명칭, 픽토그램, 군 상징물 외에 다른 정보는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금)
- 버스 진입방향과 마주한 면의 표지판(픽토그램, 장소명)은 명시도가 높게 표시하고 야간에 어두운 곳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인지성을 높인다.(이)
-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에는 정보안내시스템(BIS) 설치를 대비하여 공간 및 배선 경로를 확보한다.(권)

■ 재료 및 색채

- 버스승강장은 중량 및 규모가 큰 가로 시설물로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필)
- 승강장의 벽체는 투명한 안전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파손 시 이용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소재를 선택한다/안전을 위해 반투명 재질의 보호 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한다.(필)
- 벤치(의자)의 앉는 표면은 목재 또는 탄성 있는 재료로 하며 열선을 내장하는 유형은 기준에 적합한 누전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사양을 선택한다.(해당 기준)(필)
- 승강장 적용 색채는 도색이 필요한 부분에 단색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승강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모서리 부분에 강조색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갖게 한다.(권)
- 색상은 시설물의 일관성 유지와 재 도색이 용이하도록 지정색을 사용하며 도시형과 해안관광지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필)



■ 설치 및 배치

-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터미널, 아파트 단지, 학교 및 관공서, 시장 등) 및 마을 진입로 전에 설치하되 설치 공간이 확보된 곳에 우선 설치한다. (필)
-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장소의 바닥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수평 유지 장치(높낮이 조절)가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필)
- 휠체어 이용을 위한 승강장은 단차가 있거나 기단 진입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금)
- 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별도의 지주형 노선안내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고 노선은 벽체 외부에 표시한다. (필)
-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승강장에는 승강장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편의를 증진시킨다. (권)
- 전기 공급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부득이 한 경우, 지붕 유리를 태양광 패널로 대체하여 전력을 충당한다. (권)
- 버스 승강장 근처에는 휴지통 설치를 제한하며,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한 장소의 승강장에는 일정한 이격을 두어 설치한다. (권)

■ 관리

-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시내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시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승강장 부근에 보안등 및 방범용카메라, 비상안전벨을 설치한다. (권)
-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정류장 번호 또는 QR코드를 도입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권)
-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우산대여상자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권)

■ 예시



▲ 전면을 막는 미닫이 형태의 버스정류장 설치 사례



▲ 보행로 규모와 경관특성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적용한 사례



택시정류장

- 택시정류장이란 이용이 집중되는 도로변에 승객과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택시 이용이 이루어지는 터미널, 환승센터, 관광지, 숙박시설 등의 장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한다. (필)
- 버스 정류장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승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짧으므로 구조를 간결하게 계획한다. (권)

■ 형태 및 구조

- 운전자와 대기하는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한다. (권)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나 중복되는 정보는 표시하지 말거나 축약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운전자와 대기 승객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안전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 시, 태안군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도장 처리를 한다. (필 (지역))
- 고광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 (권)
- 정류장 외관 색채는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 색상을 준용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승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자 설치를 지양한다. (지)

■ 예시



▲ 구조를 간소화한 사례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이용자가 일정시간 자전거를 거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자전거를 고정하는 구조체만 있는 지면 돌출형과 지붕 구조까지 갖춘 캐노피 유형이 있다.

■ 일반사항

- 버스 승강장, 주요 거점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간결한 형태로 설치한다. (이)
- 여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높이가 다른 보관대를 교차 설치한다. (권)
- 공간이 좁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 지붕이 있는 캐노피 유형 보다 간결한 돌출형을 설치한다. (금 권)
- 장소여건에 따라 별도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어려우면 담장, 난간, 안전펜스에 덧붙이는 형태로 계획한다. (권)

■ 형태 및 구조

- 별도로 이용 방법을 익히지 않고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권)
-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디자인하며 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반사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권)
- 자전거 몸체나 바퀴를 견고하게 묶을 수 있어 도난 방지에 효과적인 형태로 한다. (필)
- 간결한 구조로 하되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이용 수요에 따라 연속적으로 확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 해안자전거길 및 문화재지역 내에는 별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권)(지역)

■ 재료 및 색채

-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회수할 때 거치대 손상이 적도록 표면 강도가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필)
- 금속재료를 사용하되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한다. (지 권)
- 자전거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쉽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도색을 지양한다. (지)
- 해안지역에는 구조체를 비롯한 볼트 등 체결부품을 해수 부식에 강한 재료로 사용한다. (필)(지역)
- 도색 부분은 [태안군 경관계획-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나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
- 보행로가 좁은 곳은 지면 돌출형으로 하되 사선으로 배치하여 설치한다. (권)
- 시야를 막는 캐노피형 설치는 신중하게 판단하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한다. (권)
- 사용자가 많고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정비 용품을 설치한다. (권)
- 도난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조명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권)
- 농어촌지역에는 사용자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넓게 배치한다. (권)(지역)

■ 예시



▲ 안전펜스와 통합하여 설치한 사례

▲ 기능중심의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설치 사례

가로등

- 가로등은 야간이나 항시 조명이 필요한 어두운 장소의 도로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등주 등을 활용하여 높게 설치되는 등을 말한다.
- 시야 확보로 안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어두운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일반사항

- 가로등은 등주의 형태에 따라 주철형 등주, 팔각 테퍼형, 관재(pipe) 조합형, 특수형으로 구분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관재 조합형에 한정하여 다룬다.
- 설치 장소의 주변 환경, 지면의 영향 및 도로 종류, 기능, 통행량 등에 따라 적합한 조명 방식, 광원, 휘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계획한다. (이)
- 일반적으로 높이가 가로등은 6m 이상 보안등은 6m미만으로 태안군은 가로 여건에 따라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
- 광원의 유형은 나트륨등, 고압나트륨등(CMD), LED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이)
- 큰 규모에 여러 개가 연속 설치되는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로서 가로이미지에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권)
- 신규 설치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 유형이 생성되는 시설물로서 표준디자인 적용을 확대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권)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

■ 형태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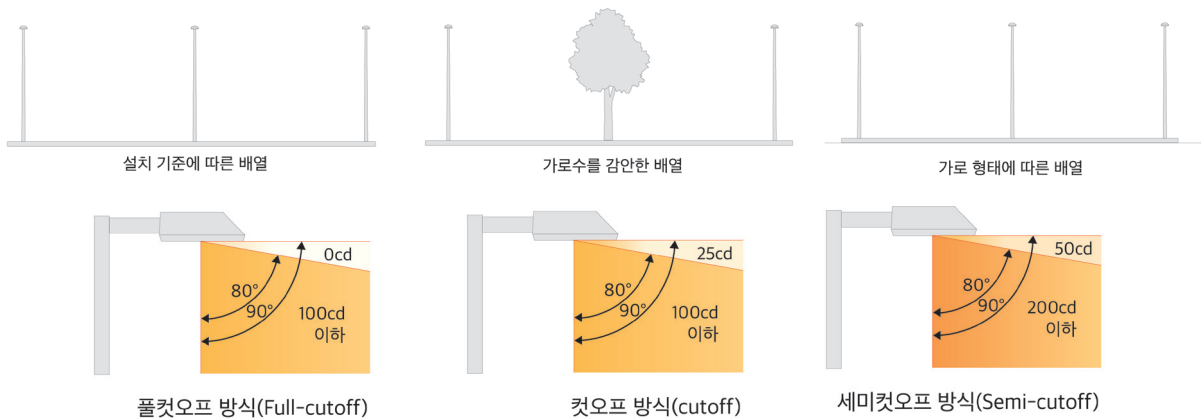
- 가로등의 주요부인 등주와 암(브래킷)은 원형 관재(pipe)를 사용한 형태로 한다. (이)
- 등주 구조가 2개 이상 관재로 연결된 경우, 연결부에 단차를 완화하는 결합재를 부착할 수 있다. (권)
- 등기구는 내부에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계획한다. (필)
- 설치되는 가로와 다른 시설물과 형태 및 색채 등에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권)
- 한 지점 또는 한 등주에 가로등과 보행등, 보안등이 함께 설치될 경우 동일한 유형으로 계획한다. (권)
- 연속하여 설치되는 가로등은 형태, 높이, 광원(색온도) 등이 일관성 있도록 계획한다. (권)
-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하되, 권역별 특징에 따라 장식이나 상징물의 적용범위를 조절한다. (권)
- 재 도장 및 이설이 용이하도록 각 부품의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빛 공해 방지가 요구되는 주거지 및 경작지, 양식장 등에서는 컷오프(cut-off) 방식의 등기구를 장착한다. (이)
- 특정가로 외에는 국기꽃이, 배너걸이는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설치 시에는 지주와 일체화된 형태로 한다. (권)
- 교통신호, 교통표지, 안내사인 지주가 밀집된 장소에서는 가로등주를 활용해 통합지주로 설치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는 해풍 및 염분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 및 도료를 사용하여 다층막 도장을 한다. (필)(해안지역)
-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하여 부착이 이루어지는 표면에 부착방지 물질을 도포하거나 별도 패드를 덧씌운다. (권)
-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다. (권)
- [태안군 경관계획-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형 색채와 해안관광지형 색채로 구분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설치 공간 및 보행공간이 좁은 장소에서는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권)
- 가로수나 다른 시설물의 지주와 인접·중복될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지점을 이격한다. (권)
- 설치 지침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부득이 간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균일한 간격을 유지한다. (권)
- 지면에 돌출된 하단 결합부에는 별도의 덮개를 씌워 외관상 단정함과 보행 안전성을 갖춘다. (권)
- 노면등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면만 비추도록 한다(표지등 기능의 요구되는 경우 예외). (필)
- 부품 체결부의 볼트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부식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이)
- 유지관리를 위해 표준디자인형은 연속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설치한다. (권)
- 세부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 조명시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을 준용한다. (이)



■ 관리

- 가로등에 고유번호가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고 오염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필)
- 빗물 등이 관재 내부로 침투하여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한다. (필)
-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가로등의 안정기 등 전기장치는 방수처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필)

■ 예시



▲ 권역별 특징이 간결하게 표현된 사례



▲ 표찰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사례

3) 보행시설물

- 보행로 등 보행 공간에 설치되어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행유도등	블라드	보호웬스
■ 범죄예방	사각지대, 고립지대가 생길 경우에는 비상벨, 방범용카메라, 보안등 등 안전장치와 연계하여 설치한다.			
● 유니버설	교통약자와 고령자 등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위치와 개수를 적절히 산정하여 배치한다. (이)
- 일반 보행자 및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하여 유모차가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공간 마련을 최우선으로 한다. (필)

형태 및 구조

- 복잡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권)
- 정돈된 가로환경을 위해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권)
- 차량이나 보행자가 충돌 시 다치지 않도록 모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다. (필)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 오염, 갈라짐 등 외부 노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권)
- 부분적으로 탄성 소재를 사용하여 보행자가 충돌할 시 충격을 감소시킨다. (필)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지) (권)
- 해안지역은 태안군의 해안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의 부식에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 (필) (해안관광지)
- 부분적으로 반사시트, 반사도료 등을 적용,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보도 유효 폭에 따라서 적절한 보행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권을 강화한다. (필)
- 세부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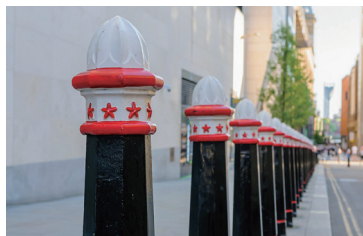
관리

- 추가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한 부분교체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필)
- 동일한 디자인이 단종된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유사한 형태, 크기, 색채, 재질의 유형으로 대체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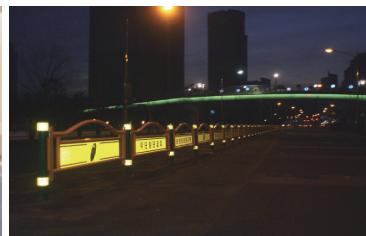
농어촌 특화사항

- 단차가 있는 경작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며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유형의 보행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 (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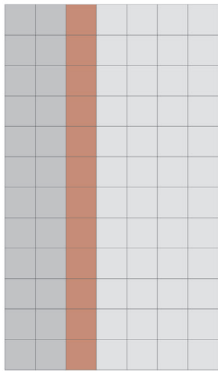
▲ 정돈된 가로환경을 위해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 사례



▲ 부분적으로 반사시트, 도로 등을 적용하여,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게 하여 안전을 도모한 사례

보도블록

- 보도에 일관된 평탄성 및 안전성 등 보행 편의성을 주기위해 작은 단위의 블록을 규칙적으로 배열, 보도면에 도포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패턴 및 색 변화로 진입 억제

■ 일반사항

- 일반 보행자 및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하여 유모차가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공간 마련을 최우선으로 한다. (필)
- 보행공간의 확보는 가로 위에 조성되는 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에 우선한다. (권)
- 설치 환경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석재, 시멘트(콘크리트), 점토, 탄성고무 등 재질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
- [국도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보도블록의 패턴 유형 및 색상 수는 최소화하며, 특히 좁은 보행로의 경우 간결한 색상과 형태로 계획한다. (권)
- 설치 공간이 좁거나 종단면이 경사진 곳에는 작은 크기의 인터로킹 방식을 적용한다. (권)
- 진입을 제한하는 구역에는 보도블록 패턴을 다르게 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권)
- 연결되는 경로는 동일한 패턴의 보도블록으로 설치하여 통일성을 갖는다. (권)
- 패턴을 적용할 경우 보행의 방향성 및 구간 분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평탄성, 투·배수성, 마찰력 등의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한다. (이)
-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경우 마찰 저항은 40BPN 이상을 유지한다. (필)
- 농어촌 및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보행 및 인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탄성고무, 저채도 지양 등). (권)
- 재료 고유색 및 저채도의 색채를 적용하며 면적에 따라 활용 색상 수를 조정한다(3색 이하, 5색 이하). (권)

■ 설치 및 배치

- 블록간의 경계 단차나 블록간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권)
- 바닥패턴 연계로 통일감 있는 보행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바닥 패턴을 연계한다. (권)
- 횡단보도 및 연결구간 등 보차도 경계를 경사지게 하는 경우, 형태와 배열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치한다. (권)
- 보도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고정부위를 정교하게 마무리하며 시멘트로 덧씌우거나 별도의 도색을 하지 않는다. (필)
- 보행 폭이 충분할 경우 식재대 및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권)
- 별도의 노면 배수 시설이 없는 장소에는 기단을 견고하게 조성한 후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필)
- 설치 관련 사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제4장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3.6 보도블록]을 준용한다. (이)
- 기타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준용한다. (이)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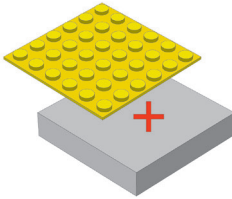


▲ 경사면에 미끄럼 방지 블록을 설치한 사례



▲ 좁고 평탄하지 않은 장소에 작은 유니트 설치 사례

점자블록



다른 재질의 상판부와 하단 블록을 결합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가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진로를 시각과 촉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가 도출되어 있는 밝은 색상의 블록을 말한다.
- 방향 유도용인 선형블록과 위치 감지용인 점형블록이 사용된다.

■ 일반사항

- 일반 보행 동선과 중복되거나 경로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
- 점자블록 위나 근접한 지점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필)
- 보행안전구역에는 경계석 대용으로 설치하여 간결하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필)

■ 형태 및 구조

- 한 장소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구분되도록 돌기가 분명하게 돌출된 형태를 선택한다. (필)
- 돌기의 명확한 인지를 위해 PVC나 ABS 등 다른 재료로 제작한 판을 블록에 덧붙인 유형을 적용한다. (권)
- 변형 형태나 직사각형 보다는 30cm×30cm 규격의 표준형을 사용하며 높이는 돌기를 제외한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스테인리스 스틸 등 미끄러지기 쉬운 소재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 재질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금)
- 노랑색이 표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재료로 제작하여 블록 판에 덧붙인 유형을 사용한다. (권)
- 노랑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노랑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할 수 있다(별도 도장 필요). (권)

■ 설치 및 배치

- 경사지거나 바닥이 평탄하지 않은 장소는 먼저 기반을 평탄하게 시공한 후 설치한다. (필)
- 점자블록 간, 다른 블록 간에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필)
- 점자블록 설치 구간의 보도블록은 시각적 혼동을 막기 위해 여러 색상이나 그래픽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
- 점자블록 설치 구간의 보도블록은 촉각적 혼동을 막기 위해 표면에 요철이 없는 유형을 적용한다. (필)
- 표준형이 아닌 규격이나 형태가 다른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기존 블록과의 경계면이 일치되게 설치한다. (권)
- 횡단보도 정지선에 설치하는 블록은 야간 인지 능력이 낮은 이용자를 위해 신호등과 연동하여 점등되는 유형을 적용한다. (권)
- 그밖에 상세한 설치 기준은[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이)

■ 관리

- 지면 침하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도블록의 파손 및 보행 사고를 예방한다. (필)
- 점자블록 위나 근접한 곳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화물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필)
- 노랑색은 햇빛에 의한 탈색이나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도색 상태를 점검한다. (권)

■ 예시



▲ 횡단보도 앞 선형블록이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처리 한 사례

보행유도등

- 보행유도등은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이나 경로를 유도하기 위해 보행경로를 밝게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도로의 환경 및 이용수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형태에 따라 매입형과 돌출형으로 구분된다.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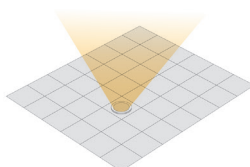
- 보도에 설치되는 작은 크기의 시설물로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유형을 적용한다. (필)
- 이미 충분한 광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유도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한다. (지)
- 바닥에서 윗방향으로 조사되는 직접조명방식의 매입형과 지주에 부착되어 상향광 없이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돌출형 중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선택한다. (이)
-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태양광 패널 유형을 선택한다. (이)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권)

■ 형태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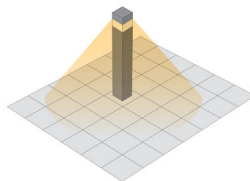
- 매입형은 보도블럭과 같은 규격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설치 상태가 깔끔하도록 한다. (권)
- 매입형은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을 요철 형태로 하여 마찰력을 갖춘다. (권)
- 매입형은 보행자의 발 걸림이 없도록 보도와 단차를 맞추도록 한다. (권)
- 돌출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너무 낮거나 높지 않는 형태로 선택한다(1m 내외). (권)
- 돌출형은 관재(형관)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디자인된 유형을 선택한다. (권)
- 돌출형은 윗 부분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곡면 또는 경사지게 디자인한다. (권)
- 볼라드와 같은 보행안전시설물과 연계하여 유도등을 설치한다. (권)



돌출형 유도등의 상단 형태



매입형 유도등의 조사 방향



돌출형 유도등의 조사 방향

■ 재료 및 색채

- 매입형을 설치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에 의한 충격 및 마모에 강한 재료의 사양을 적용한다. (필)
- 고광택 재료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지) (권)
- 해안지역은 태안군의 해안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 부식에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 (필) (해안관광지)
- [태안군 경관계획-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설치 장소에 빗물 등이 고여 누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먼저 완비한다. (필)
- 등기구를 감싸는 하우징 구조체가 밀봉되도록 한다. (필)
- 공원, 광장 등 분리된 공간을 연계할 때 보행 유도등을 활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권)
-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권)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선 설치하여, 운전자야 야간에 안전운행을 하도록 한다. (권)

■ 예시



▲ 해안가 지역에 지중 매입형으로 설치 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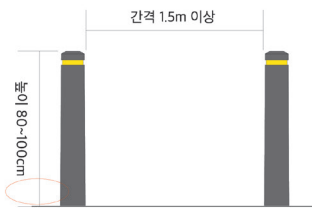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형태 사례

볼라드

- 볼라드는 차량이 차도와 연접한 보도, 운동, 놀이 및 휴게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무단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부에 세워 둔 말뚝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반사띠 부분에 등 매입



■ 일반사항

- 설치의 최소화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한다.(이)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 중 접촉하더라도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권)
- 다른 시설물과 달리 주변과 조화성되기보다는 설치되는 배경과 구분되는 색채를 적용하여 보행자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게 한다.(권)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이)

■ 형태 및 구조

- 차량 및 보행자 접촉 시 충격이 적으며 방향성을 갖지 않는 원기둥 형태를 적용한다.(권)
-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구간 내에는 동일한 형태를 설치한다.(필)
- 파손 시 부품 교체가 가능하도록 분해되는 구조를 채택한다(특히 외피 교체가 가능한 구조).(권)
- 윗부분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곡면 또는 경사지게 한다.(권)
- 둘레에 반사도로 또는 반사띠를 적용하여 잘 보이게 한다(2~3cm의 폭으로 1~2줄 정도).(이)
- 보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한다.(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이)
- 세부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준용한다.(이)

■ 재료 및 색채

- 매입부 및 내부 구조체는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권)
- 외피재로는 충격을 견디거나 안전한 상태로 파손되는 탄성이 있는 재료로 한다.(권)
- 외피가 플라스틱인 경우 견고한 도막의 재 도장이 불가능하므로 교체되는 구조로 한다.(권)
- 권역이나 장소에 따라 색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다.(권)(관광지)
- [태안군 경관계획- 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이)

■ 설치 및 배치

- 설치 간격은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1.5m 내외로 한다.(필)
-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30cm 이전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권)
- 충돌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 등을 지면에 매입하여 설치한다.(권)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볼라드 상단부 일부분에 조명 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권)
- 세부사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 P.20~35)]를 준용한다.(이)

■ 관리

- 추가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한 부분교체 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볼라드와 동일한 유형으로 설치한다.(필)
- 동일한 유형이 단종된 경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와 유사한 형태, 크기, 색채, 재질의 유형으로 대체한다.(권)
- 우천 시 지반 침하로 훼손되었거나 고의로 훼손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필)

■ 예시



▲ 쓰레기 적치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곡면 또는 경사지게 처리한 사례



▲ 반사도로 또는 반사띠를 적용하여 인식을 쉽게 한 사례

안전펜스

- 안전펜스는 차도나 교량의 보도 경계에 설치하여 무단 횡단이나 무단 출입을 방지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감소시키는 울타리 형태의 시설물이다.
- 차량이나 사람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지형과 단순히 경계 표시를 하는 분리대형으로 구분된다.



■ 일반사항

- 안전 펜스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며 식재나 다른 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다. (권)
- 보행자 무단 횡단이나 무단 출입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필)
- 자전거의 차도 침입이 예상되는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권)
-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연속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권)

■ 형태 및 구조

- 펜스의 내부 구조물이 맞은편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간결하면서 개방된 형태와 구조를 갖도록 계획한다. (필)
- 펜스의 내부 구조체는 수직 바 형태로 하여 사다리처럼 딛고 넘지 못하도록 한다. (필)
- 지면에 설치된 지지대는 금속재 형관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견고한 구조를 갖춘다. (권)
- 지지대의 도로면에는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이 인지하기 쉽도록 한다. (권)
- 태풍 등 악천후에서도 펜스와 이용자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계획한다. (필)(해안관광지)
- 경사로 구간에 설치할 경우 모듈형 보다는 프레임과 바가 분리된 형태를 사용한다. (권)
- 가로 바 및 세로 바의 폭 또는 두께는 4cm를 넘지 않는다. (이)
- 단위 교체가 가능한 모듈 구조로 하며 개별 단위의 폭은 1.5~2m의 범위로 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지지형 펜스는 금속재 등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자동차 불빛이 반사되는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표면을 가공하여 광택을 줄인다. (필)
- 해안지역은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 (필)(관광지)

■ 설치 및 배치

- 보행공간이 좁거나 고령층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상단 바는 철재 대신 나무 재질로 대체하여 이용편의를 높인다. (권)
- 차량통행이 많거나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은 1.2m 높이 이상을 유지한다. (필)
- 경사로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지대(외곽 프레임)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필)
- 보행로의 폭이 충분할 경우 펜스 설치 대신 식수대를 구획하여 자연울타리로 조성한다. (권)
- 세부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차량방호안전시설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p.70~74] 를 준용한다. (이)

■ 예시



▲ 펜스를 어린이가 넘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한 사례

4) 편의/휴게시설물

- 시민들의 편의와 휴게를 위한 시설물

쓰레기통	벤치	퍼걸러/그늘막	재활용거치대
■ 범죄예방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며,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 유니버설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누구나 사용하기에 쉬운 형태로 디자인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규모와 형태로 계획한다.(권)
- 벤치는 불특정 타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시설물로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위생을 위해 일정 간격 떨어진 구조로 설치한다.(권)
-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방적인 형태로 하며, 조명계획과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필)

형태 및 구조

- 불필요한 장식적인 요소는 최소화하여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권)
- 주변 환경과 통합되는 형태와 구조, 색채로 디자인한다.(권)

재료 및 색채

- 신체가 닿는 앉음판이나 등받이는 목재, 수지, 우레탄 등 부드럽고 열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권)
- 가급적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권)
- 자연소재는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아 재료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게 한다.(지)(권)(필)

설치 및 배치

- 이용 빈도가 높은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등에 설치한다.(권)
- 설치되는 장소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으로 계획한다.(권)

관리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권장한다.(권)
-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인접한 편의/휴게시설과 함께 보수한다.(권)

농어촌 특화사항

- 관광지의 경우, 이용자의 활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 장소와 수량을 적절히 계획한다.(권)
- 농어촌과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는 벤치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인다.(필)
- 고령자의 편의성을 위해 등받이와 손잡이 등 부가적 편의 설비를 설치한다.(권)
- 해안지역은 태안군의 해안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 부식에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필)(관광지)

예시



▲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과 안전 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 사례



▲ 농어촌과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벤치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인 사례



▲ 고령자의 편의성을 위해 등받이와 손잡이를 부가적으로 설치한 사례

쓰레기통

- 쓰레기통은 일반 공중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가로변이나 공공공간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다.



쓰레기 유형별 구분되는 투입구

- 안전 및 편의
 - 쓰레기통의 설치에 편의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설치로 인한 투기 쓰레기의 양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
 - 설치 장소, 발생 쓰레기 양 및 종류, 처리방식에 따라 설치 수와 형태, 재질을 달리하여 계획한다. (권)
 - 재활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2종 분류가 널리 적용 된다. (권)
- 형태 및 구조
 - 사용자가 투입구에 근접하여 사용하도록 투입구 형태를 완만하게 디자인한다. (권)
 - 투입구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한다(60~90cm 이하). (이)
 - 쓰레기통 윗면은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경사지거나 곡면 형태로 디자인한다. (필)
 - 투입 쓰레기의 구분이 쉽도록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권)
 - 표기문자, 색채, 픽토그램 등 구분되는 표시 외에도 투입구의 형태를 다르게 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도록 한다. (권)
 - 젖은 쓰레기의 수분 배출이 되도록 밑 부분은 물빠짐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권)
 - 항구, 터미널 등의 불특정인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한다. (권)
 -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내부에 굴곡이 없는 형태를 권장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금속재질을 사용하며 기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경우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한다. (권)
 - 오염이 쉽게 되지 않고 세척이 쉽도록 표면을 물에 강한 도색이나 도막처리한다. (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지) (권)
 - 해안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의 부식에 강한 재질 및 도료를 사용한다. (필) (해안관광지)
 - [태안군 경관계획-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의 지정색을 참조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휴게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설치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마주보지 않게 설치한다. (금) (권)
 -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권)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 준용한다. (이)
- 관리
 -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배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 관리한다. (권)
 -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관리한다. (권)
 - 쓰레기 배출시기와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유연하게 계획한다. (권)
 -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권장한다. (권)
- 예시
 - ▲ 픽토그램, 색채, 투입구의 형태를 다르게 한 사례
 - ▲ 쓰레기 적치 방지를 위해 윗면을 곡면으로 처리한 사례
 -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사례



▲ 픽토그램, 색채, 투입구의 형태를 다르게 한 사례



▲ 쓰레기 적치 방지를 위해 윗면을 곡면으로 처리한 사례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사례

벤치

- 벤치는 옥외 및 실내에 설치되어 여러 사람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게 하는 의자 형태의 편의/휴게 시설물이다.
-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따라 긴 시간 휴식에 적합한 등받이가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 일반사항

- 벤치는 불특정 타인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물로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위생을 위해 일정 간격 떨어진 구조로 계획한다. (권)
- 설치되는 장소, 이용 형태 및 빈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으로 계획한다(등받이, 이용인원, 재료 등). (이)
- 일반적으로 목재나 철재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나, 석재나 기타 재료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
- 버스승강장 및 퍼걸러에 설치되는 벤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권)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

■ 형태 및 구조

- 설치 장소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1인용, 2인용, 다인용으로 구분한다. (이)
- 신체와 닿는 부분의 모서리는 각지거나 날카롭지 않은 형태로 디자인한다. (필)
- 장식이나 조형적인 형상이 아닌 기능 위주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 앉음판을 지지하는 기단부는 앉았을 때 발이 닿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 앉음판 및 기단부가 설치되는 바닥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건조가 잘되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권)
-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 등 편의 설비를 덧붙인다. (권)
- 관광지에 설치하는 경우 장소 특성이 반영한 디자인을 채택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신체가 닿는 앉음판이나 등받이는 목재, 수지, 우레탄 등 부드럽고 열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권)
- 기단부 이루는 부분은 외부 충격이나 사용상 하중을 견디는 철재, 석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할 경우 지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한다. (필)
- 목재는 단일 재료 보다는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뒤틀림 등을 방지한다. (권)
- 목재에 오일스테인 등으로 도장할 경우 도장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한다. (필)
- 가급적 고광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이용 빈도가 높은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등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권)
- 보행 동선과 겹치는 장소나 차로 및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금)
- 인적이 드물거나 은폐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금) (필)
- 퍼걸러 내부에 설치할 경우 시설물간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설치한다. (권)
- 고령층의 거주가 많은 지역, 보행로가 긴 경로에는 곳곳에 벤치를 여러개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권)
- 휠체어 사용자 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권)
- 위생 문제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필)
- [국도교통부 조정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쓰레기통과 벤치 간의 이격거리는 0.9m 이상으로 하며, 음수대와는 최소 1.5m 이격하여 배치한다. (이)

■ 관리

- 옥외에 설치된 목재 벤치는 표면 및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훼손 시 즉시 보수한다. (필)
- 집중호우 이후 지반 침하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므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필)
-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인접한 편의/휴게시설과 동시에 보수한다. (권)

■ 예시



▲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한 벤치 하부 디자인 사례



▲ 훼손된 목재 벤치



▲ 신체와 접촉하는 시설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사례



퍼걸러/그늘막

- 퍼걸러란 공원 등 옥외 공간에 이용자가 머물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구조물로서 기둥과 지붕, 의자로 이루어진다.
- 그늘막이란 가로 보행자가 여름철 폭염을 잠시 피할 수 있게 그늘을 만드는 파라솔 형태의 시설물로서 주로 신호대기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앞에 주로 설치된다.

■ 일반사항

- 퍼걸러와 그늘막은 인구유동 특성과 이용 수요에 따라 적절한 설치 계획을 세운다. (이)
- 퍼걸러와 그늘막은 설치되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모와 디자인을 채택한다. (이)
- 퍼걸러는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필)
- 그늘막은 농어촌지역 별도의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에서는 대기용으로 활용한다. (권)

■ 형태 및 구조

- 퍼걸러의 벽체는 사용자의 얼굴이 보이는 부분은 가려지고 상단과 하단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권)
- 퍼걸러와 그늘막의 기둥부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최소한의 규모와 간결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퍼걸러의 입구부는 휠체어 진입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하며 바닥에서 지붕 높이는 2.2~2.5m로 한다. (이)
- 퍼걸러 지붕은 그늘이 형성되는 구조로 하며, 빗물이 잘 흐르도록 지붕 기울기를 조정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퍼걸러는 야외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내구성이 강한 철재, 목재, 석재 또는 이러한 재료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권)
- 사용자의 신체가 닿는 앉음판, 등받이 등은 목재,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권)
-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 표면보호처리를 하여 내구성을 높인다. (권)
- 목재에 오일스테인 등으로 도장할 경우 도장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한다. (필)
- 가급적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 (권)
- 자연소재에는 도료의 도장 보다는 재료 고유의 색상과 질감을 살리는 자연 소재를 활용한다. (권)
- 벤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 통일성 있는 재료와 형태로 계획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인적이 드물거나 은폐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퍼걸러 주변에 식재가 필요할 때에는 키 낮은 관목 위주로 식재한다. (금 필)
- 녹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입구까지 별도의 연결로를 조성한다. (권)
-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하여 퍼걸러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가로등과 인접한 곳에 조성하게 계획한다. (필)
- 그늘막 세부설치사항은 [도로법_제2조(도로의 부속물k 제30조(공공시설))]을 준용한다. (이)

■ 관리

- 퍼걸러는 야외에 설치되어 파손이나 훼손이 쉽게 발생하므로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 부품의 분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퍼걸러는 야간에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 관리를 위한 방범용카메라, 비상벨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필)
- 퍼걸러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사계절에 걸친 식물 성장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 한다. (권)
-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일조량 및 시간대에 따라 작동되는 스마트형 그늘막을 적용한다. (권)

■ 예시



▲ 우천시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붕의 기울기를 조정한 사례



▲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기둥부를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 사례

재활용거치대

- 재활용 쓰레기를 재질에 따라 분류해 1차적으로 집합·수거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근처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재활용거치대는 쓰레기를 일시 보관하는 용기로서 쉽게 오염되며 유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이)
- 분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한다. (권)
-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유형, 배출량 등을 파악하여 규모 및 분류 구분을 조정하여 계획한다. (이)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에서 형태 및 세부 사양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

■ 형태 및 구조

- 일반쓰레기통에 비해 투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투입구가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로 계획한다. (권)
- 지붕(캐노피)이 없는 구조의 보관함은 빗물을 막아주는 뚜껑이 설치되어야 한다. (필)
- 뚜껑은 투입구 크기에 따라 기성품을 사용하며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페달에 의해 개폐되는 장치를 적용한다. (권)
- 내용물 상태가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하여 정확한 분리과 투입,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게 한다. (권)
-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도록 거치대 뒷면 전체를 여닫을 수 있는 개폐문을 설치한다. (권)
- 개별 용기가 무거운 구조인 경우 분리형으로 하며 가벼울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하고 칸막이로 구분한다. (권)
- 분리유형 식별이 쉽도록 표준 픽토그램 및 문자표기 위주로 표시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되는 유형은 강한 해풍에 지탱하도록 자체 하중 등으로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필)
- 물청소 후 물빠짐이나 건조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권)
- 세부사항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가혹한 이용 환경과 바닷물에 의한 부식 등에 대비하여 철재 등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권)
-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가로 시설물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 시에는 별도의 도색이 필요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아연도 재료를 사용하며 도색 시에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 견고한 도료 및 방식으로 도장처리 한다. (권)
- 고급적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 (권)

■ 관리

- 농어촌 및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물세척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권)
- 주기적인 관리로 재활용 거치대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필)
-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관리한다. (권)
- 쓰레기 배출시기와 발생량을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이)
-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권장한다. (권)

■ 예시



▲ 한 칸씩 분리되어 재활용품을 버리거나 청소 또는 이동이 쉬운 사례

5) 공급시설물

- 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등의 공급관련 시설물

맨홀덮개	지상기기
■ 범죄예방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개방되게 설치한다.
● 유니버설	장식과 부착물을 최소화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이용자가 가까이 접촉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물의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은 형태로 디자인한다. (필)
- 충분한 공간 확보가 안된 경우 세로 폭이 좁고 규격이 작은 유형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높인다. (권)
-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와 관리자가 인지할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부각시키지 않는다. (권)

형태 및 구조

- 별도의 특정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성제품 중 설치장소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이)
- 일반 보행로에 설치되는 경우 기능성 위주의 간결한 형태를 선택한다. (권)
- 관광지나 특정 지구에 설치되는 유형은 지역성 및 상징성을 띤 디자인을 권장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해풍 및 바닷물에 의한 부식에 강한 도장처리를 한다. (필) (관광지)
- 내장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금속재를 사용한다. (권)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색채를 단일색으로 적용하며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가장자리에 강조색을 표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권)

설치 및 배치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필)
- 점자블록이나 보행유도등과 같은 보행시설물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권)

관리

-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필)

예시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계획한 사례



▲ 보도블록 등과 같은 보행시설물과 표면 패턴이 일치된 사례



▲ 기성제품 중 인증제품을 설치한 사례

맨홀덮개

- 맨홀덮개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매립시설인 맨홀의 점검, 수리, 청소, 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노면에 설치한 개구부의 덮개를 말한다.

■ 일반사항

- 맨홀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보도용 맨홀과 차도용 맨홀로 구분된다.
- 차도에 설치되는 맨홀은 달리는 차량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원형의 주철제 맨홀이 사용된다.
- 보도용 맨홀은 상대적으로 하중을 적게 받으며 설치되는 포장면과 유사한 재질의 원형, 사각형, 타원형 형태로 설치되고 있다.
- 별도의 특정한 디자인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성제품 중 설치 장소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설치장소가 좁은 장소에서 보도용 맨홀의 형태는 원형 보다는 사각형태를 적용한다. (권)
- 차도용 맨홀은 대형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뚜껑의 이탈을 방지한다. (필)
- 포장면이 보도블록인 경우 덮개 표면을 블록 패턴과 연속되게 계획한다. (권)
- 덮개 표면의 요철이 과도하거나 매끈하지 않고 보도블록과 비슷한 마찰력을 갖도록 한다. (권)
- 일반 보행로에 설치되는 경우 기능 위주의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권)
- 관광지나 특정 지구에 설치되는 유형은 장소성이나 상징성을 주어 디자인할 수 있다. (권)

■ 재료 및 색채

-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는 경우, 주철 등 단일재료 보다는 철재+보도블록 결합 재료로 한다. (권)
- 차도에 설치되는 유형은 주행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주철 단일재료를 적용한다. (권)
- 맨홀 덮개의 색채는 설치되는 장소의 차로 및 보도와 유사한 색채를 적용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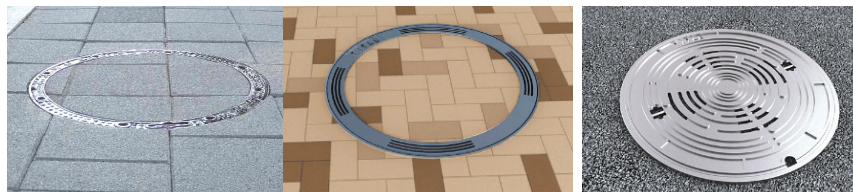
■ 설치 및 배치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나 보도블록과 연결부는 단차가 없도록 섬세하게 시공한다. (필)
- 보행로의 재시공 시 맨홀 높이와 보도면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필)
- 횡단보도 지점이나 점자블록 설치 경로, 경사진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 (필)
- 세부 사항은 [환경부-관로시설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이)

■ 관리

-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필)
- 주철제 맨홀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잠금장치를 갖추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한다. (필)
- 개봉이나 포장 공사 이후 재배치 시 보도블록과 패턴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권)

■ 예시



▲ 보도 패턴과 연속성을 이루는 형태로 설치한 사례

▲ 단일 재료를 사용한 사례

지상기기

- 지상기기관 신호등, 가로등, 상수도 등의 작동을 위한 전력 공급 및 제어기기를 보관하기 위해 가로공간에 캐비닛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전력 등 자원의 공급(배분)을 위한 장치가 담긴 보관함 형태의 시설물이다.
- 고압전류가 흐르는 기기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접촉이나 조작이 제한되어야 하는 시설물이다.
- 별도의 특정한 디자인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성제품 중 설치 장소와 용도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이**
- 구체적인 사양은 표준디자인, 표면에 표시되는 디자인에서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 형태 및 구조

- 보행자가 접촉할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은 형태로 하여 안전성을 갖는다. **필**
- 충분한 공간 확보가 안된 경우 규격이 작거나 세로 폭이 좁은 유형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높인다. **권**
- 환기구가 있는 유형은 환기구 방향이 보행로 측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설치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필**
- 전기장치가 내장된 유형은 빗물이 유입되지 않고 하단부가 침수되어도 안전한 유형을 적용한다. **필**
- 관리주체 및 표기 내용은 별도의 부착 시트에 표시하여 기기의 평탄한 부분에 부착한다. **권**
-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와 관리자가 인지할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부각 시키지 않는다. **권**

■ 재료 및 색채

- 내장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금속재를 사용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해풍 및 바닷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견고한 도장처리를 한다. **필**
- 고광택 금속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광택을 줄이는 가공을 한다. **금 권**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표면에 요철이 있는 재료나 부착 방지 도료를 적용한다. **권**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색채를 단일색으로 적용하며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가장자리에 강조색을 덧대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권**

■ 설치 및 배치

- 보행공간에서 이격된 녹지대 등에 설치해 안전성을 갖는다. **권**
- 규격이 유사한 경우 안전펜스 대용으로 설치하며 안전펜스와 중복설치하지 않는다. **권**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매입이 가능한 시설물은 매입하여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 한다. **권**
- 야간에 어두운 장소에는 안전을 위해 지상기기 주변에 조명을 설치한다. **권**
- 설치공간에 여유가 있는 장소에는 목재 트렐리스를 덧대 심미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권**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필**
- 측면 공간을 자전거 보관대 공간으로 활용한다. **권**

■ 관리

- 캐비닛 잠금 상태가 양호한지 수시로 점검한다.(필)
- 불법 광고물 부착을 관리하여 시설물 외부의 청결을 유지한다.(권)
- 관리번호 등의 표기 요소는 관리자용이므로 최소화하여 표기한다.(권)

■ 예시



▲ 시설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디자인한 사례



▲ 시설물 외부의 청결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6) 가로녹지시설물

- 수목의 보호와 가로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 범죄예방 농어촌 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우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보안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식재를 활용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체 형태가 날카롭거나 모가지지 않도록 한다. (필)
-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식재를 활용하되 좁은 보행로의 경우 녹지대 설치를 지양한다. (지)

형태 및 구조

- 보행자 안전성을 추구하는 기능적 측면의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권)
-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권)
- 물 공급 및 배수가 용이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권)
- 재질 본연의 색을 그대로 쓰거나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 및 무채색을 적용한다. (이)

관리

-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식물의 생육 상태를 수시로 살펴 교체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권)
- 하부에 담배꽂초 등 작은 쓰레기가 방지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필)

예시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계획한 사례



▲ 보도에 설정된 구획이 손상되지 않게 배치한 사례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수 보호덮개란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위해 지면에 개방된 포장면 부분을 가로수 보호와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 단차에 맞추어 덧씌워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분리 구조의 가로수 보호덮개

■ 일반사항

- 보행 충격 및 가로수의 뿌리들림 현상에 대응하여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견고한 소재로 제작된다.
- 별도 시설물의 설치 없이 녹지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과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점차 적용되고 있다.
- 지자체 별도의 디자인으로 제작되기도 하나 제작 몰드가 필요하고 내구연한이 긴 특성으로 수종 및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기성제품을 선택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수목의 밀동 크기나 성장 속도에 따라 내부 경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필**
- 외부 압력이나 뿌리 생장으로 파손이 잘 되므로 단일구조보다는 여러 부품이 결합되는 유동적이면서 견고한 유형을 선택한다. **권**
- 뚫린 부분의 비율이 구조체 면적과 비슷하며 발이나 구두굽이 빠지거나 날카로운 형태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
- 여유 공간이 부족한 보행로에 설치되는 경우 보도와 같은 평탄도와 표면 마찰계수를 갖도록 한다. **권**
- 가로수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원형 홈이 뚫린 유형을 적용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포장재(보도블록), 경계 테두리와 서로 통일성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권**
- 주철, 철재, 철재+콘크리트(테라조) 등 주철 단일재료 또는 철재와 콘크리트 결합재를 사용하여 강도를 높인다. **권**
- 철판 단일재료를 가공한 유형은 평탄도는 양호하나 구조의 강도나 배수능력 등이 떨어져 적합하지 않다. **지**
- 주철 등 별도 도장이 불필요한 재료를 사용하며, 도장할 경우 보행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처리한다. **필**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가공처리를 한다. **지 권**

■ 설치 및 배치

- 보도와 보호덮개의 단차가 없게 하고 경계 테두리와 보도(보도블록)의 마감처리가 정교하도록 시공한다. **필**
- 유효 보도 폭이 4m 이상으로 보행 구역이 충족될 경우, 가로수 보호 덮개 방식 보다 토양이 노출된 녹지대를 조성한다. **이**
- 보도 폭이 2m 이내로 협소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금**

■ 관리

- 가로수의 뿌리들림 현상으로 보호덮개가 이탈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필**
- 주철제 덮개는 분실이 우려되므로 분리된 조각형의 경우 결속을 철저히 한다. **권**
- 가로수 덮개 하단은 담배꽂초 등 작은 쓰레기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한다. **권**

■ 예시



▲ 수목의 종류와 성장에 따라 덮개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례



▲ 가로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이 있는 사례

가로화분대

- 가로화분대는 가로를 자연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며 공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화분 형태의 시설물로서 주로 작은 크기의 화초류가 식재된다.

■ 일반사항

- 가로화분대는 식물의 전 주기에 활용되기보다는 계절에 따라 꽃이 교체되는 특성을 갖는다.
- 가로(지상)에 배치하는 유형과 가로등 및 안전펜스, 벽면에 매다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 보차도 구분이 필요한 경계에 볼라드나 보호 펜스 대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 형태 및 구조

- 가로에 배치하는 유형은 보행 방향과 방향성을 같게 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권)
-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무거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접촉 시 안전하도록 모서리를 둥근 형태로 디자인한다. (필)
- 무게가 무거운 유형은 별도의 운반 손잡이를 부착하되 돌출되지 않게 디자인한다. (권)
- 물 공급 및 배수가 용이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권)
- 설치 공간이 좁은 경우 보호 펜스의 구조를 활용해 매다는 유형을 설치할 수 있다. (권)
- 벤치 등 휴게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권)

■ 재료 및 색채

- 보도나 펜스에 설치되는 유형은 보행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수분이 포함된 토양을 담는 용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되 FRP, PVC 등 재생이 불가능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권) (금)
- 목재 사용 시에는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하여 내구성을 높인다. (권)
-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 및 무채색을 사용하며 표면에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는다. (이) (금)

■ 설치 및 배치

- 여유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보호 펜스 등 다른 지주 시설물을 이용하여 통합 설치한다. (권)
- 연속적으로 배치 시에는 지나치게 조밀한 간격은 지양한다. (권)
- 급수 및 배수가 가능하고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권)

■ 관리

- 가로화분대에 담배꽂초 등 작은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필)
- 식재된 식물이 적합한 크기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생육 상태를 수시로 살펴서 관리한다. (이)

■ 예시



▲ 보도 폭이 좁은 경우, 다른 지주 시설물을 이용하여 통합 설치한 사례

7) 안내시설물

-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방향을 표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설물

게시판	안내표지판/이정표	현수막 게시대	인포메이션 부스
■ 범죄예방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는 형태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유니버설	보행동선을 고려하며,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와 형태로 계획한다. (이)
-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정보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한다. (권)
- 야간 이용 시 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변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 (필)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트 체결부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캡 등을 설치한다. (이)

형태 및 구조

- 안내 이외의 불필요한 정보와 장식은 최소화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권)
- 가독성 위주의 간결한 형태로 하되, 태안군 권역별 특징에 따라 장식이나 상징물의 적용 범위를 조절한다. (권)(관광지)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크기를 최적화 한다. (권)
- 같은 공간 내 설치되는 안내시설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 오염, 갈라짐 등 외부 노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이)
- 해안지역은 기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이나 해수에 강한 재료와 도료를 사용한다. (필)(관광지)
- 사용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픽토그램 및 가독성이 높은 태안군 지정서체(돋음체)를 사용한다. (이)

설치 및 배치

- 규정된 지침, 금지된 상황과 위험요소 등을 알리는 안내시설물은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 설치한다. (이)
- 부착 광고물은 허가받은 광고물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관리한다. (이)
- 사용자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방위와 방향을 일치하도록 한다. (이)
- 관광지에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또는 그래픽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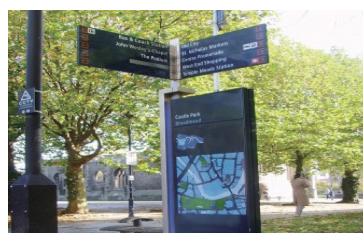
관리

- 변경된 정보 내용과 용도가 다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권)
- 교체가 빈번한 정보는 개별 패널 부착형 등 탈부착이 쉬운 구조로 디자인한다. (이)

농어촌 특화사항

- 농어촌 관광지역 관련 안내도와 안내책자를 함께 배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돕는다. (권)
- 주변에 수목이 많은 경우에는 안내시설물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이)
- 사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글씨가 잘 보이게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 (필)
- 고령자를 배려하여 인식이 잘되는 픽토그램과 눈에 잘 띄는 선명한 색채를 적극 활용한다. (필)

예시



▲ 같은 공간 내 설치되는 안내시설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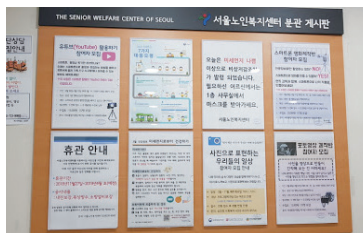


▲ 외국어 병기가 적절히 적용된 사례

게시판

- 게시판은 여러 사람에게 지역 행사나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공지사향 등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인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는 판 형태의 시각 정보 매체를 말한다.

- 일반사항
 - 지역 내 행사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향 등 정보 전달이 우선되도록 계획한다. (이)
 - 인구 유동 특성에 따라 이용이 집중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권)
 - 게시 내용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내용이 교체되는 정보를 담는 시설물이다.
- 형태 및 구조
 - 게시되는 정보의 교체가 빈번한 기관은 전자식 게시판을 권장한다. (권)
 - 게시물의 규격 및 동시에 부착하는 수량을 감안하여 게시판의 규모를 정한다. (권)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체결부품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캡 등으로 씩운다. (필)
- 재료 및 색채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표면 광택을 줄이는 가공처리를 한다. (지) (권)
 - 인접한 다른 가로시설물과 조화되도록 계획적인 색채계획을 한다. (권)
 - 게시판의 설치·관리 주체에서 정한 표준색을 적용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이용자가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개방된 공간이 배경인 장소는 피하여 설치한다. (지)
 - 별도의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기보다 기존 벽면을 활용하여 부착하는 방식을 택한다. (권)
 - 정지, 휴식 기능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 설치하여 이용도를 높인다. (권)
- 관리
 - 변경된 정보 내용과 용도가 다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권)
 - 별도 패널 부착형 등 탈부착이 쉬운 구조로 디자인한다. (권)
- 예시



▲ 제공하는 공지사향 등의 정보간 일정간격으로 배치한 사례



▲ 탈부착이 쉬운 구조로 디자인한 사례

안내표지판

- 지역 주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정보를 고지하거나 위치 등 방향 표시 안내를 위하여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표지판의 목적에 따라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유도 표지판, 관광해설 표지판, 관광명칭 표지판, 규제 표지판, 사설안내 표지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사항

- 인구 이동량 등 이용 행태에 따른 적절한 설치 계획을 세워 안내시설물로서 기능을 향상시킨다. (권)
- 주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알리거나 소개하기 위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인식되도록 계획한다. (권)
- 사용자 및 사용 환경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 (권)
- 세부 사항은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표준 디자인 개발]을 준용한다.

■ 형태 및 구조

- 설치 장소에 따라 관광지 유형을 자연휴양형(산악형, 해안형, 내륙형), 종합휴양형, 역사·문화형으로 구분한다. (이)
- 자연휴양형은 자연적인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종합휴양형은 기능적이며 인문학적 요소를 활용한다. (권)
- 역사·문화형은 문화재청 등 중앙 정부의 문화재 가이드를 준용하여, [2017년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이)
- 장소의 특성과 위치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크기를 세분화 할 것을 권장한다. (권)
- 가독성 위주의 간결한 형태로 하되, 태안군 권역별 특징에 따라 장식이나 상징물의 적용 범위를 조절한다. (권)(관광지)

■ 재료 및 색채

- 목재는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권)
- 목재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 도장재가 묻어나지 않게 한다. (권)
- 해안지역에 설치 시, 태안군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도로로 표면처리 한다. (필)
- 고품택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지)(권)
- 장애인 주차구역, 대피소 등 눈에 잘 띄어야 하는 안내 표지판의 색채는 안내표지 표준색채를 적용한다. (이)

■ 설치 및 배치

- 외국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또는 그래픽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관광지)
- 같은 공간 안에 설치되는 안내시설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권)
- 관광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한다. (권)

■ 관리

- 세척이 용이한 표면 재료를 사용하며, 노후 및 파손 시 보수와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권)
- 변경되는 정보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해준다. (권)

■ 예시



▲ 관광지와 관계있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가독성을 높인 사례



▲ 일반적인 방향 안내와 노선안내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사례

현수막 게시대

- 가로 공간에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여러 사람에게 공공정보를 전달하거나 광고기능을 하는 현수막을 고정하여 게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정보(현수막)를 게시하는 지지 구조체로서 현수막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불필요한 정보와 장식은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로 계획한다.①
 - 현수막 무단 게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양성화 유도한다.②
 - 이용자의 시선 및 위치, 설치 장소의 배경 및 공간 규모에 따라 높이, 폭 등을 정한다.①
 - 현수막 사이에 공간을 두어 게시물이 받는 풍압을 감소시키며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한다.②
 - 설치작업에 따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현수막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결속 장치를 설치한다.③
 - 태풍이나 강풍이 불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②
 - 태안군 상징물 표시는 상단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②
 -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①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하며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금속재를 주재료로 사용한다.②
 - 기둥 등 주요 구조물에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색채를 적용하여 시설물의 일관성을 갖게 한다.①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② ③
 - 해안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의 부식에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④ (관광지)
- 설치 및 배치
 -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이 집중되는 게시효과가 높은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②
 - 양호한 경관이나 상점 등 건물을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뒷배경이 빈 공간(하늘)인 배치는 피하여 설치한다.②
 - 안내시설물과 일정 간격을 떨어지게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혼란을 주지 않는다.②
 - 게시 효과 및 보행 편의를 위해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②
- 관리
 - 일정 기간마다 변경되는 정보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준다.②
 - 표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②
 - 게시대 주변(후면)은 청소 및 제초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한다.②
- 예시



▲ 보행자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개방성이 확보된 사례



▲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 사례

인포메이션 부스

- 주민이나 외래 방문객에게 지역 문화 및 관광 정보를 알리거나 소개하기 위하여 가로공간이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이동 가능한 부스 형태의 안내시설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인구 이동 특성 등 이용행태에 따라 적절한 설치하며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
-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창구기능의 창문은 낮은 높이에 넓게 배치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권)
- 설치 장소에 따라 사방이 개방된 형태와 전면부와 후면부가 구분된 형태를 선택한다. (권)

■ 형태 및 구조

- 지붕이 있는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지나치게 높아 위압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 계획한다. (지) (권)
- 구조는 단순하되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둥근 형태로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을 준다. (권)
- 외래 방문객이 주 이용대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외관 형태로 구성한다. (권)
- 이용자가 출입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 모습이 보이는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한다. (권)
- 외부에 정보지 배포함을 비치하고 정보 게시는 일정한 면을 정하여 정돈되게 표시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외관 색채는 경쾌하고 온화한 색채 2~3가지로 간결하게 구성한다. (권)
- 투명한 유리 사용을 확대하며 파손시 상해가 없는 안전한 소재를 선택한다. (권)
- 보행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모서리 부분에 강조색을 적용한다. (권)
- 해안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에 강한 재질과 도료를 사용한다. (필) (관광지)
- 사용자의 인식이 쉽도록 표준 픽토그램, 가독성이 높은 태안군 지정서체(산돌고딕, 산돌명조)를 사용한다. (이)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및 그래픽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 (관광지)

■ 설치 및 배치

- 주차장 및 버스터미널 등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
-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방되고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며 전면부에 공간을 확보한다. (필)
- 전력 공급선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간결하게 정돈한다. (권)
- 좁은 공간 내에서 원활한 외부 환기가 되는 구조로 하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환기 장치를 장착한다. (권)
- 세부내용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_제6장]을 준용한다. (이)

■ 관리

- 인포메이션 부스 외벽에 무분별한 홍보물과 표지물 부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권)
- 폭우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로서 우천에 대비하고 이후 점검을 철저히 한다. (필)

■ 예시



▲ 가독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와 지역특징이 적절히 적용된 사례



▲ 외국어 병기와 픽토그램이 적절히 적용된 사례

8) 안전시설물

- 공공공간에서 재해와 재난에 따른 위급 시 필요한 시설물

구명장비보관함

- 구명장비보관함은 집중호우 또는 물놀이 사고 시 즉각적인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구명환, 구명조끼, 유도로프 등 구명장비를 넣어둔 보관함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수상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간 및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형태를 갖춘다.①
 -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 시 인공호흡법 및 긴급신고 전화번호 등을 보관함 외부에 표시한다.①
 - 지역별 특화된 형태보다는 일관된 형태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①
- 형태 및 구조
 - 응급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 위주의 단순한 형태와 구조로 디자인한다.②
 - 전면은 내부에 보관된 장비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재질을 사용한다.③
 - 바닷물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소재를 사용한다.③
 - 시설물 표준색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강색 등 공통된 지정색을 적용해 안전시설임을 표시한다.③
 - 보관함 표기는 명시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하여 보관함 각 면에 표시한다.③
- 설치 및 배치
 -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느 장소에서나 인지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며 야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③
 - 사고 발생 시 최단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③
 - 비상 호출기 및 국가지점표시에 인접하여 설치한다.③
- 관리
 - 보관된 장비의 유실 및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③
 - 표면에 표기된 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③
 - 표면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③
- 예시



▲ 구명장비보관함 바로 옆에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한 사례



▲ 노랑색을 적용해 안전시설임을 강조한 사례



▲ 바닷물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사례

9) 임시시설물

-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동식 화장실	공사장 가림막/ 문화재 보수공사 가림막
■ 범죄예방 야간 이용 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과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유니버설 이동인구가 많은 접근성 높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야간 이용 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 (필)
- 전체적인 구조가 날카롭거나 각진 구조는 피하며 특히, 이용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통로 부분은 안전한 형태로 설계한다. (필)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트 등 마감 부분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캡 등을 설치한다. (권)

형태 및 구조

-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통풍과 자연채광이 원활하게 되는 구조로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권)
- 설치와 철거가 쉬운 조립식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료나 도료를 사용하여 파손, 변색, 오염 등을 방지한다. (필)

설치 및 배치

- 휠체어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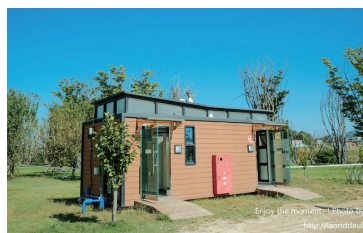
관리

- 청소, 유지, 관리가 쉬운 형태와 재료로 계획한다. (권)
- 허가된 광고물과 홍보물 이외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권)

농어촌 특화사항

- 농어촌 지역 중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조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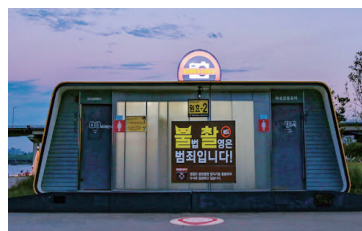
예시



▲ 자연통풍과 자연채광이 쉬운 구조로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사례



▲ 휠체어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



▲ 인적이 드문 지역에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함께 설치한 사례

이동식 화장실

- 이동식 화장실은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 수요에 대응하거나, 설비를 충분히 갖춘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는 임시 형태의 화장실을 말한다.
- 차량에 의한 견인으로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 유형과 조립식 건축 형태인 반 고정 유형이 있다.

■ 일반사항

- 휴가철의 해변, 공원, 행사장 등 사용자의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는 곳, 공사 현장 등에 설치 된다.
-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는 특성상, 경사로 설치가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구조로 설계되는 제약이 있다.
- 설치 규격은 규격화되어 있는 반면, 외관형태가 다양한 기성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 야간에 이동식화장실 주변 공간의 조명계획이 미흡하여 범죄예방 측면에서 조명이 고려되어야 한다. (필)
- 장애인과 고령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하되 크기를 크게 적용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출입문 및 창문이 부분적으로 반투시되게 하여 내부에서의 비상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권)
- 전력공급이 안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자연채광, 자연 환기 방식을 적용한다. (권)
- 콤팩트한 규모임에도 내부 공간은 수분 배출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높이를 유지하고 벽 상단에 측창을 설치한다. (권)
- 내부 설비는 표면 형태가 단순한 일체형 모듈형태로 하여 청소 등 관리를 쉽게 한다. (권)
- 이동식 화장실 특성상,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소변부스를 별도로 설치한다. (권)
- 다목적화장실이 요구되면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한다. (권)
-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외관은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등 내구성이 강하며 조립식 구조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자연공원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공재료보다 목재 등 친환경 자연 소재를 활용한다. (권)
- 내부 소재는 습기에 잘 견디는 재료로 하며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필)
- 별도의 도료 도장보다는 재료 고유색을 적용하며, 외관 장소에 설치할 경우 색채에 의해 배경과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사방이 건축물이나 수목으로 은폐되지 않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한다. (필)
- 바닥이 평탄하고 전기 및 용수의 공급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권)
- 화장실과 진입로의 단차가 큰 경우에는 경사로나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
-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 비상벨과 조명을 설치한다. (권)
- 행사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등 도착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
- 휴게시설물 근처 등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장소와 이격하여 설치한다. (이)
- 남·여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여 사용자의 동선이 교차하거나 출입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필)

■ 관리

- 사용 행태가 불규칙하고 시설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으로 수시로 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
- 지정관리자를 두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필)

■ 예시



▲ 눈에 띄는 픽토그램과 명도가 높은 색채를 활용한 사례



▲ 이동식 화장실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편의를 증진시킨 사례

공사장 가림막

- 공사장 가림막이란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시선을 차단하고 분진 및 낙석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막을 말한다.

■ 일반사항

- 가림막에는 해당 공사정보, 시공사정보를 비롯한 그외의 정보가 표시되는데 지자체 디자인은 그 외의 정보에 적용된다.
- 시공업체가 보유한 패널에 도색, 출력물 부착 등의 방식으로 표면에 시공사 및 공사 내용을 표시한다. (필)
- 충청남도에서 각 권역별로 디자인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 형태 및 구조

- 길이와 높이 등 현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규격의 패널로 제작한다. (권)
- 시공사 홍보, 해당 공사내용 등을 알리는 정보의 표시는 최소화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방음, 미세먼지 방지,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한다. (권)
- 소음이 많아 주변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에는 철제방음벽이나, RPP방음벽을 사용한다. (권)
- 공사장 가림막은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

■ 설치 및 배치

-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보행이 방해받거나 주변을 가릴 경우 설치 장소 및 규모를 조정한다. (필)
- 공사현장 반경 20m 내에 개발된 곳이 없는 경우 비교적 낮은 높이(2.4~3m)의 기준을 적용하고, 소음, 분진 발생량에 따라 높이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권)

개발 구분	가림벽 높이
일반현장	3m(최소기준)
특별관리현장	6m(최소기준)
미개발지역(반경20m)내 공사	2.4~3m

- 20m 이상 도로변은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20m 미만 도로변은 높이 2.4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
-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필)

■ 예시



▲ 권역 및 시·군의 특성을 담은 그래픽을 적용한 사례



▲ 평지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수직 분할하여 설치한 사례

1.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Ⅰ 공공공간 개요

- 개인의 사적공간과 구분되는 공적인 공간 영역으로 대중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가로, 공원, 광장이 있으며 공공공간 안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는 관점으로 보아지기도 한다.

Ⅰ 공공시설물 규정항목

- 태안군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해당 공간의 개요 및 규정 항목으로 외관 형태, 재료 및 설치 방안을 비롯한 식재 및 야간조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규정 항목은 준수 여부에 따라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나뉜다.

개요	- 해당 공간의 정의 및 파생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안전 및 편의	- 공간 조성에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형태 및 구조	- 이용자 및 공간 특성과 원활한 유지 관리에 부합되도록 규모, 구성 및 구조 방식을 규정한다.
재료 및 색채	- 공간 내에 적용되는 재료 및 색채를 다른 규정 항목과 부합되게 규정한다.
설치 및 배치	- 견고함과 안전을 전제로 하는 공간 전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간내 설치되는 시설물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조경 및 식재	- 해당 공간의 생육 적합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효과 및 이용특성에 부합하는 수종 선택과 계획방식을 규정한다.
야간조명	- 야간에 활용되거나 보안 용도로 설치되는 조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시	-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공간 구성 사례를 제시한다.

Ⅰ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인본성	보행권 보장 및 이용과 휴식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공간 활용 추구
안전성	수목 및 시설물에 의한 차폐 방지, 야간 조명 확대, 사용자 간 적정 거리 유지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 확보
배려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과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적극 반영
연계성	해당 공간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공간과 연계될 수 있게 하여 이용 공간을 확장하고 안전성 추구
정체성	공간의 역사적 의미나 스토리가 담긴 명칭, 시설물 활용을 통해 정체성 확보
격조성	체계적인 계획 및 시행,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사용성 및 격조성 유지
환경성	기존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 순응형태의 공간 조성

적용대상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4종으로 분류되고 다시 세분된다.

분류		
공공 공간	광장	공중이 자유롭게 머물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조성된 넓은 공간
		교통광장, 일반광장
	공원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녹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가로공간	교통기능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의 부설 및 방재, 도시 미관을 위한 공적 공간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항만공간	선박의 안전한 정박 및 해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연적,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간
임항시설(항구, 어항,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관계법령

참고법령	광장	공원	가로공간	항만공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	○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 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및 시행령, 시·군 조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	○	○	○
[조경설계기준]	○	○	○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	○	○	○	○

I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요약

재료 및 색채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은 충격흡수가 높은 친환경 탄성포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래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이) (권)
- 주변 환경에 따라 목재, 석재 등 다양한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권)
- 공원 바닥은 물기에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한다. (권)
- 보행자에게 시각적 부담감을 주는 과도한 패턴과 색채가 대비되는 바닥포장 디자인은 지양한다. (지)
- 보행 유효 폭이 좁은 보도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인의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색채변화 및 현란한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
-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시작 구간과 종료 구간에 표기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야간 이용 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조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 보행자 통행이 편한 형태로 하며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권)
-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다른 연령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
- 공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공공공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이)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로 계획된 경우에는 이정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 주민이 문화·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을 마련한다. (권)
-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권)
-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노면요철 포장, 감속시설, 시각적인 노면 표시 등을 계획한다. (이)
-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에는 속도저감 알림 표지판,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 차선 등 속도저감 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이)

조경 및 식재

- 보도와 가까운 구역이나 광장 외곽에는 수관폭이 넓은 교목을 식재하여 입체적인 공간과 그늘을 제공한다. (권)
- 수목은 시야나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개방되게 식재한다. (이)
- 식재 시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조형물 또는 주요 건물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
- 수종은 대기 중 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뛰어난 종류를 권장한다. (권)
-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마을의 첫인상이므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상징물과 식재를 계획한다. (권)(농어촌)
- 차로를 좁히더라도 보행로 확장을 권장하며 어려운 경우 단차가 없이 보행로와 차도를 재료 및 색채로 구분한다. (권)

야간조명

- 공원 내 편의/휴게시설물, 운동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이)
-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구분하여 조명 밝기를 다르게 한다. (권)

I 세부가이드라인

1) 광장

- 광장이란 넓은 공간으로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시설을 말한다.

교통광장	일반광장
■ 범죄예방	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 보안등을 설치한다.
● 유니버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정류장에 접근이 쉽도록 보행로를 조성한다. ①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로 조성한다. ①
- 보행자가 길을 찾기 쉽도록 보행동선을 따라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 ①
-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8도 이하를 유지하거나 인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다. ①
- 고저차가 심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의 설치를 지양한다. ③
- 시설물은 가급적 광장 경계 부분에 배치하여 보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③

재료 및 색채

- 태안군 보행로 환경(좁고 평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은 규격의 인터로킹 방식을 권장한다. ③
-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 통합적 경관 조성을 위해 유사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①

설치 및 배치

-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벤치, 퍼걸러 등, 편의/휴게시설을 설치한다. ①
- 기존 지형을 이용할 때에는 야외무대, 식재대 등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③

조경 및 식재

- 광장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고 주변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③
- 식재 시에는 주변 가로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과 어울리게 녹지를 조성하여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③

야간조명

- 야간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적절히 설치한다. ③
- 광장 내 시설물을 설치할 시에는 주변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①
- 과도한 밝기의 인공조명의 설치는 지양한다. ③

농어촌 특화사항

-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통합 설치하도록 한다. ①
- 시니어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체육공간을 함께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③
-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햇빛이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복사열 감소를 위하여 바닥 포장에 잔디가 포함된 투수블럭으로 마감한다. ③(농어촌)

예시



▲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정류장 접근이 쉽도록 보행로를 조성한 사례



▲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의/휴게시설을 설치한 사례



▲ 색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인공조명의 설치를 지양한 사례

교통광장

- 교통광장이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 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한다.
- 교차점광장이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일반사항

- 교통사고 방지, 충격 방지 기능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교통의 중심에 있는 광장은 정체성을 주거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랜드마크 요소를 도입한다. (권)
-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자블록 동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요 통행 도로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금)

■ 재료 및 색채

- 마감재질과 패턴에 변화를 주어 광장의 넓은 면적이 주는 단조로움을 감소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야간 이용 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 적절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
- 교통광장의 용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안내판, 디지털 안내판 등을 연계되게 설치한다. (권)
- 수목 식재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고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한다. (권)

■ 예시



▲ 정체성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랜드마크 요소를 도입한 사례

일반광장

- 일반광장이란 시민의 집회, 행사, 사고, 오락,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과 경관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 중심대광장이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일시에 많은 이용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상황의 이용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한다. (이)
- 보행로를 포함한 인접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사 규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이)
- 주요 공공시설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주며 주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권)
- 모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권)
-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자블록 동선이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마감재질과 패턴의 변화로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광장의 넓은 면적이 주는 단조로움을 감소시킨다. (권)

■ 설치 및 배치

- 야간 이용 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필)
- 보도와 가까운 구역이나 광장 외곽에는 수관폭이 넓은 교목을 식재하여 입체적인 공간과 그늘을 제공한다. (권)
- 보행자 통행이 편리한 형태로 계획하며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권)
- 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한다. (권)
- 세부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이)

■ 예시



▲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교통중심지에 설치한 사례



▲ 야간 이용시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조명 계획 사례

2) 공원

- 공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녹지를 말한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 범죄예방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조성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계획과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유니버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공간을 계획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주민밀집도가 높은 주택밀집지역과 광장 등의 공간과 인접하게 계획한다. (이)
- 공원 내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용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밖의 차량은 통제한다. (이)
- 야간 이용 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재료 및 색채

- 공원 내 바닥재는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한다. (권)
- 자연소재는 표면 도장을 지양하며, 자연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료 고유의 색상이 유지되게 한다. (지 권)
- 목재, 석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살린다. (권)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각이미지는 가독성이 좋은 태안군 지정서체를 사용한다. (이 권)
- 바닥은 잔디가 포함된 포장재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편의/휴게시설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이)
- 벤치, 퍼걸러 등의 편의/휴게시설물은 주요동선과 인접하게 설치한다. (이)
- 지형의 높이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
-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권)
- 공원 내 보행공간은 산책이 가능한 순환형 구조로 계획한다. (권)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 또는 레크레이션 공간이 포함되게 구성한다. (권)
-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간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
- 공원 안내 표지, 공원 시설 안내도 등 안내시설물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이)

조경 및 식재

- 수종은 일조 여건을 파악하여 여름철에는 적절한 그늘을 확보하고, 겨울철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
- 수목의 식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을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이)
- 식재 시에는 다양한 종류로 식재하여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
- 복사열 감소를 위하여 잔디가 포함된 포장 방식으로 바닥을 마감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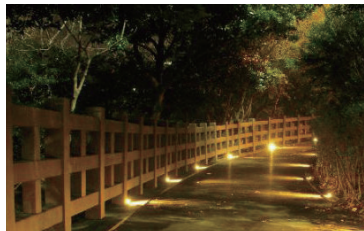
야간조명

- 공원 내 편의/휴게시설물, 운동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이)**
- 보행공간에는 보행유도등 또는 볼라드 조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 주거지나 경작지에 인접한 장소는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계획을 세운다. **(권)**

농어촌 특화사항

- 공원 내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 모임공간, 실버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계획한다. **(권)**
- 농촌 지역 내 공원에는 시니어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활동 증진을 돕는다. **(권)**
- 농어촌 지역 및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고령친화 방식 도입을 권장한다(탄성고무 포장, 저채도 지양 등). **(권)**

예시



▲ 보행유도등, 볼라드 조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사례



▲ 공원 내 주민 모임공간, 실버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사례

어린이 공원

- 어린이가 놀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규모와 구성물이 계획된 공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주변에 24시간 작동되는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필)
-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주변에 어린이가 쉽게 보고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필)
-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단차가 없이 접근이 쉬운 형태로 계획한다. (필)
-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 등 생활지와 인접하여 항상 보호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계획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바닥은 석재, 콘크리트 등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
-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은 충격흡수가 높은 친환경 탄성포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래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권)
-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다른 연령층의 이용도 고려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
- 수목 등 식재는 시야나 조명이 가려지지 않게 배치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이)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 설치 시 어린이 공원 특성상 생활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므로 지나치게 높은 밝기는 제한한다. (필)
- 놀이시설과 다양한 학습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놀이공간으로 구성한다. (이)

■ 예시



▲ 놀이시설과 다양한 학습체험시설을 갖추어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놀이 공간으로 구성한 사례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주변에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사례

근린공원

- 근린공원이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
- 공원의 주 출입부는 인접 가로나 보행동선과 연계되고 연결부분에 단차가 없게 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이)
- 범죄예방을 위해 근린공원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인다. (필)

■ 재료 및 색채

- 주변환경에 따라 목재나 석재 등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마감의 색채나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간접적으로 구분해준다. (권)
- 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수목 식재 시에는 수목에 의해 시야나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개방감 있게 설치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필)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인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이정표를 설치한다. (권)
- 수경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리가 용이하고 공원 설계 개념과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이)
-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원 경계부에 담장이나 펜스 설치를 지양한다. (지)

■ 예시



▲ 시민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례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로 계획된 경우에 이정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사례

소공원

- 소공원이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공간에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좁은 공간에 계획되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므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①
-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공간을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①

■ 재료 및 색채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세부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 설치 및 배치

- 공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공공공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①
- 시설물 설치보다는 가급적 식재 위주의 계획을 한다. ②
- 태안군 곳곳에 소규모의 소공원 조성을 확대한다. ②

■ 예시



▲ 소규모 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경을 계획한 사례



▲ 가로환경과 연속성 있는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사례

문화공원

- 문화공원이란 시민의 휴식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주변에 입지해있는 문화, 예술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이)
- 주변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된 통합적 경관을 조성하며 공원 내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동선계획을 구성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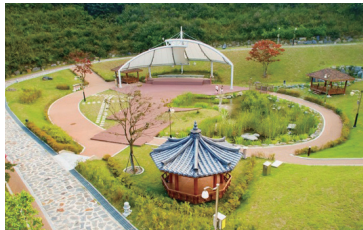
■ 재료 및 색채

- 공원 내 주요 보행가로는 마사토, 자연석, 인조석 등을 활용한 친환경 투수포장을 권장한다. (권)
- 공간구분을 위해 포장구역과 녹지구역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권장한다. (권)
- 보행자에게 시각적 부담감을 주는 과도한 패턴과 색채 대비가 되는 바닥포장은 지양한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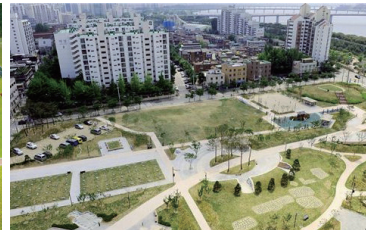
■ 설치 및 배치

-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혼잡함을 지양하며, 조망권이 확보된 구역에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지) (이)
-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을 마련한다. (권)
-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권)

■ 예시



▲ 조망권이 확보된 구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한 사례



▲ 공간 구분을 위해 포장구역과 녹지구역을 적절히 혼용한 사례

3) 가로공간

- 가로공간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도나 보도로 구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 범죄예방	우범화가 될 수 있는 곳은 범죄 예방을 위해 조경계획과 안전시설물 (방범용 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유니버설	교통약자를 위해 진입부 단차를 낮추고 주요 거점부와 통행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모서리부 등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한다. (필)
-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부와 통행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필)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랑색 등 인지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필)
-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 구조는 이용이 쉽고 개방적인 선형으로 계획한다. (이)

재료 및 색채

- 평탄성, 투배수성 등의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
- 보행 편의를 위해 다른 바닥재질이 연결되는 경계부는 매끈하게 시공하며 같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경계선을 확실히 표시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일반적으로 차도>시설공간>자전거 도로>보행자도로>전면공간>건축물 순으로 구성한다. (이)
- 시설물 등은 개방감 있게 배치하며,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카메라, 볼록거울,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이)
- 별도의 보행로 공간이 없는 차도는 보차혼용도로 방식을 권장한다. (권)
- 보도블록 설치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보도블록]를 준용한다. (이)
- 세부사항은 [도로의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경 및 식재

- 식재 시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조형물 또는 주요 건물의 조망이 방해받지 않게 한다. (이)
- 수종은 대기 중 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뛰어난 종류를 권장한다. (권)
- 안전펜스는 보행폭이 충분할 경우 되도록 설치하지 않고 식수대를 통해 자연을타리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권)

야간조명

-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구분하여 조명 밝기를 정한다. (이)
- 대중교통시설물(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등)의 주변 가로에는 넓게 비추지는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함께 설치한다. (권)

농어촌 특화사항

- 도심지역에 비해 인적이 드문 도로에는 야간 이용 시 범죄예방과 안전성을 위해서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 (필)
- 논두렁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적절한 보행시설물(안전펜스, 보행유도등(돌출형))을 설치한다. (필)
- 마을주차장은 이용 빈도가 높은 입구부 및 시설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이)
-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공간을 계획한다. (권)
-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마을의 첫 인상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상징물과 수목 식재를 활용하여 계획한다. (권)
-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은 컷 오프형을 사용한다. (권)
- 보도블록은 태안군 보행로 환경(좁고 평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은 규격의 인터로킹 방식을 권장한다. (권)

예시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랑색 등 인자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한 사례



▲ 논두렁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적절한 보행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일반사항

- 학교 앞 보행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①
- 학교 앞 도로는 자동차 주정차 금지 단속이 원칙이나, 등·하교 시에는 학원 버스 등 학생들의 교통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는 특성이 있다. ①

■ 재료 및 색채

- 바닥 재료는 사고 발생 시에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친환경 탄성포장으로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①
- 보행안전구역 내 보도는 패턴 및 질감이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며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②
- 어린이의 움직임을 차량 운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목성이 높은 색채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③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각이미지는 시작 구간과 종료 구간에 표기한다. ①

■ 설치 및 배치

-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에는 속도저감 알림 표지판,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 차선 등 속도저감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①
- 야간시간대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명계획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인근에 설치한다. 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안전펜스에 대한 자세한 설치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안전펜스]를 참고한다. ①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어린이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①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 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한다. 세부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 예시



▲ 지그재그형 차선 등 속도저감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 사례



▲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한 사례

차도

- 차도란 사람이 다니는 길과 구분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구성된 도로의 한 부분으로서 연석선,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한다.

■ 일반사항

- 보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계획한다. (필)
- 농어촌지역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좁기 때문에 보차혼용도로를 활용한다. (권)
-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운전자가 주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노면요철 포장, 감속시설, 시각적인 노면표시 등을 계획한다. (이)
- 시설물 설치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가로등, 방음벽 등]을 참고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인접 보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연결부에 단차가 없게 한다. (이)
- 도로 선형이 굴곡지고 가시거리가 짧아 급한 제동이 필요한 차도는 마찰력이 우수한 재질로 포장한 것을 권장한다. (권)
- 노면표시에는 인지성을 높이는 고휘도 반사재료 및 발색도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 교통약자 보호구역 포장면에는 속도제한 및 서행 등의 노면표시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필)
-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 등의 주의색채는 주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색채대비를 적용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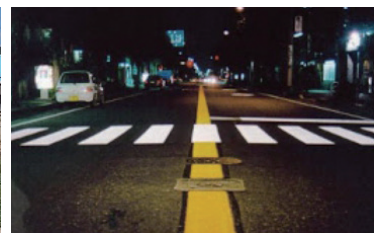
■ 설치 및 배치

- 포장용 아스팔트 재료에 대한 관련 사항은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을 준용한다. (이)
- 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은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한다. (이)
-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게 한다. (이)
-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는 복합 다층식재를 통해 경관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권)
-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공공시각이미지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를 금지한다. (금)
- 수목 식재 시에는 대기 중 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뛰어난 수종의 식재를 권장한다. (권)
- 과속방지턱 20~30m 전방에 운전자의 인지성 향상을 위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 과속방지턱의 설치 높이는 10cm, 설치 길이는 3.6m로 하며 연속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이)
- 턱 낮추기 및 연석 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등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이)

■ 예시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노면요철 포장, 감속시설 등을 계획한 사례



▲ 노면표시에 인지성을 높이는 고휘도 반사재료 (발색도로 등)를 사용한 사례

보도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및 유모차,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부분으로 인도라고도 하며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 공작물을 활용하여 표시된다.
-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1.5 m를 유지한다.

■ 일반사항

- 보도 폭이 좁은 태안군의 여건을 감안, 노상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가로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도록 한다.

■ 재료 및 색채

- 보도포장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내구성, 배수성, 미끄럼 저항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 미끄럼에 대한 저항성, 노면의 평탄성, 원활한 투·배수성 등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한다. (이)
- 기본 색채는 저명도, 저채도를 사용하고 포장재질은 2가지 이하로 제한한다. 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제외한다. (권)
- 바닥재질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재질간의 경계부 마감을 미려하게 시공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높인다. (권)
-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탄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시 충격이 완화되도록 계획한다. (이)
- 보도 유효 폭이 좁은 보도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인들의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색채변화 및 현란한 패턴 적용을 금한다. (금)
- 차도를 좁혀 보행로 확장을 권장하며 어려운 경우, 단차를 제거하고 보행로와 차도를 재료 및 색채로 구분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통행구역 내 고정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금)
- 횡단경사는 1~2% 이하로 설계하여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 부분 턱 낮춤은 1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의 폭이 8m 이상일 경우에는 2개 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최소 보도폭인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은 최소 1~1.2m로 허용할 수 있다. (권) (농어촌)
-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의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이)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보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배치를 고려한다. (이)

■ 조경 및 식재

- 보도 폭이 1.5m이하인 도로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지)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도로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를 분리대나 볼라드 등의 시설물로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통행 유무,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분류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다.

■ 일반사항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고 시설물은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이)
-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분리하여 자전거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이)

■ 재료 및 색채

- 포장면은 투수성 탄성포장재나 미끄러짐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권)
-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장한다. (권)
- 자전거 도로 표준색을 적용하되, 자전거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배수로와 배수구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권)
- 야간 이용이 빈번한 구간에는 안전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등과 유도등 설치를 권장한다. (권)
- 자전거 도로 표지는 사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자전거 보관대는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세한 설치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자전거 보관대]를 참고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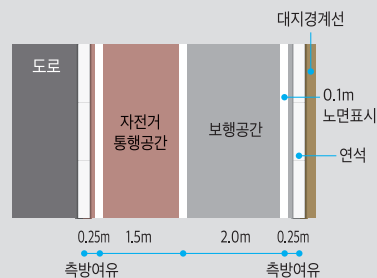
〈관련법규 /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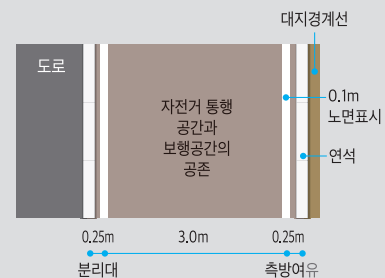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

-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는 자전거 1개 차로 기준폭 1.1m(한 방향) 외에 보도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교통량이 적을 경우, 보도의 최소 유효폭 1.2m를 적용할 수 있다.
- 노면표시, 이질재료 사용, 측대 설치 등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공간을 엄격히 분리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 지점이 잘 보이도록 식재 간격과 위치를 조절한다.
-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위하여 1열 이상 수목식재나 지피류 등으로 녹지대를 조성한다.
- 교목은 지하고가 2.5m 이상인 수종을 선택하며 측가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 분리형의 경우



■ 비분리형의 경우



4) 항만공간

- 항만공간이란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정박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는 공간을 말한다.

임항시설(항구, 어항,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 범죄예방	인적이 드문곳이나, 야간 이용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계획과 안전 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유니버설	야간조명은 시민의 안전과 야간활동 등 기본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필수(필), 이행(이), 권장(권), 지양(지), 금지(금)

안전 및 편의

- 구호장비시설물은 위급할 때에 사용하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필)
-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파제, 선착장 등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 (이)
- 야간에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방파제 및 안전펜스 주변에는 조명을 설치한다. (권)

재료 및 색채

- 태안군 해안지역은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과 염분 등에 의한 부식에 강한 재료와 도료를 사용한다. (이)(관광지)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지) (이)
- 바닥재질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한다. (권)

설치 및 배치

- 보행로와 해안 산책로 등을 최대한 조성하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인접하게 설치한다. (이)
- 허가되지 않은 노점 등의 상업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금)
- 임항시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공간 등 휴게/편의 공간을 계획한다. (권)(관광지)
-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

조경 및 식재

- 모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석을 사용하거나 방풍림을 조성한다. (권)
- 항만 주차장은 자연소재를 사용하거나 수목 식재를 이용하여 공간을 분리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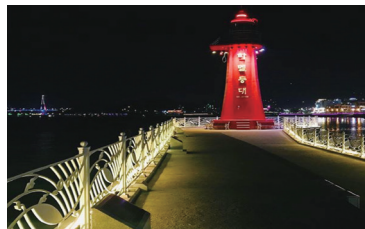
야간조명

- 야간에도 해안경관 및 주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조망공간에는 반드시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필)
- 세부사항은 [태안군 경관계획]을 준용한다. (이)

어촌 특화사항

- 등대와 같은 항만시설을 연계하여 태안군의 지역성을 반영한 테마공간을 연출하게 한다. (권)(관광지)

예시



▲ 야간조명과 조망공간에 안전펜스 설치사례



▲ 등대, 방파제 등을 특화하여 경관 자원으로 이용한 사례

1.4 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

I 공공시각이미지 개요

- 공공시각이미지란 대중에게 공공의 정보를 비롯한 편의를 위한 안내 제공을 위해 공공공간 내에 설치·표시되는 시각매체를 말한다. 공공시설물 중 안내시설물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지자체의 상징물을 비롯하여 슈퍼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매체가 포함된다.

I 공공시설물 규정항목

- 공공시각이미지는 지주 및 패널, 프레임 등 설치시설까지 포함하거나 단순히 시각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항목의 범위가 각기 다르다.

개요	- 해당 시각이미지의 정의 및 파생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사항	- 규정할 항목이 아닌 해당 시각이미지의 관련 법규를 규정한다.
서체 및 색채	- 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적합한 서체 및 시인성 등 명료성을 최적화하는 색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레이아웃	- 이용자의 시각 특성, 설치 장소와 매체를 고려한 시각이미지 레이아웃 구조를 규정한다.
기타 표기요소	- 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픽토그램 등 기타 기호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시	-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기존 시각이미지 사례를 제시한다.

I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체계성	전달하려는 정보의 요지, 우선순위가 반영·정제되어 간략화된 체계성
가독성	정보의 유형에 따른 시인성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반영
기능성	게시판 등 매체의 하드웨어 보다 정보 내용이 중심이 되는 계획
유연성	사용자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 및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체계
연계성	안내시설물 등에서의 사인과 표시되는 정보와의 연계성
지속성	체계적인 계획 및 시행,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사용성 및 격조성 유지

| 적용대상

- 태안군 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대상을 근거로 하여 태안군 실정 및 현황에 부합되게 중분류 4종, 소분류 11종으로 규정하였다.

분류		
공공 시각 이미지	표기요소	태안군 시각이미지 구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요소
		색채, 공통서체, 픽토그램
	정보이미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필요한 유도시설물에 적용되는 시각이미지
		주차안내, 버스·택시안내, 규제안내
	관광안내이미지	관광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에 표시되는 이미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관광유도표지판, 관광해설표지판
	용품이미지	공공용품에 표시되는 시각이미지
		비상용품 관련이미지, 복지용품 관련이미지

| 관계법령

참고법령	공공시각	정보디자인	도시 브랜드 상징
[도로표지 규정 및 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	○	○
[도로표지 규칙안내 지명의 선정 및 표기 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I 세부가이드라인

1) 표기요소

- 태안군 공공시각이미지의 표기요소란 표기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색채, 서체, 픽토그램 등 기호를 말한다.

색채	공통서체	픽토그램
----	------	------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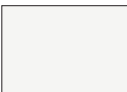
■ 색채적용방향

- 태안군 공공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색채는 태안군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채와 함께 공공시각이미지인 표지 시설물에 표기되는 문자에 적용되는 색으로서 태안군 CI 표준디자인 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색채 중 적합한 색채와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 태안군 CI 표준디자인 관리규정에서는 색채 체계가 지정색인 PANTON색채과 CMYK 및 영상에 사용되는 RGB체계로 표시하고 있으나,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NCS 색채 체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NCS 색채 표기를 환산하여 병기한다.
- 바탕색 : 문자 등 정보가 표기되는 바탕에 적용되는 색채로 시설물로 범주에 속하며 바탕색에 따라 표기색이 바탕에 적합한 색채를 제시한다.
- 표기색 : 시각이미지를 표시하는 색채로 바탕색에 따라 인지가 가능하도록 대비를 이루는 색채를 제시한다.

■ 색채선정

- 바탕색 : 바탕색의 지정 색채는 충청남도 시설물 색채계획에 따른 백색, 옅은 회색을 비롯하여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색채인 갈회색, 모래색을 사용한다.

바탕색

1) S0300-N(백색)		2) S2000-N(옅은 회색)	
3) S6005-Y50R(갈회색)		4) S1010-Y(모래색)	

- 표기색 : 표기색의 지정 색채는 백색, 회색, 검정색을 비롯하여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색채인 갈회색을 사용한다.

표기색

1) S0300-N(백색)		2) S6000-N(회색)	
3) S9500-N(검정색)		4) S6005-Y50R(갈회색)	

상징색

1) 1070 Y80R 동백적색		2) 2060 R80B 안면청색	
----------------------	---	----------------------	---

- 기타 지정색 시각이미지에 표시되는 픽토그램, 심볼마크 등은 표기색이 아닌 지정색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색이 표기색과 유사한 경우 표기색을 우선 적용한다.

규정색상	의미 또는 목적	사용보기
빨강 7.5R 4/15	 방화, 금지, 정지, 고도 위험	방화, 소화, 금지, 정지, 경고표, 화학류 표지  야영금지
노랑 2.5Y 8/14	 주의, 경고	주의 표지, 감전 주의 표시, 바리케이드, 가전제품의 경고 표시  위험특고압
녹색 10G 4/10	 안전, 피난, 위생, 구호, 보호, 진행	안전 지도표지, 안전기, 비상구 방향, 대피소, 특정구역, 통행신호  비상구
파랑 2.5PB 3.5/10	 의무적 행동, 지시	지시 표지, 운전 휴게, (전기차 충전소)  구명복착용
주황 2.5YR 6/14	 위험 항해, 항공의 보안시설	위험 표지, 배관계 식별 위험 표시, 구명 보트 구명구, 구명대, 수로 표지, 선박  선박

파랑은 원형 속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색으로 간주한다.
 안전색 및 안전표지- 아동미술 용어사전, 박현일, 이담북스

- 시각이미지가 작은 경우 밝은 배경색과 어두운 표기색과 같이 대비를 이루어 인식이 쉽게 한다.
- 소량 제작품, 기성 패넬 및 시트와 같이 색상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할 경우 기준 색상에서 허용치 폭을 넓혀서 적용한다.(+/- 10%)

■ 시각이미지 표준색채

- 시각이미지는 공공공간 내에서 보여지는 디지털 영상과 벽화 및 슈퍼그래픽, 공공시설물 중 표지판을 의미하는 안내시설물, 그리고 태안군 심벌 마크 및 로고 브랜드 등 도시 상징 이미지가 포함된다.
- 디지털 영상과 벽면에 제작되는 벽화 및 슈퍼그래픽은 활용되는 색채를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이며, 태안군 도시 상징 이미지 또한 색채에 관한 규정이 활용 매뉴얼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별도의 표준색채 규정이 불필요하다.
- 안내시설물에 활용되는 요소는 문자를 비롯하여 픽토그램 및 안전표지 등 각종 비언어적인 기호가 활용되는데 픽토그램의 경우 국제규격(ISO 3864, Safety colors and Safety signs) 또는 한국산업규격(KS A 3501, 안전색 및 안전표지)이 적용되며 색채 또한 국제 표준과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안전색을 우선적으로 따라야한다.
- 태안군이 주관하여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의 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색채는 안전표지, 교통 표지, 문화관광 표지의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자주, 주황색과 동일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색채에 따른 정보의 명료성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태안군 안내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 표기되는 문자의 색채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자의 색채는 바탕이 되는 시설물의 표지색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보의 명료성과 절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명도차, 채도차의 기준을 제시하며 농여촌 지역에 적용되는 유도시설물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주목 효과를 높이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입체문자가 널리 활용되는 시점에서 규모와 정보량의 최적화(Compact) 관점에서 효율적인 입체화 방안을 제시한다.
- 바탕색에 대비해 문자색이 높은 명도, 밝은 색상(명도 단계), 높은 채도, 따뜻한 계열의 진출색 일때 명료성이 높아지는 원리를 적용하였다.

■ 입체문자에 적용되는 색채

- 입체문자는 문자 내부에 조명을 내장하기 때문에 야간에 효과는 우수하나 주간에는 문자의 측면부와 바탕에 생기는 그림자로 인하여 문자의 명료성이 저하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한 색채(배색) 지정이 요구된다.
- 앞서 제시한 바탕과 명료성 조건이 적용되는 밝은 바탕에 어두운 글자, 바탕과 문자색의 밝기(명도)가 동일한 입체문자는 명료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탕색보다 밝은 문자색으로 계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명도차를 주거나 측면부 및 문자에 테두리를 두거나 바탕색과 문자색을 분리하고 다른 색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입체문자의 돌출 정도 또한 명료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돌출되는 높이는 사용되는 문자의 가장 가는 획보다 얇게 적용하여야 가독성이 확보된다.

평명 표시	 1-1 ○ 양호  2-1 ○ 양호  3-1 × 불량  4-1 △ 보통  5-1 △ 보통  6-1 ○ 양호
	- 1-1 : ○양호, 고명도 배경에 저명도 표기(명도차 50이상) - 2-1 : ○양호, 저명도 배경에 고명도 표기(명도차 50이상) - 3-1 : × 불량, 고명도 배경에 저명도 표기(명도차 30이하) - 4-1 : △보통, 저명도 배경에 고명도 표기(명도차 30이하) - 5-1 : △보통, 고명도/진출색 배경에 저명도/후퇴색 표기 - 6-1 : ○양호, 저명도/후퇴색 배경에 고명도/진출색 표기
돌출 (입체) 표시	 1-2 × 불량  2-2 ○○ 매우양호  3-2 ×× 매우불량  4-2 ○ 양호  5-2 × 불량  6-2 ○○ 매우양호
	- 1-2 : × 불량, 고명도 배경에 저명도 표기(명도차 50이상) - 2-2 : ○○매우 양호, 저명도 배경에 고명도 표기(명도차 50이상) - 3-2 : ×× 매우 불량, 고명도 배경에 저명도 표기(명도차 30이하) - 4-2 : ○양호, 저명도 배경에 고명도 표기(명도차 30이하) - 5-2 : × 불량, 고명도/진출색 배경에 저명도/후퇴색 표기 - 6-2 : ○○매우 양호, 저명도/후퇴색 배경에 고명도/진출색 표기

공동서체

- 태안군 공동서체는 2017년 수립된 '태안군 이미지 통일화' 기본편에 수록된 공동서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이미지의 문자 표기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 공동서체는 별도로 지정된 로고타입이나 슬로건 외 일반적인 명칭 및 정보의 표기에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된 태안군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사용자에게 정보를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달한다.
- 공동서체는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여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서체로 하며 외국어 표기는 정보량을 절제하기 위해 영문을 기본으로 한다.
- 한글 표기는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각각 글자의 획 굵기가 보통인 일반 서체와 굵은 볼드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 볼드체는 제목, 명칭 등에 사용하여 일반 서체와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서체의 인지도는 앞의 색체에 따른 정보의 명료성에서 제시한 내용을 따르며 반드시 굵기가 굵은 볼드체가 인지도가 좋은 것은 아니다.
- 특히 문자를 입체로 표현할 때에는 볼드체보다 굵기가 가는 일반 서체가 명확하게 읽힐 수 있다.
- 영문체를 보조표기로 사용할 경우, 한글보다 작은 크기로 적용하되 함께 표기되는 한글 문자 높이의 2/3 이상의 크기를 유지하며 문자 폭을 좁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
문

산돌고딕, 산돌명조

산돌고딕
산돌명조

영
문

Univers Condenced,
Time new roman

Univers Condensed
Time new roman

한
문

한문산돌고딕

漢文

픽토그램

- 태안군은 어느 지역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곳으로 일반적인 정보전달 수단인 문자 못지않게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비롯하여 개별 기관까지 각자의 픽토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의 혼돈만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픽토그램의 경우 국제규격(ISO 3864, Safety colors and Safety signs) 또는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300여종의 공공시설 안내표지를 준용한다.
- 색상은 금지, 주의, 위생, 지시, 항해 이외의 픽토그램은 태안군 별도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픽토그램 색상 적용 예시(태안군 색상적용) / 규정색상 적용 예시

2) 정보이미지

- 정보이미지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도시설물에 적용되는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주차안내

버스·택시안내

규제안내

주차안내

- 주차안내란 주차장 관련 이미지로 주차장 안내표지(차량유도용 표지), 주차장 이용안내, 장애인 주차안내, 주차면 번호 등 주차장과 관련된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 일반사항

- 노상·노외 주차장표지는 주차장법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 색채 : 바탕은 녹색, 글씨(고딕)는 흰색
- 노외주차장 표지 : 제 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 서식과 그 밖의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 서체 및 색채

- 문자의 자간 및 행간에 통일성을 주어 가독성을 높인다. (필)
- 바탕색을 기본으로 상징색은 전체 표지판 면적의 15%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권)
- 건물에 부착되는 표지의 판 색상은 건물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한다. (권)
- 야간에 식별이 필요한 문자나 기호는 도로표지의 반사지 색채규격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권)

■ 레이아웃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중으로 표시한다. (필)
- 도로 폭에 따라 주차장 안내 표지판 크기를 달리하여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

■ 기타 표기요소

- 모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픽토그램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노면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기한다. (필)
-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요금 등의 전달해야할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필)

■ 주차안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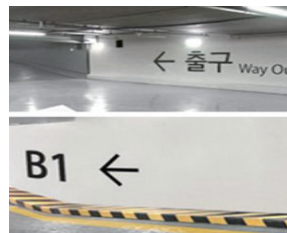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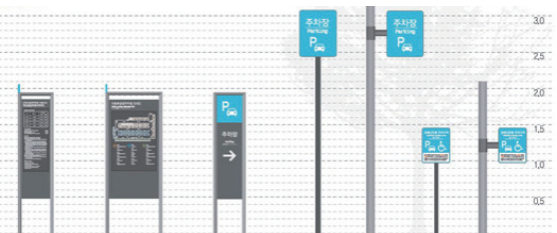
▲ 사용자가 찾기 어려운 주차장 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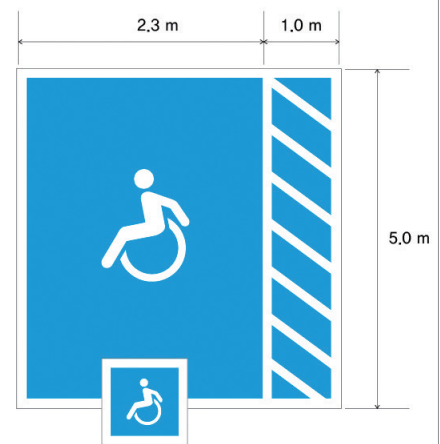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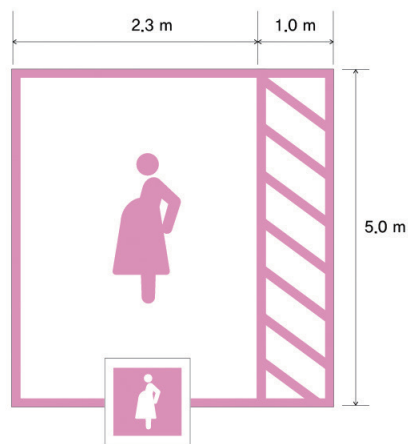
▲ 가독성이 떨어지는 전기자동차 충전 이용 안내 표지



▲ 사용자가 찾기 어려운 주차장 안내 표지



▲ 가독성이 높게 통일된 주차 안내체계



▲ 전면에 이중 표시된 임산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 주차장 안내 표지판 예시

버스·택시안내

- 버스·택시안내란 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버스노선 안내도(출·도착 시간), 버스정류장 표지(전 위치, 현 위치, 다음 위치)나 부착 광고물 등의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 일반사항

- 승강장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정보물은 정돈을 위해 크기를 규격화하고 부착 위치를 정하며 게시한 후 용도가 다된 정보물은 수시로 교체하거나 수거한다
- 다른 시설물과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이격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습득할 때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필)

관련법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표지를 도로에 설치할 경우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0~20cm 벗어나게 설치한다.
-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식재 등으로 시야가 가리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 서체 및 색채

- 문자의 자간 및 행간을 정하고 통일성을 주어 가독성을 높인다. (필)
- 외국어 병기표기는 영어표기를 원칙으로하며 관광지 버스승강장에 우선으로 적용한다. (권)
- 표기되는 문자는 태안군 지정서체를 사용하며 색상은 승강장 구조물 색채와 대조를 이루도록 명도차이가 있는 색상을 적용한다. (명도차 6이상) (권)

■ 레이아웃

- 노선표기도는 이용자가 앉아있을 때 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자가 선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높이에 부착한다. (필)
- 승강장에 부착하는 정보물은 외부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내부와 바깥 양면에 부착한다. (권)
- 버스 내부에서의 정보 인식과 보행자 관점에서의 정보 인식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보(시각정보 시스템) 체계를 갖춘다. (권)
- 버스승강장 표시인 표준 픽토그램과 명칭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게 하며 승강장 현 위치 및 전, 후 정거장 명칭 순으로 한다. (필)

■ 기타 표기요소

- 군 상징물 및 브랜드는 크기 및 표시를 최소화한다. (권)

■ 버스·택시안내 현황



▲ 정리되지 않은 버스 안내 이미지들과 불법부착물



▲ 현위치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진, 다음 목적지명 부재



▲ 버스정류장과 연계성이 없는 버스승강장 안내표지

■ 예시



▲ 정리된 버스 노선안내표지와 광고물 그리고 개방성을 높이는 재료 선택



▲ 보도 폭이 좁은 곳에 설치한 체계적인 버스승강장 안내표지



▲ 고령자를 배려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통해 음성지원 및 정보성을 높임.



▲ 다른 시설물이나 수목과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규제안내

- 규제안내란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위험, 금지, 주의, 경고, 지시, 안전 등을 안내하는 표지를 말한다.

■ 일반사항

- 외국어 표기가 없으며, 규제표지판이 중복 설치되었고 디자인 통일성 부족하다.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군 지리적 특성에 따라 해양관련 안내표지가 비중있게 사용된다.

■ 서체 및 색채

- 동일 시설물 내 다양한 서체 사용을 금지한다(단, 한글과 영문 병기는 가능). (금) (이)
- 가독성 향상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하지 않는다. (이) (금)
- 정보의 내용을 담은 문자, 그래픽의 색채는 배경과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도록 한다. (필)

■ 레이아웃

- 정보전달의 효율을 위하여 표시 면적 외에 여백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권)

■ 기타 표기요소

- 모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픽토그램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필)



▲ 물놀이 안전수칙- 문장 배치가 정렬되지 않음



▲ 금지행위 규정(텐트, 물건건치, 쓰레기 투기, 시설물파손)- 규정 사항 가독성이 떨어짐



▲ 샤워장 안내표지- 안내문구 통합 필요

■ 예시



▲ 금지 사인을 간결하게 정리



▲ 내부 조명방식



▲ 자체발광식(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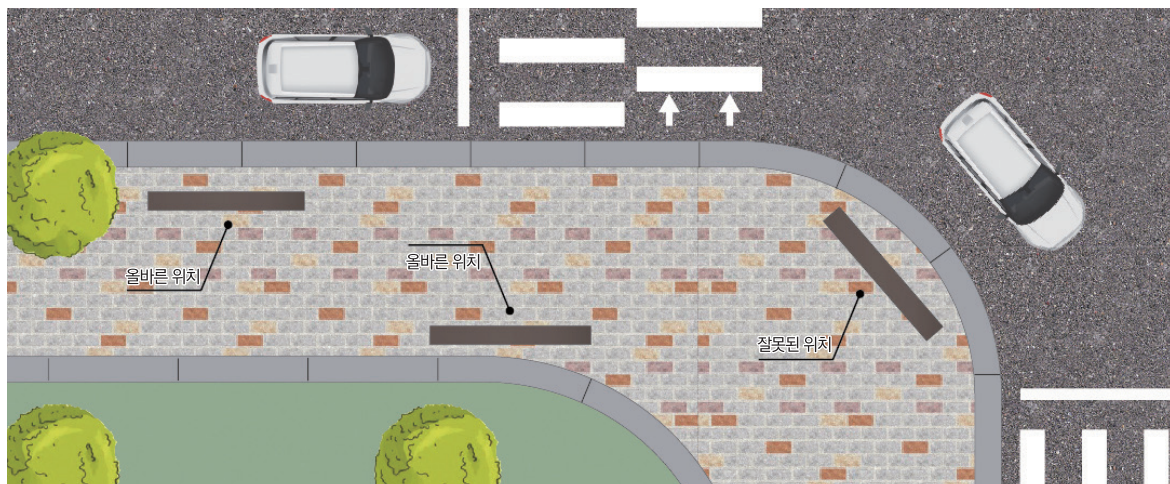


▲ 규제안내 표지 예시

3) 관광안내이미지

- 관광안내이미지는 지역주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관광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말하며, [충청남도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관광유도표지판	관광해설표지판
구분	현황	문제점 도출		
종합관광안내표지판			통일성 부족 유지관리에 어려움	
관광유도표지판			외국어 표기 없음 디자인 통일성 부족 방향안내 기능 없음	
관광해설표지판			외국어 표기 없음 통일성 없는 디자인 설치 위치 부적합	



▲ 관광안내이미지 설치 위치 예시

종합관광안내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란 관광지의 지형, 위치, 배치, 교통 등을 종합적인 정보를 표시하여 안내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기존 관광안내도는 통일성 없이 설치 장소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와 구성으로 되어 읽기 어려우며 심하게 노후된 상태이다.
- 최근 정보 취득 방식이 모바일을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보 위치만을 제공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 서체 및 색채

- 동일 시설물 내 다양한 서체 사용을 금지한다.(단, 한글과 영문 병기는 가능하다.)^(이)^(금)
- 가독성 개선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이)^(금)
- 글자의 크기는 적정거리의 사용자 시선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계획한다.^(필)
- 정보의 내용을 담은 문자 및 그래픽 요소의 색채는 배경과 색상, 명도를 비롯한 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게 한다.^(필)
- 표지판 본체와 안내표지의 색채가 조화되도록 한다.^(권)
- 기본색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권)

■ 레이아웃

- 정보전달의 효율을 위하여 표기면적 외의 여백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권)

■ 기타 표기요소

- 외국어, 현재 위치, 현재 위치 명칭, 축척, 방위, 관리기관 연락처 등을 표기한다.^(권)

■ 종합관광안내 현황



▲ 노후되어 읽기어려운 관광안내도



▲ 사용자가 읽기 불편한 높이와 통일성 없는 디자인



■ 예시



▲ 일본 기타큐슈시 관광안내판



▲ 거제시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관광유도표지판

- 관광유도표지판이란 목적지인 관광지의 방향 경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관광지, 관광자원,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등산로나 산책로와 같이 긴 노선을 요약하여 표시한 노선안내 표지판으로 구분한다

■ 일반사항

- 관광유도표지판은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기문구가 4줄 이상 넘지 않게 한다. (권)

■ 서체 및 색채

- 동일 시설물 내 다양한 서체 사용을 금지한다. (단, 한글과 영문 병기는 가능하다.) (이) (금)
- 가독성 향상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이) (금)
- 글자의 크기는 사용자로부터 적정거리인 10~20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계획한다. (필)
- 정보의 내용을 담은 문자, 그래픽의 색채는 배경과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게 한다. (필)
- 표지판 본체와 안내표지의 색채가 조화되게 한다. (권)
- 기본 색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 통일성이 벗어나지 않게 한다. (권)

■ 레이아웃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현재 위치, 출구 위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
- 해당 관광지 명칭, 거리, 방향, 픽토그램 이외의 과다 표기는 지양한다. (금)
- 해당 관광지 명칭이 10음절을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게 한다. (권)
- 주요 표기요소는 한글, 영문, 화살표 및 거리 등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권)

■ 기타 표기요소

- 외국어, 지도, 현재 위치, 화살표, 현재 위치 명칭, 축척, 방위, 관리기관 연락처, 관광경로 등을 표기한다. (권)

■ 관광유도표지판 현황



▲ 사인정보 혼재와 중복된 정보, 디자인 통일성이 부족함.

■ 예시



▲ 일본 후쿠오카(통합된 정보체계)

▲ 서울 종로구(간결한 형태)



관광해설표지판

- 관광해설표지판이란 관광지나 특정 관광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표시한 표지판을 말한다.

■ 일반사항

-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저시력자를 고려한 높이와 크기로 계획한다.
-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하여 점자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안내장치를 설치한다.

■ 서체 및 색채

- 글자 크기는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
- 정보 인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표기색을 사용한다. (필)

■ 레이아웃

- 국문과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전용 안내는 팸플릿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한다. (권)
- 가독성 개선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이) (금)
- 간단한 특징이나 이야기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담는다. (권)

■ 기타 표기요소

- 외국어, 안내문구, 픽토그램, 관리기관 연락처 등을 표기 한다. (권)

■ 예시



▲ 일본 가나자와 성 경내에 설치된 관광해설표지판



▲ 제주도 이충섬 공원에 설치된 관광해설표지판



4) 용품이미지

- 용품이미지란 태안군 [공공용품 편]에 해당하는 공공용품에 표시되는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비상용품 관련이미지

복지용품 관련이미지

비상용품관련이미지

- 비상용품 관련 이미지란 구명장비/응급 구급함, 자동제세동기에 적용되는 이미지로서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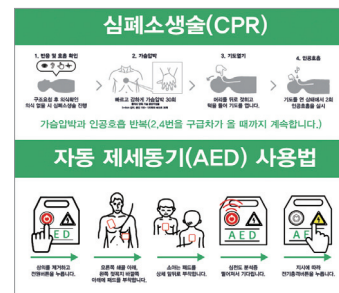
- 서체 및 색채
 - 가독성 개선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이) (금)
 - 비상용품 관련 이미지인만큼 색채 사용은 금지, 주의, 안전, 지시 등 규정색상을 따른다. (필)
- 레이아웃
 - 국가지점번호판의 경우 행정안전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를 따른다. (이)
 - 픽토그램 사용으로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권)
- 기타 표기요소
 - 사용안내문, 인공호흡법 및 긴급신고 전화번호 등은 보관함 외부에 표시한다. (권)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한다. (권)
- 예시



▲ 구명장비보관함에 적용되는 시각이미지 예시



▲ 자동제세동기의 표준 안내표지/ 시각이미지 예시



1. 시설물 명칭 : 국가지점번호
2. 지점번호 : 한글(병행표기 하는 로마자 포함)과 아라비아 숫자
3. 기타 :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QR 코드
5. 시각경계선 : 테두리를 안쪽으로 적용하여 표지판의 시인성을 향상 시킨.
6. 모퉁이 : 곡선처리 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부드럽게 표현

▲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복지용품 관련 이미지

- 복지용품 관련 이미지란 태안군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품에 적용되는 사용방법 등의 표기 및 설명그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복지용품 관련 이미지에 해당하는 용품으로는 비상용 여성/영유아용품, 기저귀 교환대, 스마트폰충전소, 전동휠체어충전소, 폭염대응생수가 있다.

■ 서체 및 색채

- 가독성 개선을 위한 행간, 자간, 장평의 조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이)(금)
- 태안군 복지용품관련 이미지인 만큼 태안군 지정색채를 따른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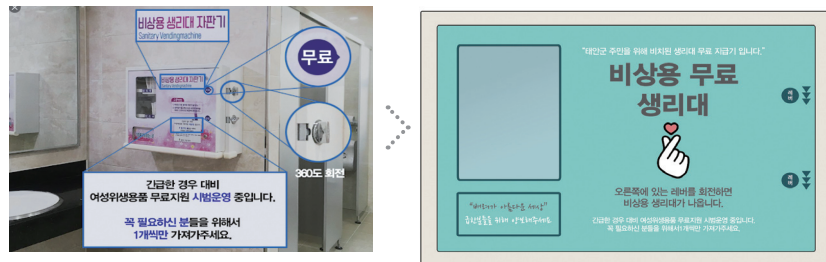
■ 레이아웃

- 사용방법을 용품 표면에 근처의 다른 충전소 위치를 표시한다.(권)
- 전동휠체어충전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면에 설치된 장소들을 표시한다.(권)
- 사용방법을 스마트폰충전소 표면에 기재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권)
-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한다.(권)

■ 기타 표기요소

- 기저귀 교환대에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착用に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한다.(필)

■ 예시



▲ 비상용 여성용품에 적용되는 시각이미지 예시



▲ 기저귀 교환대설치 표시 및 사고 위험 방지 픽토그램



스마트폰 무료 충전소



▲ 스마트폰 무료 충전소에 적용되는 이미지



▲ 전동휠체어 충전소에 적용되는 이미지 예시



▲ 폭염대응 생수 보관함에 적용되는 이미지 예시

1.5 공공용품 가이드라인

| 공공용품 개요

- 공공용품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공공간에 비치된 용품을 말하며, 태안군 공공용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용품,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해둔 비상용품과 태안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복지용품을 포함한다.

| 공공용품 규정항목

- 공공시각이미지는 지주 및 패널, 프레임 등이 설치 시설을 포함하는 대상과 단순히 시각이미지만을 대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항목의 범위가 각기 다르다.

개 요	- 해당 공공용품의 정의 및 파생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사항	- 규정할 항목이 아닌 해당 용품의 일반적인 형태 및 활용 경향에 대해 제시한다.
재료 및 색채	- 장기간 비치되는 특성과 시인성 등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색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설치 및 배치	- 해당 용품 사용이 발생하는 장소 및 사용행태에 부합하는 설치 방식을 규정한다.
예시	-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설치 사례를 제시한다.

| 공공용품 기본방향

- 태안군 공공용품 가이드라인은 총괄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따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이 담겨져 있다.

용이성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상으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 및 구조
견고성	재해 재난 상황에 사용되는 용품 및 장비로 가혹한 환경에 대응한 충분한 내구성 확보
인증성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용품 및 장비로 기능 및 성능이 적절한 인증
인지성	위급한 상황 시에 신속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와 색채 선정

| 적용대상

- 태안군 공공용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태안군 실정 및 현황에 부합되게 중분류 3종, 소분류 13종으로 규정하였다.

분류		
공공 용품	안전용품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품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미러시트/반사경, 안전손잡이
	비상용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한 용품
		구명장비/응급구급용품, 자동제세동기, 제설함
	복지용품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품
		비상용여성/영유아용품, 기저귀교환대, 스마트폰충전소, 우산대여함, 전동휠체어충전소, 폭염대응생수

I 공공용품 가이드라인 요약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 설치 시, 태안군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표면재료를 사용한다. (권)(지역)
- 배경과 대비되는 시인성 높은 노랑색 등을 적용하여 위급상황에서 바로 눈에 잘 띄도록 한다. 단 무분별하게 과다사용하지 않는다. (권)(금)
- 보관함 명칭 표시는 보관함 각 면에 명시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필)
-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보편적인 사용성 및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권)

설치 및 배치

- 모서리 부분을 각지지 않게 하여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한다. (필)
- 방범용카메라는 감시가 필요한 사각지대와 화장실, 휴게공간 등 주요 공간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권)
- 설치 장소에 방범용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판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권)
- 유사한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권)
- 불법 광고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권)
-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필)
- 훼손 여부 시, 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필)
- 보관된 장비의 유실 및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필)
- 고유번호가 부여된 표찰을 부착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필)
-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권)

| 세부 가이드라인

1) 안전용품

- 안전용품이란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품을 말한다.

방법용카메라	비상벨	미러시트/반사경	안전손잡이
--------	-----	----------	-------

방법용카메라

- 방법용카메라란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사전에 범죄발생을 막거나 범죄 발생 시 상황을 감지하여 대응이 이루어지며 영상기록 저장 및 기록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말한다.

■ 일반사항

- 유사한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다른 유사한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권)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여성범죄 취약지역 및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필)
- 빗물, 벌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방법용카메라 화질 불량이 생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 설치 시,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표면이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권) (해안지역)
- 시인성이 높은 노랑색 등을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하지 않는다. (금)

■ 설치 및 배치

- 방법용카메라는 감시가 필요한 사각지대와 화장실, 휴게공간 등 주요 공간을 폭 넓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권)
- 설치장소에 따라 방법용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권)

■ 예시



▲ 유사한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게 배치한 사례



▲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특히 여성범죄 취약지역 및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한 사례



비상벨

- 비상벨이란 범죄 발생 등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보장치로서 경고음과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고 위급상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기능을 갖춘다.

■ 일반사항

-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은 범용 표준디자인이 필요하다.
-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권)
- 비상벨을 누르면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게 한다. (필)
- 비상상황에 이상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 점검을 한다. (필)
-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보편적인 사용성 및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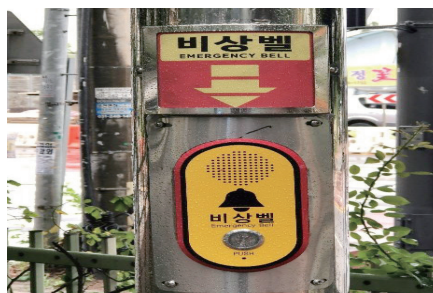
■ 설치 및 배치

- 강·철도 및 성범죄 발생확률이 높은 공중화장실과 골목길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필)
- 위급상황 시 바로 접근해 작동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필)
-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명과 연계하여 설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버튼 안에 LED 램프를 설치하여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권)
- 모서리 부분을 모나지 않게하여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한다. (필)
- 위급한 상황속에서 손이 떨리거나 눈으로 제대로 보지 않아도 촉감으로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도록 버튼 높이를 5mm 가량 돌출되게 한다. (권)
- 지면으로부터 1~1.2m 정도의 낮은 높이에 설치하여 어린이도 쉽게 누를 수 있게 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 설치 시,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 한다. (필 (해안지역))
- 배경과 대비되도록 시인성 높은 노랑색, 빨강색 등을 적용하여 위급상황 시 바로 눈에 잘 띄게 한다. (필)

■ 예시



▲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위급상황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한 사례



▲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조명과 연계하여 설치한 사례

미러시트/반사경

- 미러시트란 시야가 차단되는 지점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반사 기능의 시트로서 보행자의 뒷면을 보이게 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 반사경은 골목길 곡각지점에 설치되는 볼록형태의 반사경으로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의 상황을 알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 일반사항

-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유사한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권)
- 불법 광고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한다. (권)
- 훼손과 오염이 되면 반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며, 훼손 시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필)
- 여성범죄 취약지역 및 공중화장실 등에 미러시트 등을 적극 활용한다. (필)

■ 재료 및 색채

- 거울처럼 상을 잘 비추며 부착과 교체가 용이한 시트지 형태를 설치한다. (필)

■ 설치 및 배치

- 보행자가 후방 상황을 알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의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필)

■ 예시



▲ 여성범죄 취약지역 및 공중화장실 등에 미러시트, 안심거울 등을 부착한 사례



▲ 보행자의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 눈높이에 맞게 설치한 사례

안전손잡이

- 안전손잡이란 미끄럽거나 경사진 보행 경로에서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의 보행을 도우며 미끄러지거나 낙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바닥에 설치되는 전체형과 벽면에 부착하는 유형이 있다.

■ 일반사항

- 고령층 이용이 많은 장소의 경사로, 버스 승강장, 보호 펜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편의를 증진한다. **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복도 양측 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재료 및 색채

- 해안지역에 설치 시, 태안군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면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권**(해안지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 설치 및 배치

-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을 5cm 내외로 하여 잡을 때 손에 쉽게 잡히게 한다. **이**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로 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잡을 수 있게 한다. **이**
-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하여, 사용자가 잡기 편하게 한다. **이**
-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피난유도선과 연계하여 피난이 용이하게 한다. **권**
- 장애인화장실에는 화장실 전용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
-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권**

■ 예시



▲ 화장실 진입 경사로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 사례



▲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 사례

2) 비상용품

- 비상용품이란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해 둔 용품을 말한다.

구명장비/응급구급용품

자동제세동기

제설함

구명장비/응급구급용품

- 구명장비/응급 구급 용품이란 공공공간에 비치하여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용품들을 말한다.

■ 일반사항

- 훼손 여부 및 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필)
- 보관된 장비의 유실 및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필)
- 사용안내문, 인공호흡법 및 긴급신고 전화번호 등을 보관함 외부에 표시한다. (필)
-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게 관리한다. (권)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해안가 주변에 주야간 언제나 눈에 잘 띄게 설치한다. (필)
- 지역별 특화된 형태보다는 일관된 형태와 방식을 적용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바닷물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필)
-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를 적용하지 말고 적색 등 지정색을 적용해 안전시설임을 표시한다. (이) (금)
- 보관함 표시는 보관함 각 면에 하며 명시도가 높은 색채를 적용한다. (필)

■ 설치 및 배치

-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느 곳에서나 인지할 수 있도록 은폐물이 없는 장소에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필)
- 비상 호출기 및 국가지점표시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권)

■ 예시



▲ 훼손 여부 및 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 사례



▲ 국가지점표시에 인접하여 설치한 사례



▲ 구명장비보관함 예시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제세동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전기충격을 통해 응급처치하는 기기를 말한다.

■ 일반사항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6조 2항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 지역별 특화된 형태보다는 일관된 형태와 방식을 적용한다.
- 비상상황에 이상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전면은 내부에 보관된 장비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재료를 사용한다. (필)
-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를 사용하지 말고 적색 및 녹색 등 통용되는 지정색을 사용하여 안전 시설물임을 나타낸다. (이) (금)

■ 설치 및 배치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게 설치 안내 표시를 부착한다. (권)
- 응급 상황 시 설치 장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권)
-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며 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게 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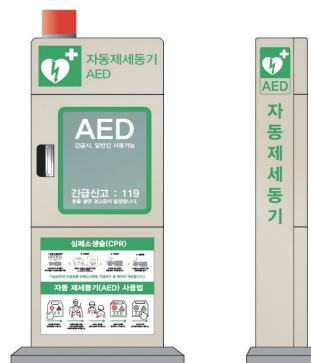
■ 예시



▲ 내부에 보관된 장비 상태가 보일 수 있게 투명 재료를 사용한 사례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설치 안내 표시를 부착한 사례



◀ 자동제세동기 예시

제설함

- 제설함이란 쌓인 눈을 제거하여 차량운행이나 보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넣어 두는 보관함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염화칼슘과 모래를 각각 분리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 보관함에 눈, 비 등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구조로 하며 쉽게 여닫을 수 있게 손잡이를 부착한다. (필)
- 제설제는 습기에 약하므로 보관 시 습기를 막으며 직사광선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필)
- 고유번호가 부여된 표찰을 부착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필)
- 제설함에 태안군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간결하게 적용한다. (권)
- 환경부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한다. (이)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료나 도료를 사용하여 파손, 변색, 오염 등을 방지한다. (권)
- 시인성 높은 노랑색 등으로 하여 비상 상황 시 바로 눈에 잘 띄게 한다. (필)

■ 설치 및 배치

- 도로 옆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제설작업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권)
-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제설함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 예시



▲ 고유번호가 부여된 표찰을 부착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 사례



▲ 시인성 높은 노랑색 등으로 하여 필요시 바로 눈에 잘 띄게 한 사례



▲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제설함 위치 파악이 쉽게 한 사례

3) 복지용품

- 복지용품이란 일상 생활의 편의를 높여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용품을 말한다.

비상용 여성/영유아용품	기저귀 교환대	스마트폰충전소
우산대여함	폭염대응생수	전동휠체어충전소

비상용 여성/영유아용품

- 비상용 여성·영유아용품이란 여성들의 건강권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을 위해 공공기관 화장실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생리대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들을 위해 수유 시설 또는 공공화장실에 비치해 둔 기저귀를 말한다.

■ 일반사항

- 무상 자판기와 코인 자판기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코인 자판기는 안내데스크 등에 비치된 코인을 투입하는 유형이다.
- 사용 방법을 자판기 표면에 표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①
- 코인 자판기의 경우, 안내데스크 등에서 코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②
- 자판기 운영에 관한 불편 사항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③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 오염, 갈라짐 등 외부 노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④

■ 설치 및 배치

-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화장실에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인다.⑤
- 제품은 식약처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한 제품 중 판매 상위 3사의 제품 중 선택하여 제공한다.⑥

■ 예시



▲ 사용방법을 자판기 표면에 기재해 쉽게 사용 할 수 있게 한 사례

기저귀 교환대

- 기저귀 교환대란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들을 위해 수유 시설 또는 공공화장실에서 쾌적하고 편하게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게 비치된 용품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유아 피부에 직접 닿는 용품이라서 청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필)**
- 위생을 위해 사용 시마다 교체되는 일회용 커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색, 오염, 갈라짐 등 외부 노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필)**
- 유아 피부가 직접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소재를 덧댈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이용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 설치 착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표시한다. **(필)**
- 주기적으로 벨트 및 버클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필)**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권)**
- 기저귀 교환대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 이상으로 낮은 높이에 설치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 남성 육아참여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족/공용화장실을 만들어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권)**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

■ 예시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 설치 착용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한 사례



▲ 남성 육아참여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족/공용화장실을 만들어 설치한 사례

스마트폰 충전소

- 스마트폰 충전소란 주민 편의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공간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충전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 일반사항

- 기존의 공중전화 부스 내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충전소로 재사용할 수 있다. (권)
- 주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
-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무분별하게 장시간 사용하지 않게 한다. (권)
- 비상 충전 용도로 10분 정도의 사용시간을 갖게 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분실이나 외부 노출에 따른 변색, 오염, 갈라짐 등을 방지한다. (필)

■ 설치 및 배치

-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효용성을 높인다. (권)
- 이용자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또는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며 위치 안내 QR코드를 부착한다. (권)
- 충전하는 동안 주민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편의/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권)
- 사용 방법을 스마트폰 충전소 표면에 기재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권)

■ 예시



▲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 사례



▲ 사용방법을 스마트폰충전소 표면에 기재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사례

우산대여함

- 우산 대여함이란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우산을 비치해둔함을 말한다.

■ 일반사항

- 태안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대여함 외부에 간결하게 표시한다. (권)
- 우산 대여함은 우산 하나당 하나씩 꽂아둘 수 있는 구멍을 두어 정돈이 가능하게 한다. (권)
-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회수율을 높이게 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우산을 여러개 꽂아도 쓰러지지 않게 한다. (권)
- 우천 시 사용되는 것으로 우산은 시인성 높은 노랑색 등 지정색 적용을 권장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이용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효용성을 높인다. (권)

■ 예시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 설치 착용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한 사례



▲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회수율을 높인 사례

폭염대응생수

- 폭염대응생수란 여름철 무더위가 심할 때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태안군 주민이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비치된 갈증해소를 위한 생수를 말한다.

■ 일반사항

-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한다. (권)
- 생수와 보관함에 태안군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간결하게 적용한다. (권)
-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태안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권)

■ 설치 및 배치

-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 승강장 또는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에 배치하여 효용성을 높인다. (권)
- 생수 보관은 전력공급이 가능한 곳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보관하게 한다. (권)
- 생수를 보관하는 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필)

■ 예시



▲ 이용빈도가 높은 승강장에 배치된 사례



▲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사례

전동휠체어 충전소

- 전동휠체어 충전소란 장애인과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전기로 작동하는 휠체어의 충전소를 말한다.

■ 일반사항

-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충전소로 재사용할 수 있다. (권)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하고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수시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 (필)
- 다른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게 충전소 입구에 근처의 다른 충전소 위치를 표시한다. (권)
- 전동휠체어 충전장소이기 때문에 접근에서 사용까지 전체적으로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한다. (필)

■ 설치 및 배치

- 충전하는 동안 이용자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편의/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권)
- 이용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권)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고령자의 편의성 높인다. (권)(농어촌)
- 충전하는 동안 다른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필)

■ 예시



▲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표면에 다른 설치장소를 표시한 사례



▲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한 전동휠체어 충전소 사례

1.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개요

- 옥외광고물이란 건물 벽면이나 별도의 게시대에 설치되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볼 수 있게 부착한 광고물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 규정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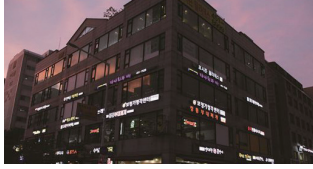
- 태안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해당 광고물의 개요 및 일반사항, 규정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규정항목은 형태, 규격, 수량 및 설치 방안을 담고 있으며, 준수 여부의 강도에 따라 필수항목과 권장항목, 지양, 금지로 구분된다.

개요	- 유형별 옥외광고물의 정의 유형을 설명한다.
일반사항	- 규정할 항목이 아닌 해당 광고물의 일반적인 활용 및 제작 기준을 제시한다.
형태 및 규격	- 유형별 및 설치 공간에 따른 광고물의 규격 및 형태를 규정 한다.
수량 및 설치	- 해당 광고물의 설치 가능 수량 및 조명방식, 설치 환경을 규정한다.
재료 및 색채	- 색채 수 및 제한되는 색채, 재료를 규정한다.
표기요소	- 광고물 유형에 따른 정보의 명확한 전달 방안을 규정한다.
특화	- 관광지 및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예시	-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설치 사례를 제시한다.

| 옥외광고물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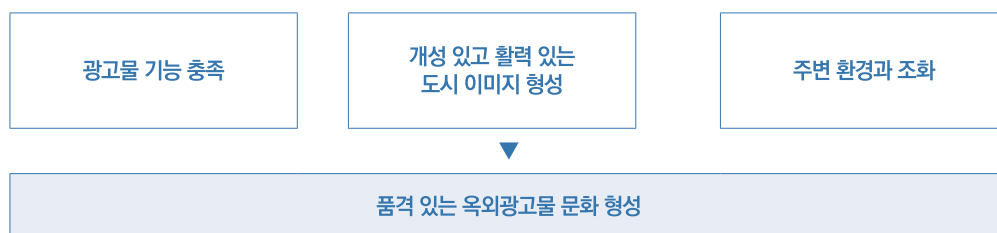
- 태안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태안군 내 가로와 건축물 현황 및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품격을 높여주는 정돈된 구성과 절제된 형태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게 한다.

조화성	건축물 또는 장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일체감 있는 형태
간결성	표시 면적 및 색채, 표시 요소의 간결
통일·독창성	한 건물 또는 블록 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독창성 추구
차등성	건축후퇴선 준수 건물의 차등
기능성	규모나 색채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의 기능 추구
지속성	원활한 유지관리, 내용 변경 및 탈착 용이한 재료, 구조

원칙 1	• 크기의 적정성과 조화성 - 설치되는 벽면 크기 및 형태에 따른 적정 크기 - 건물 및 가로 형태, 구조에 따른 조화성	
원칙 2	• 표기의 간결성과 전달성 - 상호 및 업종 등 핵심적인 내용의 간결한 표기 - 배경의 여백을 두어 내용의 명확한 전달 - 픽토그램 등 도형의 사용으로 표기 간소	
원칙 3	• 대상에 따른 유연성 - 설치 지역에 따라 형태 및 사용 색상의 다양성 - 업종에 따른 간결성 및 조형성의 차등 - 건축 형태 및 입점 업소에 따라 통합설치 권장	
원칙 4	• 자연재료 및 안전성 - 고품격 해양휴양도시에 걸 맞는 재료의 사용 - 자연환경(재해)에 대응하는 내구성 및 안전성	
원칙 5	•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 - 야간경관의 요소로서 계획적인 조명 연출 - 과도한 광량 및 현란한 조명의 자제	

활용방법

-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 수준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업소의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활력있는 도시 정체성을 창출하게 한다.
- 태안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맞는 품격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활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태안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인 건축물 중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대상, 그밖에 옥외광고물 조성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태안군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설치 지침으로 활용한다.

활용대상

- 행정 부문(광고물 허가권자/대행자, 광고물 단속 담당), 심의 부문(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작 부문(광고물 제작자, 광고물 유지 보수 위탁자, 광고물 디자이너), 점포 소유주 및 입점자가 활용한다.

활용시기 및 방법

- 심의 및 자문 시에는 도서에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며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사업 승인신청, 심의, 허가 신고시에 사용한다.

적용대상

- 태안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태안군에서 설치 규정이 요구되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창문이용간판 등 중분류 2종, 소분류 5종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공연간판, 옥상간판은 충청남도의 설치 규정을 따른다.

* 현수막은 별도 게시대에 표시하는 유형으로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본다.

분류	세부항목	
옥외광고물	건물부착 표시형	건물 벽면이나 창문을 이용하거나 돌출된 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별도표시형	건물부착 이외의 별도로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관련법령

참고법령	건물부착표시	별도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	○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	○

I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요약

형태 및 규격

-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유형을 선택하되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채널형 간판)으로 설치한다.
- 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가급적 동일한 유형 및 형태, 서체를 사용하여 조화성을 갖게 한다.
- 개별 문자의 크기는 세로 70cm 이내로 한다.

수량 및 설치

- 한 업소 당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이며 각각부 등 예외인 경우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 벽면이용간판은 별도의 연결바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손상을 적게 하며 간판 교체가 수월하게 한다.

재료 및 색채

- 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가급적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한다.
-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또한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유사성을 갖게 한다.
-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파손 및 변질에 강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 고채도의 원색, 명도 대비가 심한 색상, 원색 계열의 전면 사용을 지양한다.
- 간판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 목재 등 자연 재질의 사용을 확대한다.

표기요소

- 전달하는 표기 내용 및 정보를 간결하게 하여 전달력을 높게 한다.
- 문자 표시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표기를 같이 한다.

조명

-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조명의 밝기가 간판표시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눈부심이나 가로수 등 수목에 피해가 없게 한다.
- 네온 및 점멸 방식의 조명은 허용된 지역 외에 설치하지 못한다.
- 외부 광원을 활용할 경우 광원이 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않게 한다.

지역별 적용

- 지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설치 수량 및 유형, 방식의 제한은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에 명시된 일반지역, 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 특화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의 정도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강화', 일반지역은 '평이', 상업지역 및 특화지역은 '허용'으로 규제 및 허용 성격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 상 건축 후퇴선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업소는 돌출간판 설치, 지주이용 간판 설치, 벽면이용간판의 돌출 폭, 디지털 광고 설치에 대해 차등된 적용을 받는다.

지역 구분	벽면 이용	건물명 간판 (5층)	건축 후퇴선 이행 여부				
			돌출간판	점멸 방식	지주 간판	벽면간판 돌출 폭	디지털 광고
보전관리지역	1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일반지역	1+a	1	1	불가	1	차등	불가
상업지역	1+a	2	1	심의	1	차등	심의
특화지역	1+a	2	1	심의	1	차등	심의

세부가이드라인

1) 건물부착표시형

벽면이용간판

건물부착표시형은 벽면에 부착하거나 돌출된 간판 또는 창문을 이용한 간판을 말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	------	--------

- 건물의 벽면, 유리 벽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문자·도형 등을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이전의 가로형 간판, 건물명 간판이 벽면이용간판에 포함된다).

■ 일반사항

- 설치되는 건축물의 재질, 색채, 부착 면적, 요철 형태, 노후도 등 건축 입면 요소를 파악하여 계획한다.
- 표시면 주변에 여백을 두고 광고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며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 점포의 층수 및 위치, 건물의 규모 및 노후도 등에 따라 별도의 판에 표시하는 판류형과 별도 제작된 구성물을 벽면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입체형으로 구분하여 활용된다.

■ 형태 및 규격

- 벽면이용간판은 1~5층까지 표시가 가능하다. (필)
- 가로 크기는 해당 점포 영역 폭의 80%, 세로는 창문을 제외한 해당 층 영역이며 최대 길이는 가로 10m, 세로 80cm(입체형 45cm) 이내로 표시한다. (필)
- 벽면에서 돌출 폭은 30cm로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진 건물은 45cm, 미 이행 건물은 25cm로 한다. (필)
 - * 판류형 중 벽면 노후 등 건물 상황에 따라 가로 폭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은 입체형을 권장하며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은 입체형을 설치한다. (권) (필)
- 건물상단 간판은 입체형으로 한다(건물명 간판). (권)
- 동일한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업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권)
- 판류형은 단순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료와 서체를 사용한다. (권)
- 입체형의 연결바는 건축물의 외관 및 간판형상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 (권)

■ 수량 및 설치

- 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예외: 1층 주출입구(1㎡ 이하 1점), 곡각지점, 도로 양편, 그 외 조례에서 정한 대상 (필)
- 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금)
- 해당 업소 영역 내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공용영역 표지 금지, 층간 침범 금지) (필)
- 건물의 입면 형태가 간판 부착에 부적합할 때는 규격 및 형태를 조정한다. (권)
- 강풍 등 자연재해에 파손되거나 추락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필)
- 건물상단 간판은 연결바를 설치하지 않고 벽면에 직접 부착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형광도료, 야광도료 및 플렉스 원단이나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금)
- 재료사용에 제한받지 말고 자연소재, 금속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권)
- 업소의 특성을 나타내되 업소 및 한 건물 내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 수는 최소화한다. (권)
- 판류형의 베이스판 및 입체형의 연결바 색상은 건축 외벽색과 유사한 색채로 한다. (권)
- 건물상단 간판은 두드러지지 않는 단일 색채를 사용한다. (권)

■ 표기요소

- 표기요소는 간결하게하며 심볼마크, 픽토그램의 과다한 사용을 지양한다. (지)
- 한 건물 내 간판에는 주표기요소와 보조표기요소를 통일성 있는 구성 및 크기로 적용한다.

- 표기요소의 색채는 배경과 명도 차이를 주며 표기요소는 보조요소보다 선명하게 하여 보조표기 요소와 차등을 둔다. (권)

■ 조명

- 외부에서 비추는 조명방식은 빛이 대상체만 비추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필)
- 판류형 간판에서 조명을 내장하는 경우 전면에서 빛이 발광하기보다 문자나 도형 부분에서만 발광하게 한다. (필)
- 조명을 장착하는 경우 전광 조명, 후광 조명, 전 후광 조명, 면발광 조명 방식 등 간판 및 업종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권)

■ 설치기준

- 건물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의 3면에 건물명이나 상호 등으로 입체형 간판설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로형은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필)
- 5층 이하에만 표시하며, 2~5층은 반드시 입체형으로 한다. (필)
- 돌출 폭은 벽면에서 30cm 이내, 건물명은 40cm 이내로 한다. (필)
- 전광류, 디지털광고의 규격은 동일하며 돌출 폭은 150cm 이내로 하며 건축후퇴선 이행 건물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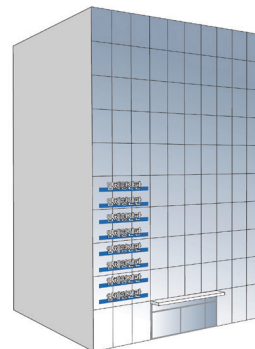
■ 예시



▲ 표기 요소의 색채는 배경과 명도 차이를 주며 주요 표기 요소는 고채도로 선명하게 하여 보조 표기 요소와 차등을 둔 사례



▲ 간판 부착 시에 상하좌우 여백을 두어 가독성을 향상 시킨 사례



▲ 벽면이용간판은 1~5층까지 표시가 가능, 크기는 해당 점포 영역 폭의 80%, 세로는 창문을 제외한 해당 층 영역이며 최대 길이는 가로 10m, 세로 80cm(입체형 45cm) 이내로 표시

▲ 커튼월 벽면과 같이 업소영역 구분이 모호하거나 간판부착이 어려운 경우 일정공간에 연합간판을 설치한다.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 건물의 벽면에서 튀어나오게 부착한 광고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돌출간판은 보행방향을 비롯한 여러 방향에서 간판을 볼 수 있어 상업지역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갖는 광고물로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 돌출간판은 건물면에서 이격되어 보행로 쪽으로 돌출되는 간판으로 보행로가 좁은 공간이나 건축후퇴선이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설치를 지양한다.
- 표시면적이 좁기 때문에 내용을 간결하게 표기하여 광고 효과를 올리고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 한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점한 경우 표시 면적을 사전에 적정하게 배분한다(선입점 점포의 독점 방지).

■ 형태 및 규격

- 지면에서의 높이 및 규격은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보행로가 있는 경우 3m, 없는 경우 4m).^①
- 돌출이 과다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크기를 최소화한다.^②
- 한 건물 내에서 돌출 폭, 표기 구성 및 사용 색채 등 표기 요소를 통일되게 적용한다.^③
- 네온사인, LED 등 점멸방식의 조명 설치를 금지한다.^④
- 단독 돌출간판은 70cmX70cm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벽면 이격 1m 이내.^⑤
- 연립 돌출간판은 가로 70cm, 높이는 입점 업소와 배분하여 정한다.^⑥
- 연립 돌출간판의 개별 간판은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⑦

■ 수량 및 설치

- 바라보는 방향에서 건물 좌측 모서리에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폭이 20m 초과 시 1줄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⑧
- 건물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⑨

■ 재료 및 색채

-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한다.^⑩
- 간판의 틀이나 지지대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보아 이질감이 없는 재료로 한다.^⑪
- 먼저 설치된 다른 간판의 재료나 색채와 동질성을 갖게 한다.^⑫
- 보조 표기요소에 사용되는 색채는 명시도를 높게 하되 작은 크기로 디자인한다.^⑬

■ 표기요소

- 돌출간판의 표기는 상호 위주로 간결하게 표시한다.^⑭
- 심볼 표시를 권장하며 심볼 및 마크가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표시한다.^⑮
- 한 건물 내 간판은 표기요소의 구성 및 크기를 통일성 있게 디자인한다.^⑯
- 주 표기요소의 색채는 배경과 명도로 차이를 주고 보조 표기요소는 크기가 작으면서 선명한 색상으로 디자인한다.^⑰

■ 조명

- 입체형 문자 내부에 조명을 매입하거나 외부 조명방식인 경우 빛이 노출되지 않게 설치한다.^⑱
- 문자나 도형 부분에서만 발광하게 하여 인지성을 높인다.^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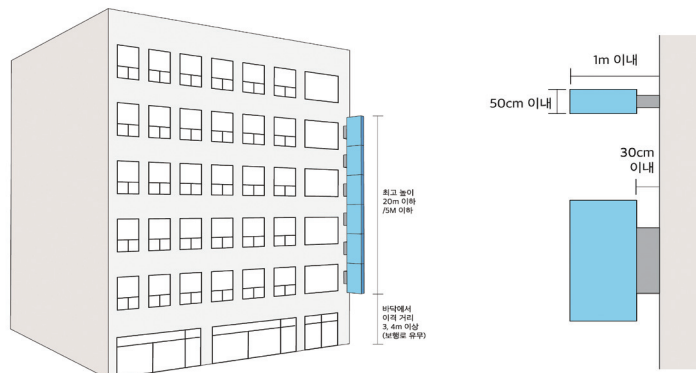
■ 설치기준(도조례)

- 5층 이하에 설치, 최상층 및 주거용 층수 부분에 설치 불가, 최상층이 2층인 경우 2층에 표시 가능, 1층에는 소형 돌출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 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1줄 표시, 건물 내 입점 업소에 따라 면적 배분. 건물 폭 10m 초과 시마다 1줄 추가)/상업지역 및 관광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퇴선 미이행 건물, 목조건물, 가설건물은 제외한다. (이)
- 지면과 간판 하단 보행로 유무 3 또는 4m 이상 건물 상단 높이까지, 전체 돌출폭 1.2m 이내, 세로높이 20m 이내(상업지역은 30m), 간판 두께 50cm 이내, 벽면과 간판 간격 30cm 이내로 한다. (이)

■ 예시



▲ 상호 위주로 심벌을 간결하게 표시한 사례.



▲ 지면과 간판 하단 3~4m 이상 건물 상단 높이까지, 전체 돌출 폭 100cm 이내, 세로높이 20m 이내, 간판 두께 50cm 이내, 벽면과 간판 간격 30cm 이내

창면이용간판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에 문자 및 도형을 표시하여 건물의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디스플레이 매체 포함).

■ 일반사항

- 표시 면적 및 정보를 최소화하여 해당 건물의 외관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으며 조화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이)
- 부착 재료의 색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색 위주의 색채 구성이 되지 않게 한다. (권)
- 벽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방식의 건물에 벽면이용간판의 대체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권)

■ 형태 및 규격

- 창면이용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 창문 및 유리창에 표시할 수 있다. (필)
- 판이나 입체형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며, 도로·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의 광고물은 건물의 1, 2, 3층에 표시할 수 있다. (이)
-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 및 관광지역 건축물 중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진 1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필)
-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 최대 1㎡ 이내로 한다. (필)
- 유리를 차폐하는 부분과 충돌 방지 등 안전기능, 광고표시 부분으로 구분하며 안전기능 부분(띠)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
- 띠형태의 광고표시는 높이 20cm 이내의 띠 형태로 하여 면적을 최소화 한다. (권)
- 한 건물에 여러 점포의 광고가 표시하더라도 유리창 각 면의 형태는 동일하게 구성한다. (권)

■ 수량 및 설치

-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이)
- 벽면이용간판 유형의 규모 및 형태를 갖는 표시는 금지한다(간판 수량에 포함).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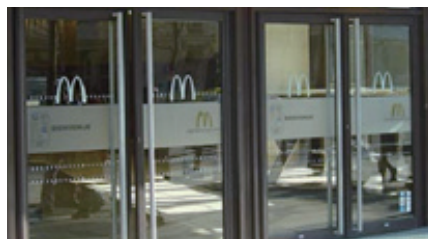
■ 재료 및 색채

- 차폐 부분에는 반투과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정보의 명료성을 높인다. (권)
- 별도의 표시요소가 없더라도 원색 등 특정한 색상의 재료로 창문 전체를 가리는 것은 금지한다. (금)
- 색상에 의한 명료성 보다는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여 배경과 명도 차이가 있게 한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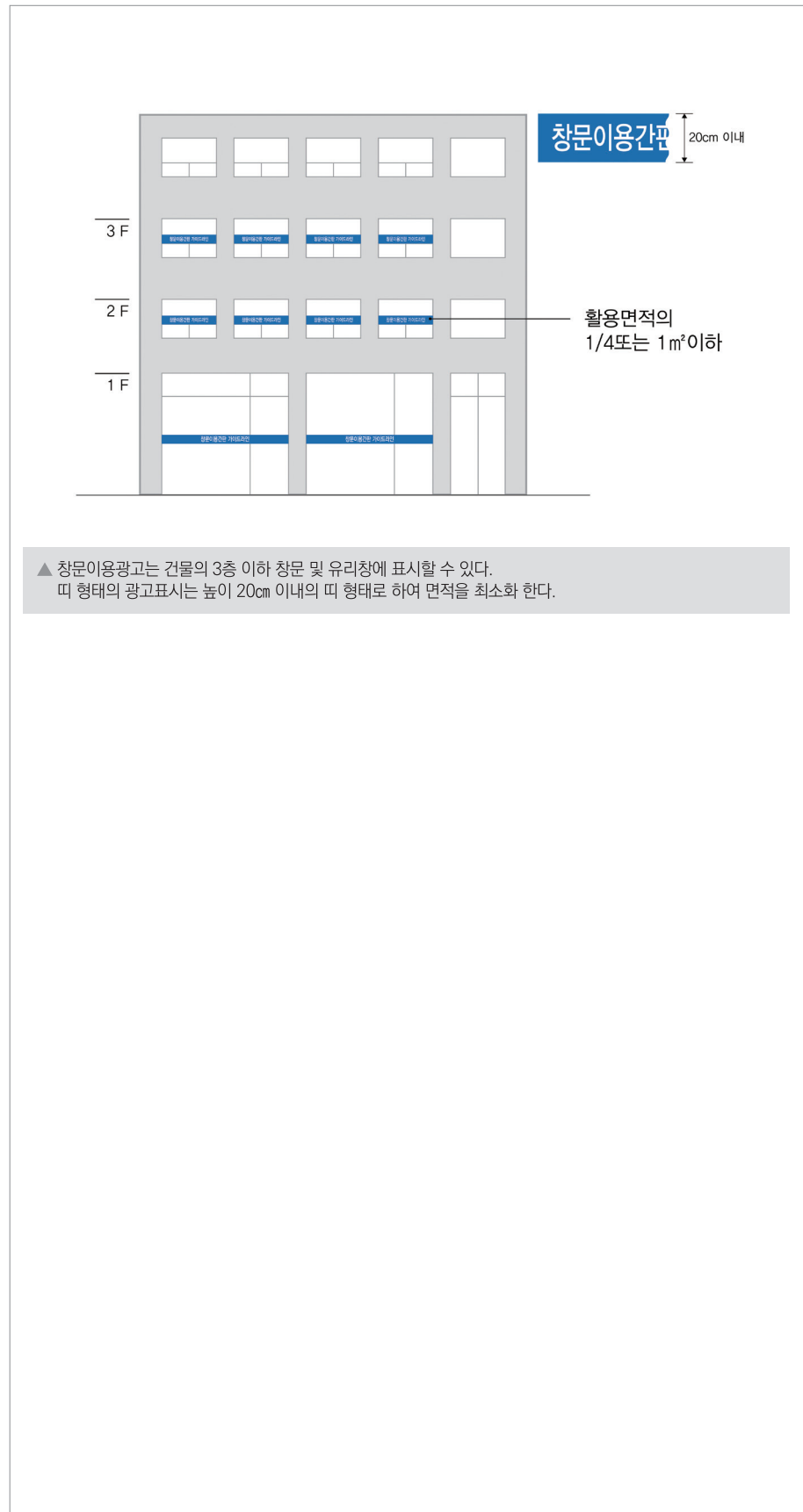
■ 표시요소

- 동일한 문구 등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지양한다. (지)
- 사진물과 같은 실사 이미지 표시는 금지한다. (금)
- 상호 위주의 간략한 정보 및 도형 등 상징물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높인다. (권)

■ 예시



▲ 반투과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정보의 명료성을 높인 사례



2) 별도표시형

- 별도 표시형은 건물에 부착하는 방식 이외의 옥외광고물로서 별도의 부지에 지주를 이용하는 지주이용간판과 현수막 등을 말한다.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지주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판을 지면에 별도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광고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총 수량에 포함).

■ 일반사항

- 태안군의 공간 특성상 도시지역은 업소(건물) 부지 내에 한하여 설치한다.
- 점포나 업소가 도로에서 후퇴되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복잡하거나 공간이 좁은 장소에서의 설치는 지양한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며 다른 간판의 시선방해 등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상호 위주의 최소화한 정보 표시로 가독성을 높이며 시각적 부담을 저감한다.

■ 형태 및 규격

- 지주형간판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안전한 구조와 형태로 설치한다. (이)
-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전체 기둥형 보다 지주 위에 광고판을 부착한 형태를 적용한다. (권)
- 여러 업소가 한 곳에 표시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개별 간판이 교체되는 구조로 한다. (권)
- 지면에서 최대 높이는 해당 건물의 1층 높이(약 4 m)로 한다. (이)
- 부지 내, 부지 밖 등 연립 간판등에 관한 규격 기준은 조례를 따른다. (이)

■ 수량 및 설치

- 건축물의 난간이나 환기구 및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권)
- 부지 내 설치 시, 보도경계선에서 도시지역은 50cm 이상, 그 외 지역은 10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필)
- 가로수 및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 지주가 있는 가로시설물과 중복된 지점에 설치를 피한다. (금)
- 연립형 간판의 표시면 배분은 건물주가 주도하여 간판설치계획 단계에서 결정한다. (권)

■ 재료 및 색채

- 지주 및 간판 베이스 판의 재료는 해당 건물 마감재와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권)
- 지주 및 베이스 판은 무광저채도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권)
- 연립형 간판이라도 각 개별 간판은 전체 간판과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한다. (권)

■ 표기요소

- 정보 내용을 최소화하며 상호 등 주요 표기요소의 크기는 간판 높이의 1/2 이내로 한다. (권)
- 다른 간판에 비해 명료성이 요구되므로 배경과 표기 요소 간에 명도 차이를 둔다. (권)
- 한 건물 내 간판은 표기요소의 구성 및 크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권)

■ 조명

- 입체형 문자 내부에 조명을 내장하거나 외부 조명의 경우 광원이 노출되지 않게 설치한다. (필)
- 지주이용간판에는 점멸방식의 조명은 설치하지 못한다. (필)

■ 설치기준(도·조례)

- 설치 기준은 충청남도 도조례 지주이용간판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지면에서 10m 이내/5m/4m 이내(건물 1층 높이)
- 1면이 10㎡ 이내(합 40㎡ 이내)/5㎡(합 20㎡ 이내)/3㎡(합 20㎡ 이내)
-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상 이격/도시 내 50cm, 보도가 없거나 도시외 지역 100cm

-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1㎡이하 높이 1.5m 이하, 상업지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벽면이용간판과 중복 설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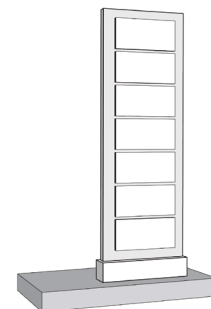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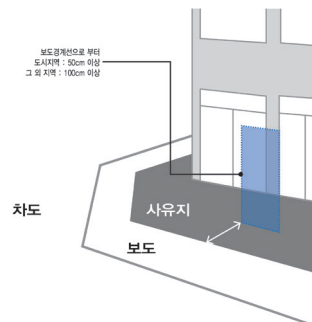
■ 예시



▲ 상호 위주의 최소한의 정보 표시로 가독성을 높이며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 한 사례



▲ 내부에 조명을 매설하거나 외부 조명의 경우 광원이 노출되지 않게 설치한 사례



- ▲ 지면에서 최대 높이는 해당 건물의 1층 높이(약 4m)로 한다.
보도경계선에서 도시지역은 50cm 이상, 그 외 지역은 10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전체 기둥형 보다 지주위에 광고판을 부착한 형태로 한다.

현수막

- 현수막이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 일반사항

- 주변 환경과 조화성 및 연속성을 갖추며 과다한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많은 정보가 표시될 수 있는 광고물로서 정보가 분산되지 않게 가독성이 좋은 서체, 정돈된 구성, 간결한 색채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인다.
- 게시가 불가능한 벽면, 울타리 등에 설치하지 않으며, 벽면에 부착한 경우 하나의 간판 수량으로 인정된다.

■ 형태 및 규격

-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 건물가림막 이용 형태로 게시하되 조례에 의한 대상에 한한다. 예)벽면이용 현수막 게시 가능 대상은 대규모 점포, 대규모 공업 상업 건물, 전시장(필)
- 배경이 되는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계획하며 출입문, 창문, 환기구를 가리지 않게 한다.(필)
- 벽면이용 현수막은 창문을 제외한 건물 면적의 1/50이내로 한다.(필)
-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10m 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필)
- 설치 여건에 따라 1단, 2단 등 소규모 게시대를 설치한다.(권)
-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배치는 높이를 최소화하고 현수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배경이 보이게 한다.(권)

■ 수량 및 설치

- 지정게시대 및 지주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며 주요 경관 및 시설을 가리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권)
- 지정게시대 및 지주는 교통신호 대기 장소 등 광고 효과가 유리한 곳에 설치한다.(권)
- 게시대 및 지주를 포함한 현수막은 강풍 및 충격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권)

■ 재료 및 색채

- 지정게시대 및 지주는 게시 과정에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도색이 필요없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을 할 때에는 견고한 도막이 형성되게 한다.(권)
- 지정게시대에 도색을 할 경우 태안군 시설물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를 적용한다.(권)
- 현수막은 단기간 사용된 후 재료가 재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며 인쇄 범위를 최소화 한다.(권)
- 형광색 및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3가지 이내의 색채를 사용한다.(이)(지)
- 범위가 작은 강조부분에 한해 고채도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다.(허)
- 경관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 색채를 지정할 수 있다.(권)

■ 표기요소

- 벽면이용 현수막은 건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내용만 표시가 가능 하다.(필)
- 운전 및 보행 등 이동 중에 바라보는 현수막 매체의 특성에 따라 주요 표기요소 위주의 간결한 표기 구성을 한다.(권)
- 배경이 비치는 현수막 특성에 따라 인쇄를 하지않는 배경 면적을 넓혀 표시부분을 잘 보이게 한다.(권)
- 사진물 등 실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금)

■ 조명

- 게시시설에 조명을 설치하여 현수막 전체를 골고루 비칠 수 있게 하며, 이때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필)

■ 조례내용

- 규격 /부지 내 도시지역/부지 내 그 외 지역/부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면에서 10m 이내/5m 이내/ 4m 이내
- 게시시설은 한 벽면에 2개, 건물 전체 4개 이내이며 현수막 면적은 건물 면의 1/5 이내,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건물의 1/2 이내
- 게시대는 건물 높이 이내, 게시시설 하단과 지면에서 4m 이상 이격, 벽면에 밀착
- 가로 10m 높이 8m 이내,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 색채를 기본
- 지정 게시대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장소에 설치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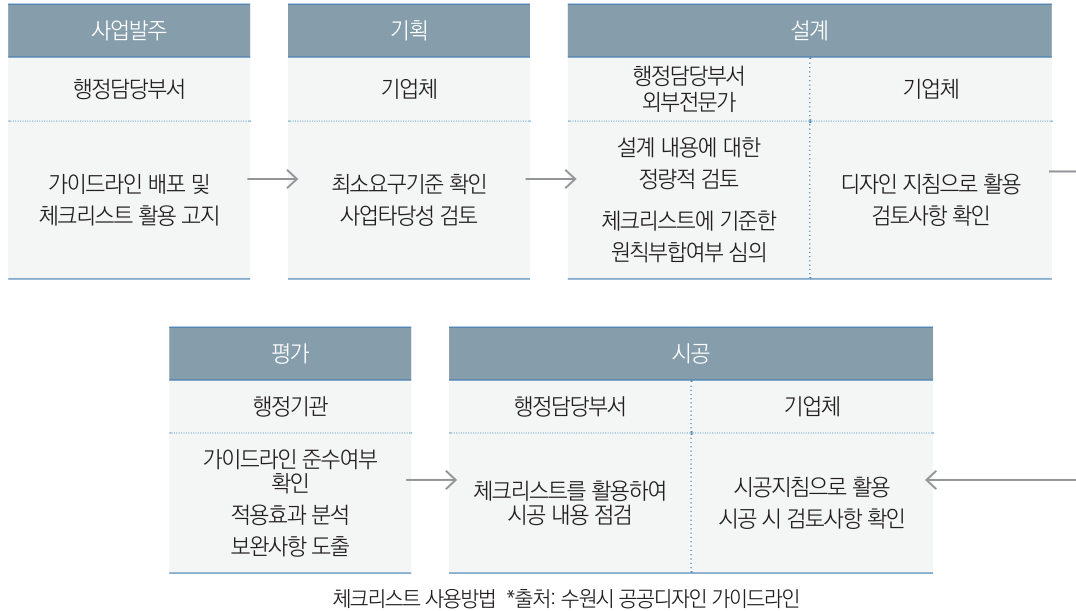
▲ 현수막 특성에 따라 인쇄를 하지 않는 배경면적을 넓혀 표시부분의 명료성을 높인 사례



▲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10m 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

1.7 분야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1)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적용사항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태안군 공공시설물 관련 디자인 심의 및 평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검토 기준은 총 4가지 규정[안전 및 편의,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설치 및 배치] 항목으로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수사항을 설정한다.
- 작성 시 [부분적용/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기재한다.
-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규정항목

안전 및 편의	시설물에 적용되는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형태 및 구조	이용자 및 공간 특성과 원활한 유지 관리에 부합되도록 크기, 기능 중심, 구조 방식을 평가한다.
재료 및 색채	견고성과 안전성, 통합성을 전제로 사용되는 재료 및 마감 방법, 적용 색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설치 및 배치	견고함과 안전을 전제로 시설물의 설치 방식 및 설치 지점, 간격 및 배열,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3) 체크리스트_공공시설물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안전 및 편의	· 시설물의 배치가 보행자의 보행 동선을 가로막지 않는가?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시설물 주변에 여유공간을 두었는가?				
	· 시설물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규모와 형태로 계획되었는가?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의 위치와 개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트 체결부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했거나 캡 등이 설치되었는가?				
	· 보행로 표면에 보행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농어촌 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우 비상벨, 방범용카메라, 조명 등이 설치되었는가?				
형태 및 구조	·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여 기능적으로 디자인되었는가?				
	· 보행 및 사용자 접촉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구조체 등에는 각지지 않은 안전한 형태로 적용되었는가?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형태와 구조로 디자인되었는가?				
재료 및 색채	· 사용성 및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 픽토그램이 사용되었는가?				
	· 내구성이 강한 재료나 도료를 사용하여 파손, 변색, 오염에 강한 재료나 도료가 사용되었는가?				
	· 신체가 맞닿는 부분에 목재, 우레탄 등 촉감이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는가?				
	· 빛이나 상이 반사되는 고광택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 별도의 표면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료 고유의 색채가 유지되었는가?				
	·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가 적용될 대상에 표준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 좁은 공간의 시설물에 눈에 잘 띄는 색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가?				
설치 및 배치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 같은 공간에 설치된 다른 시설물과 색채나 형태가 조화되는가?				
	· 좁은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끼리 연계되거나 통합되는가?				
	· 설치와 이동, 유지 관리, 및 보수가 쉽도록 부분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었는가?				
	·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는가?				

|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1)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적용사항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태안군 공공공간 관련 디자인 심의 및 평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검토 기준은 총 5가지 항목[안전 및 편의, 설치 및 배치, 재료 및 색채, 조경 및 식재, 야간조명]으로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수사항을 설정한다.
- 작성시 [부분적용/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기재한다.

2) 규정항목

안전 및 편의	공간 조성에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재료 및 색채	공간 내에 적용되는 재료 및 색채를 다른 규정 항목과 부합되는지 평가한다.
설치 및 배치	견고성과 안전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공간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치 및 배치 여부와 공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조경 및 식재	해당 공간에 생육 적합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효과 및 이용특성에 부합하는 수종 선택 등 계획방식을 평가한다.
야간조명	야간에 활용되거나 보안 용도로 설치되는 조명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3) 체크리스트_공공공간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안전 및 편의	· 재난,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피난유도 공간이 마련되었는가?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는 차도 및 보도와 분리되어 안전성이 갖추어졌는가?			
	·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접근하기 수월하게 조성되었는가?			
	·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무장애환경으로 조성되었는가?			
	· 공간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이미지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는가?			
	· 적절한 곳에 편의/휴게시설이 설치되었는가?			
	·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되었는가?			
	· 야간 발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 및 안전시설물(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이 설치되었는가?			
재료 및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 바닥마감재는 미끄럼방지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목재, 석재 등의 자연적인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인공도로 대신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재료 고유의 색채가 유지되었는가?			
설치 및 배치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동선이나 공간이 구성되었는가?			
	· 휴식공간은 보호자가 어린이의 보호 관찰이 가능하게 개방성 있게 조성되었는가?			
	· 공공공간 내 설치된 시설 및 정보가 통일성 있게 표시되었는가?			
	·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공간, 녹지 등의 시설이 연계성을 갖추어 설치되었는가?			
	· 사용자 및 공간 특성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었는가?			
	· 특화 공간의 경우 해당 장소의 테마가 반영되었는가?			
	· 태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징 요소가 적용되었는가?			
	· 공공공간과 관련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되었는가?			
조경 및 식재	· 식재된 조경수로 인하여 경관 조망이 방해받지 않는가?			
	· 식재된 조경수로 인하여 해당 공간이 차폐되어 안전성에 문제되지 않는가?			
	· 그늘 조성을 위해 식재한 경우 나무 크기로 인해 시선이 가려지지 않는가?			
	· 해안지역에 식재한 경우 방사제 역할을 하여 모래 날림을 방지하는가?			
	· 대기 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있는 수종으로 식재되었는가?			
	· 획일적이지 않게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었는가?			
야간 조명	· 특별한 장소인 경우 야간 경관을 향상시키는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주거지나 경작지로 가로등 등의 불빛이 비치지 않는가?			
	· 장소에 따라 적절한 광량 및 색온도가 적용되었는가?			

Ⅰ 공공시각이미지 체크리스트

1) 공공시각이미지 체크리스트 적용사항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태안군 공공시각이미지 관련 디자인 심의 및 평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의 검토 기준은 총 3가지 항목[서체 및 색채, 레이아웃, 기타표기요소]으로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수사항을 설정한다.
- 작성 시 [부분적용/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기재한다.

2) 규정항목

서체 및 색채	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적합한 서체와 시인성 등 명료성을 최적화하는 색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레이아웃	이용자의 시각적 특성, 설치 장소와 매체를 고려한 시각이미지 레이아웃 구조를 평가한다.
기타 표기요소	시각이미지에 적용되는 픽토그램 등 기호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3) 체크리스트_공공시각이미지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서체 및 색채	· 표기된 문자는 적합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되었는가?				
	· 공공기관 및 주요 관광지의 경우 외국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외국어가 병기되었는가?				
	· 색약자, 고령자등 시각적 약자를 위해서 인지가 잘 되는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 정보 인지가 잘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 안전, 위험, 위급, 금지, 주의사항 등의 정보는 지정된 색채가 적용되었는가?				
레이아웃	· 주요 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나 장식적인 요소는 작은 크기로 적용되었는가?				
	· 교통약자 및 다양한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높이로 표시되었는가?				
	· 공공시각이미지가 가로수나 다른 시설물로 가려지지 않았는가?				
	·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이중으로 표시되었는가?				
기타 표기요소	· 군 상징물 및 브랜드의 색상 및 크기 표시를 적정하게 되었는가?				
	·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는가?				
	· 관광지의 경우 현재 위치, 장소 명칭, 축척, 방위, 관리 연락처 등이 표시되었는가?				

I 공공용품 체크리스트

1) 공공용품 체크리스트 적용사항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태안군 공공용품 관련 디자인 심의 · 평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공공용품 가이드라인의 검토 기준은 총 2가지 항목[재료 및 색채, 설치 및 배치]으로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수사항을 설정함
- 작성 시 [부분적용/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기재한다.

2) 규정항목

재료 및 색채	장기간 비치되는 용품 특성과 시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설치 및 배치	해당 용품의 사용이 발생되는 장소 및 사용행태에 부합하는 설치 방식을 평가한다.

3) 체크리스트_공공용품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형태 및 구조	· 사용자 및 보행자가 접촉하는 통로의 구조체 등은 각지지 않은 안전한 형태로 되었는가?			
	· 교통약자 및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높이와 크기로 되었는가?			
	·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식 요소 등을 최소화하여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는가?			
	· 태안군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표현한 일관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가?			
재료 및 색채	· 설치와 이동, 관리, 교체가 쉬운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내부에 비치된 용품을 볼 수 있도록 앞면이 투명한 소재로 되었는가?			
	· 파손, 변색, 오염 등을 방지하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나 도료가 사용되었는가?			
	· 색약자, 고령자등 시각적 약자를 위해서 눈에 잘 띄는 명도 차이가 나는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설치 및 배치	· 표준 픽토그램이 적용되었는가?			
	· 장애인이 사용하기 수월하도록 점자 사인, 음성 안내기기 등이 설치되었는가?			
	· 유사한 정보와 사인은 통합하여 정보제공이 우선시 되었는가?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로표지의 반사지 색채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되었는가?			
특이 사항	· 야간 이용 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 및 안전시설물(범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이 설치되었는가?			
	· 눈에 잘 띄는 색채 구성(명도차, 난색 계열)으로 안전용품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는가?			

|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

1)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 적용사항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태안군 옥외광고물 관련 디자인 심의 및 평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검토 기준은 총 4가지 항목[형태 및 규격, 수량 및 설치, 재료 및 색채, 표기요소]으로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수사항을 설정한다.
- 작성 시 [부분적용/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기재한다.

2) 규정항목

형태 및 규격	유형 및 설치 공간에 따른 광고물의 규격과 형태를 평가한다.
수량 및 설치	해당 광고물의 설치환경에 따른 설치 가능 수량과 조명 방식을 평가한다.
재료 및 색채	사용되는 색채 수 및 제한되는 색채를 비롯하여 재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표기요소	광고물 유형에 따른 정보의 명확한 전달 정도를 평가한다.

3) 체크리스트_옥외광고물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형태 및 규격	·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간판들이 업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되었는가?				
	· 돌출 크기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최소화 되었는가?				
	· 옥외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작되었는가?				
	· 해당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되었는가?				
수량 및 설치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 해당 업소 영역 내에만 설치되었는가?(공용영역 표지 금지, 층간 침범 금지)				
	· 강풍 등 자연재해에 파손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재료 및 색채	· 지주 및 간판 베이스 판의 재료는 해당 건물 마감재와 조화되는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한 업소 및 한 건물 내 설치된 간판의 색채 수가 최소화 되었는가?				
	· 경관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색채가 지정되었는가?				
표기요소	· 한 건물 내 간판의 표기요소 구성 및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 표기요소는 상호 위주로 간결하며 심볼마크, 픽토그램이 중복 사용되지 않았는가?				
	· 표기요소의 색채는 배경과 차이가 나며 주표기요소는 보조표기 요소와 색상으로 구별되는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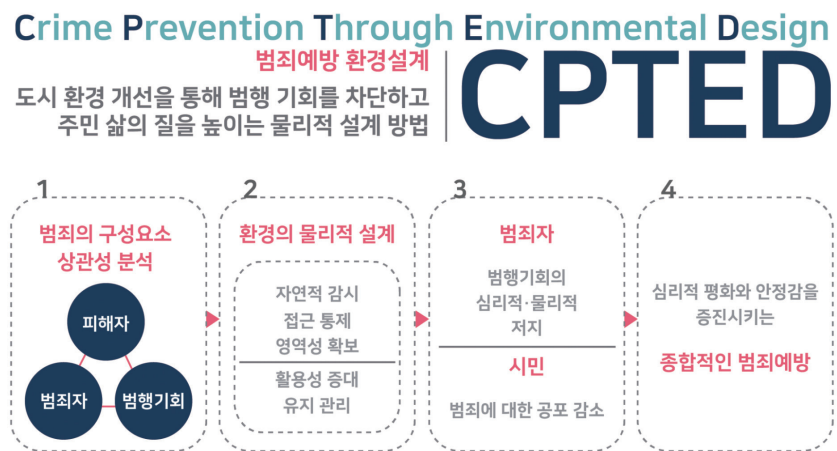
디자인 가이드라인-2

- 2.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 2.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
- 2.3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2.4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2.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I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 방향

-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념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의 활동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법 전략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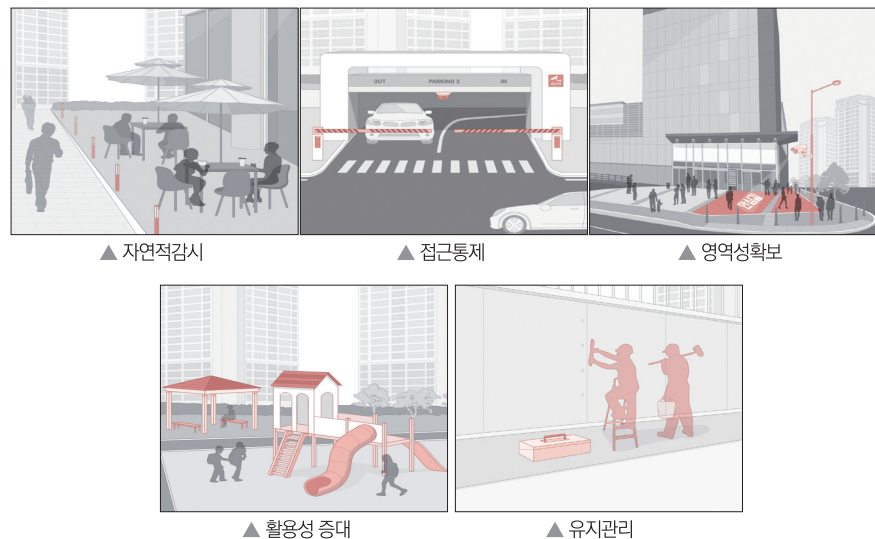


[그림-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개념과 목적

-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원리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원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오스카 뉴먼(O. Newman)의 방어공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오스카 뉴먼(O. Newman)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공간의 4가지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주거지역의 영역성 확보
 - 둘째, 주민들에 의한 일상적인 영역 감시
 - 셋째, 건물이나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제거
 - 넷째, 인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범설계
 - 우리나라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한국형 CPTED’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근거하여 크게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원리와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라는 두 가지 부가원리 등 5대 원리로 규정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CPTED 원리	내 용
기본 원리	1.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칙인, 장소(환경을 구성하는 요건)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 주민에게 적용되는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함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사람들을 차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잠재범죄자의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위시 잘보이게 함
	3. 영역성 (Territoriality)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 영역을 설정함
부가 원리	4. 활용성 증대 (Activity Support)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눈을 통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훼손되거나 낙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표-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5대 원리 및 주요 내용



[그림-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5가지 원리

3) 비전 및 목표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 태안군이 추구하고 도달하려는 미래 비전을 비롯한 목표와 지역별 전략을 제시한다.

(가) 미래 비전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한 태안”

어디나 밝은 태안	언제나 활기찬 태안	모두가 함께하는 태안
올바른 시설물 배치 등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방식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만들기의 기반 마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주민 및 외래 방문객의 활동을 증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주민 모두가 주인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안전에 위협되는 행위와 요인을 방지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나) 목표 및 전략

-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태안군 어느 곳이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환경과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조경 및 조명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공공시설물 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는 항목 + 안전시설	공공공간 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는 항목



[표-2]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비전 및 목표

I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 1) 범죄예방 사업의 도입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뿐 아니라 해당 마을과 나아가 태안군을 새로운 환경과 수준으로 재생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영역 및 방식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방식은 아래 표-3과 같이 크게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정비형과 비물리적 방안인 안전관리 프로그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물리적 환경정비형 방식은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물리적 환경을 조절 및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방식으로는 경찰 순찰 및 감시, 질서유지, 환경미화, 주민의 범죄대응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지역사회(커뮤니티) 조직을 들 수 있다.
 - 범죄예방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정비형과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방식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으나 환경정비형 위주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개선과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 최근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은 범죄예방 인식 개선과 홍보,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 저감, 환경 개선 및 정비, 주민 커뮤니티 강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시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정비형 방식의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며 그밖의 사업은 주민참여, 자율방범 활동, 순찰 강화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진행된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이 혼재되고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책 보다는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환경적 특성과 상황 분석을 토대로 환경 요인을 조작하는 방식의 예방책이 요구된다.

사업유형	사업 내용
물리적 환경정비형	-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 원도심 등 범죄 취약 지역 - 노후 건축물, 격리 건축물, 공사방치 및 공사 공실 정비 - 혼잡한 광고물 정비, 가로수 관리 등 가로 개선 사업 - 건축물 외벽 배관 정리, 출입문 및 방범창 보안장치 보강 - 투시가능한 벽면 조성 및 담장 허물기 사업 - 방범용카메라나 비상벨 설치/통합관제센터 운영 - 자율 방범 지역 및 범죄 우려 지역에 범죄예방 표지판 설치 - 방범초소 확충, 조명시설 확충 및 성능 개선 - 공간 및 상황별 범죄예방전략 수립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업소 감시 및 순찰 강화 - 외래 방문객이 집중되는 관광지 등 감시 및 순찰 강화 - 재개발지역, 원도심, 공사중단 건축물, 폐가 및 공실 등 범죄 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사업유형	사업 내용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도 및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원룸촌 및 여성친화지역 순찰 및 안심 시스템 구축 - 마을 치킴이 양성 및 운영, 안전망 구축/안전한 마을 만들기 - 범죄 발생 예측 지도 및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 지역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근무 체계 수립 및 장비 지원 - 범죄예방 조례 제정 및 운영/범죄예방 인증제 운영

[표-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유형 및 내용

2) 사업프로세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적용은 크게 ①대상지 선정, ②대상지 분석, ③계획 수립, ④사업 실행 및 평가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 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대상지의 선정은 범죄 피해지역이나 발생 우려지역, 도시재생사업지역, 환경정비 필요 지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한다.
- 대상지 선정에 있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현장조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 사업방식은 크게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과 공모에 의한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지 선정 기준

범죄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 비율이 높은 곳, 무질서와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곳,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곳, 실업 및 빈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곳, 인구 이동이 잦은 곳, 공사 및 폐가 공사중단 방치건물이 있는 곳, 낙서, 방치차량, 노상 적치물이 만연한 곳, 공원 등 오락이나 여가 시설이 부족한 곳,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

(나) 사업 대상지 분석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과정은 대상지의 현황 파악으로 범죄현황, 물리적 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는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을 범죄위험이 우려 되는 지역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범죄불안요소, 유해환경 및 유해요소, 범죄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범죄불안 요소를 설문조사 및 지역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범죄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현장조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 평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다) 사업 계획 수립

-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해당 사업의 장소, 대상,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결정이 따라야 한다.

장소(Where)	대상(What)	주체(Who)
지역의 정확한 위치와 환경을 확인	기존 또는 신규 개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확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관계자
- 범죄특성의 다양성, 범죄유형 및 수법의 시기적 진화를 감안하여 시의적절하고 해당 지역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전략 및 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 대상지 분석을 토대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정비방식과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 예산 총당, 주민참여 가능성, 적용된 전략 및 대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범위를 설정한다. - 해당 지역의 범죄유형을 분석하고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자치단체 관련 부서, 지역 경찰청 및 주민협의체 등과 협의 및 연대를 이루어 진행한다. - 사업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면밀하게 계획한다. - 수립된 사업 계획은 관련 주체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라) 사업실행 및 평가

- 계획안의 내용을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과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공 설치, 실행 및 운영을 진행한다.

사업 시행 시 유의점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수단은 범죄예방 기본원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공공공간인 거리에서의 시선 특히, 언제나 작동하는 감시 시선을 만드는 도구라면 범죄예방의 수단이 된다.
- 그밖에 청결 및 정돈 유지, 진출입이 명확한 경계선, 가로등 확충 및 성능 개선, 벽화 및 공공미술품 설치, 운동시설이나 간이 판매점 설치, 경비인력의 배치, 특정 지역의 출입 통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이 범죄예방의 수단이 된다.
- 이러한 수단들은 무엇보다 문제 해결가능성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적합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의 시공 및 실행 이후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용성 증대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어지게 한다.
-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수립, 지속성을 전제로 하는 연계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등이 포함된 사후 조사 및 평가를 일정 기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 및 이후 사업에 반영한다.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진행 과정을 다음 표-4와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였고 단계별 주민 참여방안을 명시하였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프로세스	주민참여 방안
1단계/대상지 선정 - 관련 지원사업 경향 파악 - 범죄 발생 추이 및 범죄예방 관심 지역 - 관련 운영 협의체 파악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 인식 및 요구 사항 - 주민협의체 구성
2단계/대상지 분석 대상지 현황조사 - 지역 주민 요구 사항 파악 - 대상 지역 유해 환경 등 현장 조사 - 대상 지역 범죄 발생 현황 파악(경찰청 지원) 대상지 현황도 작성 - 대상 지역 관련 정보 수집 - 범죄발생 우려 요인 및 현황 시각화/사업 추진체구성 - 태안군, 해당 주민센터, 주민협의체, 지구대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 추진체 구성 - 사업 추진체 의견 수렴	주민 교육 및 사업 설명 - 인식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 의견 청취를 위한 워크샵 - 선진 사례 탐구, 주민 요구 사항 취합 및 전달
3단계/계획 안 기획 계획 안 작성 - 태안군, 해당 주민센터, 주민협의체, 지구대 및 전문가(태안군 범죄예방위원)로 이루어진 사업 추진체 구성 계획 안 협의 및 결정 - 사업 안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선별 - 사업 추진체의 검토 및 결정	계획 안 검토 - 사용자 관점에서 계획 안 검토 - 주민 요구 사항의 여부 파악
4단계/사업 실행 및 평가 시공 및 실행 - 계획 안에 따른 시공 진행 - 시설물 등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실행 유지 관리 - 조성 환경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 지자체 및 주민 등 관리 주체별 운영 평가 및 피드백 - 시공 및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도 평가 - 개선 사항 및 미 이행 부분의 피드백	주민 커뮤니티 역할 -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 이행 만족도 평가 - 사용자 관점의 만족도 및 평가 제시

[표-4] 범죄예방 사업 프로세스 및 주민 역할

3) 시범사업 1(안)

'안전한 LED 청색가로등 설치사업'

(가)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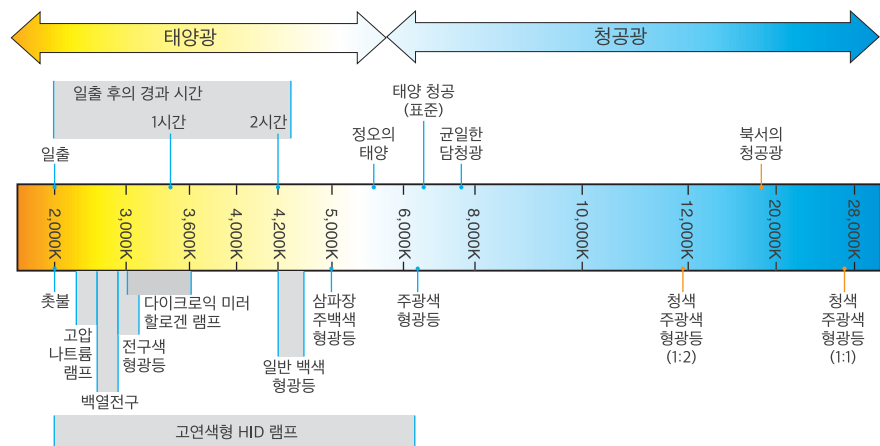
- 야간에 해안가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밝기가 어둡거나 색온도가 황백색 대역인 가로등은 심리적으로 감성적이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이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해안가의 특수한 야간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조도확보를 비롯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관기능의 조명이 필요하다.

(나) 사업내용 및 효과

- 야간에 단독활동을 보여주는 해안가 및 전망대, 해변길 등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활동이 많은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일반 가로등의 색온도를 유지하다가 활동이 감소되는 계절 및 심야에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청색가로등으로 광원의 색온도로 전환한다.
- 짧은 시간동안 색변화를 통해 경관조명 기능과 광원의 움직임 주어 잠재 범죄자의 범죄의지를 포기하게하고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 야간에 조명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해안가에 설치되어 광원의 변화를 통한 매력적인 경관 조명 현상(푸르키네 현상, Purkinje's phenomenon)을 얻으며 부가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해안가 자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사업대상 및 추진방식

- 해수욕장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으며 야간 이용행태 및 안전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해안관광지 등
-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 셉테드 공모사업, 태안군 자체 시범사업



4) 시범사업 2(안)

'모두가 함께 해요! 알림사업'

- (가) 배경 및 필요성
- 외부인과 관광객에 많이 찾는 거주 공간에 주민 거주를 알리는 안내 표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내 안전수칙 및 외부인 길안내 등을 위한 24시간 안내가 요구된다.
 - 심야소음 및 심야음주 행위를 경고하는 내용 등 마을 공동규칙 안내 사인물을 설치한다.
- (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인적이 드문 해변가 및 공원 등에 마을 주민이 합의하고 관리하는 고보조명 등 설치를 통해서 마을의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있는 장소에 사용 규칙 및 주의사항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상업시설과 주거지의 경계영역에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외부인들에게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임을 표시한다.
 - 농어촌 지역의 주민 스스로에 의한 규칙 제정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효과와 외부인에게 마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다) 사업대상 및 추진방식
- 외부인 및 관광객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해수욕장 및 범죄발생이 높은 관광지 등에 도입한다.
 - 충남도 섹테드 공모사업, 태안군 자체사업

I 가이드라인 일반

1) 기본 방향 및 원칙

- (가)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안전은 주민이 정주 및 생활공간에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하는 기본적인 것이며 우선되는 환경 여건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이미 국내에 소개되어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식과 활용에 있어 생소한 면이 있어 군민이나 사업체, 공무원 등 활용 당사자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 태안군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래 방문객이 빈번하게 찾는 해안관광지로 범죄예방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구성하였다.
 - 또한 주요 범죄발생 우려지역인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조성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다.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태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방향과 일치성을 갖는다.
- (나)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태안군이 지니고 있는자연적 환경, 인구 특성, 정주 환경 및 공간 특성이 적용되었다.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추구하는 기본 원리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리를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적용원칙	내 용
자연적 감시	-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환경 설계 - 이웃 주민이나 외부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감소 - 시선연결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간 및 시설물, 수목을 배치 -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곳은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 설치 - 자연감시가 어려운 경우 방범용카메라등을 통한 기계적 감시 대체
접근 통제	- 잠재적, 우발적 범죄를 막기 위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 사람에 의한 인적감시, 공간배치, 장애물설치 등 자연적, 물리적 방식으로 접근 통제 - 자연적 감시 방식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보안설비 등을 이용한 기계적 방식의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 주민과 외부인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영역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경계를 설계 - 공간의 위계(주 공간-부수 공간)이나 단계별 구성(공적공간-전이공간-사적공간), 시설물 설치, 포장재의 색채 및 패턴, 레벨 차이 등을 통해 영역 구분을 계획
활동성 강화	-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주민의 애착심과 이용성을 향상시켜 사람에 의한 자연적 감시 효과를 증진하는 방법 -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 및 주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효과를 증진하는 방법 -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는 물리적 방안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집원 방안으로 구분
유지 관리	- 정돈된 미관, 유지 관리된 환경은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 유지 관리된 환경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주민 및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 범죄 의도를 위축시키는 효과

[표-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5대 원리 및 내용

- (다)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 내용은 태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유형을 근거로 하며 공공디자인 범위인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 중 범죄예방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을 그 범주로 하고 있다.
 - 구성 요소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과 공공디자인 범주라는 영역에 따라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 조성 시 반영하여야 할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인 조경(식재)과 조명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디자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 방범용카메라와 비상벨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각기 각기 별도로 수록되었으며, 대체로 시설물이 일반적인 설치 기준과 항목별 설치 기준을 다루고 있는것에 반해 공간은 구조계획을 비롯해 일반적 가이드라인인 식재계획과 조명계획이 담겨있으며 공간내에 설치되는 시설물 계획이 다시 수록되어 있다.

대분류	항목	내 용
일반적 가이드라인	조경 일반	일반적 기준, 수목의 유형 및 규격, 식재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식재 설계 기준
	조명 일반	일반적 기준, 조명 유형, 조명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조명설치 기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전기차충전소, 자전거 보관대/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 보행 유도등, 보안등/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편의시설물	벤치, 퍼걸러, 그늘막/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공급시설물	지상기기, 녹지대/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도, 터널, 방음벽, 가로등/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임시시설물	간이화장실, 흡연부스/공통 설치기준, 개별 설치기준
안전용품 가이드라인	방범용카메라	계획, 설치기준 및 기능, 운영
	비상벨	계획, 설치기준 및 기능, 운영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도로	구조계획, 조명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공원	구조계획, 조명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광장	구조계획, 조명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수변공간	구조계획, 조명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공용주차장	구조계획, 안전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표 6]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라) 가이드라인 활용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범주에서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되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먼저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태안군 공무원, 각종 개발관련 심의 및 평가위원, 설계자 등이 사업 기획, 계획 수립, 설명 자료, 심의 및 검토 과정에 지침이 된다.
- 그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 널리 활용 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태안군의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범죄예방이 요구되는 관련 사업의 진행에 있어 기준으로 하며 관련 사업의 용역 발주 및 입찰, 설계, 평가, 심의 과정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
- 가이드라인의 해당 내용에 따른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하여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한다.

태안군 사업/심의	설계/시공자	평가/심의위원	주민 등 기타 활용자
· 관련 사업 기획 · 사업 발주 · 사업 적용 요청 · 심의 및 자문	· 사업 설계 · 심의도서 작성 · 사전 체크 · 시공 전과정	· 공모사업 평가 · 해당 사업 심의 · 해당 사업 자문	· 사업 반영 요청 · 주민참여 환경관리 기준 · 주민 교육 활용

[표-7] 활용 주체별 가이드라인 활용 내용

2) 조경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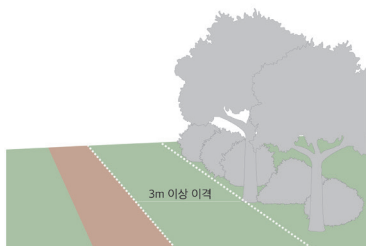
- 조경은 넓게는 아름답고 유용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의 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를 말하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조경은 (공공)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목의 식재 기준 및 담장 등 경계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국한되고 있다.
- 조경은 장소의 영역성 확보 및 접근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경에 의해 자연적 감시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 생울타리 등 수목이나 화단 형태의 울타리 설치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의 경계성을 명확히 하거나 출입 제한을 효과적으로 알린다.
- 식재를 통한 영역성 확보 방식은 친환경적이며 완전한 은폐가 되지 않아 내부와 외부 사이의 감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조경은 오히려 또 다른 은폐 환경을 만들어 범죄발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가) 일반적 기준

- 조경 계획 시 해당 장소의 영역성 확보와 접근통제 강화를 위해 공간 이용자가 공적 공간과의 구분, 특히 공간 이용자가 공적 공간과 사전 공간의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 공간의 경계 부분에 바닥 사이에 단차를 두거나 바닥 재료나 색채 차이를 달리하며, 별도의 조형물이나 조명을 설치하고 전이공간을 확보한다.
 - 사적 영역이나 정원과의 경계에는 울타리 설치나 조경을 통해 영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조경을 통한 영역성 및 접근통제 강화 방안은 자칫 자연적 감시를 저해할 수 있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 생울타리 등 수목 식재나 화단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개방성을 갖추는 동시에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는 등 영역의 경계성을 명확히 하거나 출입 제한을 알릴 수 있다.
 - 울타리 방식 또한 내 · 외부 상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방성과 함께 견고한 구조를 갖추며 보행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유지 ·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 수목의 유형 및 규격

- ‘교목(喬木)’이란 여러 해에 걸쳐 생성된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가 명확하게 구별되며 중심 줄기의 높이 생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목의 유형을 말한다.
- ‘관목(灌木)’은 외관상 교목보다 수고(樹高)가 낮고, 줄기는 부리목 가까이 또는 땅속에서 여러 개로 갈라지는 주립상 또는 총상을 이루며 중심 줄기가 땅에 기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 ‘조형목’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을 말한다.
- 수목의 규격을 표시하는 명칭은 수고(樹高), 흉고직경(胸高直徑), 수관(樹冠) 폭, 수관길이, 지하고(枝下高)가 주로 사용된다.
- 기본적으로 교목류는 ‘수고 H × 흉고직경 B’로 표시, 관목류는 ‘수고 H × 수관폭 W’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추가할 수 있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의 수목은 자연적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밀집도와 은폐성 및 경계를 구분 짓는 영역성 확보를 다루는데 이중 수고와 수관길이, 지하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격이다.

명칭	약칭	표시 내용	단위
수고	H	지표에서 수목 정단부까지의 수직거리	m
흉고직경	B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의 수간 직경	cm
수관 폭	W	수관의 직경	m
수관 길이	L	수관의 최대길이.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	m
지하고	-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m

[표-8] 주요 수목 명칭 및 표시 내용

- 수목 식재 시 요구되는 수령은 주거지 및 학교에 식재되는 경우 완성에 가까운 상태인 완성형, 공원은 5년 정도 경과 후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반완성형으로 설계하여 식재한다.

(다) 식재 설계 기준

- 식재설계는 공간별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수목간의 생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 도로나 경계에 식재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야가 가려지거나 고립된 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식재에 의한 시야의 차단을 막기 위해 수고가 낮은 관목의 경우 가지와 잎에 의해 은폐되지 않도록 완성형인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감안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 관목에 비해 수고가 높은 교목의 경우 은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으며 교목 특성상 지하고가 낮아 시각 차단이 되지 않도록 성목이 되었을 때의 크기를 감안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 수목은 가지나 잎이 무분별하게 성장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에도 수목에 의해 조사 범위가 가려져 조명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영역성 확보 방안으로 수목 식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잔디 및 화단을 조성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없이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 식재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식재설계 기준(KDS 34 40 10 : 2019) 중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직결되는 사항은 식재의 외관 크기 및 식재밀도이며 이와 같은 수목의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교목을 식재할 때에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목표연도는 수고 3m, 수관 폭 2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 식재에 적용한다.
-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m 범위에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목의 군식 시 식재밀도는 수관 폭을 기준으로 단위면적(m^2)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수량을 결정하되 식재공간의 성격, 식재수종의 생태적 특성 및 식재목적에 따라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
- 생활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m, 2~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에 따라 식재간격이나 줄 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식재한다.

3) 조명 일반

- 조명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갖는다.

(가) 일반적 기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조명은 조사되는 장소의 상황을 비롯하여 대상의 윤곽, 얼굴 인식 및 색채의 인지와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도로 조명은 10m 전방에서 사람의 윤곽과 움직임이 인지되어야 하며 보안 기능의 요구되는 조명은 주광색 대역의 광원을 사용한다.
- 조명은 조도, 휘도 및 색온도의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색온도, 광량, 등기구, 조사 높이를 적용하여 균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 등 조명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이 다른 장애물에 가려져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수목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설치 시 높이와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수목 식재 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 식재되는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광원을 결정하며 필요하면 조명시간을 조절한다.
 - 수목으로 인해 조명이 가려지는 곳은 투광 방식의 조명이나 볼라드 조명을 적용한다.
 - 가로시설물이 조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크기 및 설치 위치를 정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 위치를 조정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한다.
- 용량이 큰 광량의 조명을 드문드문 설치하기보다 적은 광량의 조명이 서로 겹치게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그림자를 줄이고 조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가로등은 설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등주를 설치하되 가로수 및 지주가 있는 가로 시설물을 고려하여 규칙적으로 배열한다.

(나) 조명의 유형

- 도로 시설물로서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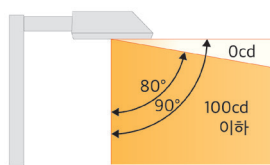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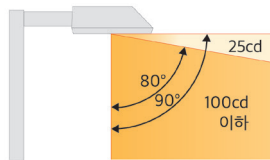
커티너리 조명방식

(다) 조명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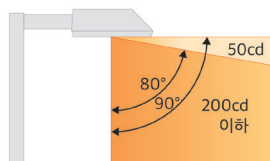
-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헬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효율 및 수명, 적절한 광색과 연색성,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을 따르고, 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 효율, 배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적용한다.
-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은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여 야간에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 보행로는 최소 5lux 이상, 공원 및 공개공지는 50lux 이상 조도를 확보한다.



풀컷오프 방식(Full-cutoff)



컷오프 방식(cutoff)



세미컷오프 방식(Semi-cutoff)

공간	전반 조명	주된 조명	일반 조명	길, 계단	펜스, 벽, 관목, 숲 (배경)	꽃밭, 바위 정원	중심 공간 (규모 작음)	중심 공간 (규모 작음)
조도 (lux)	6~15	15~30	5	10	20	50	100	200

[표-9] 공간 별 조명 밝기 기준

- 출입구 및 유입 공간, 통로, 표지판은 주변 장소에 비해 밝은 광량의 조명을 설치한다.
- 조명의 확산광 및 상향광을 억제하여 조사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조명 인식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 조명이 지면 등 대상에 조사되도록 조사방향 조절이 가능하거나 빛의 조사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컷오프(cut-off) 방식의 등기구를 적용한다.
- 조명의 높이가 이용자의 눈높이 근처이면 눈부심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므로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 높이가 낮은 볼라드 조명 사용이 권장되지만 단독으로는 효율이 낮으므로 주 조명 외에 보조 조명으로 활용한다.
- 가로등, 보안등, 보행등은 설치되는 도로 폭 및 보행량에 따라 설치한다.
 - 가로등(12m 이상), 보안등(12m 미만), 보행등(보행이 빈번한 2.5m 이상의 보도) 설치하며 차로와 보행로 함께 있는 도로는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행로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보행자의 신체 윤곽 및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행자 위주의 조명을 설치한다.
- 건물 사이 공간 및 골목길 등 좁은 공간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빛이 확산되는 유형의 광원을 사용한다.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는 시설 자체에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을 밝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한다.
- 조명시설의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이용률이 높은 광장은 이벤트 조명이나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한다.
- 야간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조명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요소를 도입하여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유도한다.

(라) 국토교통부 조명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 및 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야 한다.
 - 적절한 배치와 배열을 하여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의 합류 및 분기점 등 특수한 곳의 존재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 및 저속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10과 같이 각 조명등급에 대한 조명기준을 결정한다.
 - 보행자의 얼굴 인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수직면조도가 추가로 요구된다.

조명등급	평균수평면조도	최소수평면조도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Eh. avg (lx)	Eh. min (lx)	최소수직면조도 Ev. min (lx)
P1	15	3.0	5.0
P2	10	2.0	3.0
P3	7.5	1.5	2.5
P4	5.0	1.0	1.5
P5	3.0	0.6	1.0
P6	2.0	0.4	0.6

[표-10] 보행자를 위한 조명 기준

국토교통부 기준 인용

- 국부 조명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충구역, 위험구간 등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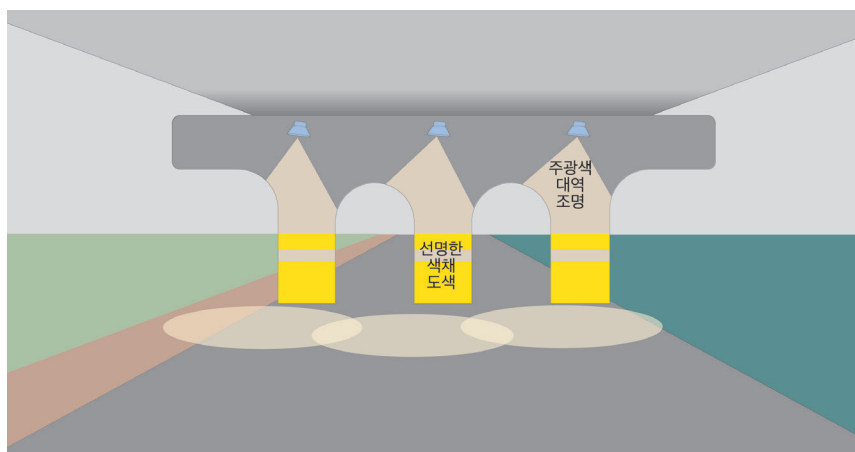
- 일반도로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국부조명)을 설치한다.
 - 일반도로 중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이나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과 그밖에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연속조명의 도로조명등급이 M3~M5등급인 횡단보도에서 연속조명만으로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에는 컷오프(cut-off) 방식의 등기구를 사용하며, 조명이 설치되지 않는 무조명구간은 주변의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 횡단보도 조명은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보행자가 신호를 대기하는 장소 전체를 비춰야 한다.

조명구간		수직면 조도(lx)		수평면 조도(lx)
		평균	최소	최소
연속조명 구간	상업지역	20~30	4	6
	주거지역/공업지역	10~20	4	
	기타지역	10~15	4	
무조명구간		30 이하	2	

[표-11] 횡단보도 조명기준

*용도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름.

-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상충구역에서의 조명기구 설치는 이곳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연속조명이 설치된 상충구역의 조명기준은 연속조명의 조명등급 보다 한 단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 상충구역 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한다.
- 터널 조명은 터널 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터널 조명의 설치는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대중교통 시설물

- 대중교통시설물 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항목은 버스승강장(택시 승강장), 전기자동차충전소, 자전거 보관대이며 해당 시설물은 구조상 외부 시선이 차단되는 구조이거나 도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특성이 있다.
- 대중교통시설물은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큰 규모 및 군집을 이루는 설치를 제한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간 점유를 최소화하여 이용 편의를 함께 증진한다.
- 대중교통시설물은 사용자가 일정 시간 대기하는 이용행태를 보이는 특성으로 야간에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감시 외에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 등 안전시설에 의한 인위적인 감시확대와 영역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 대중교통시설물 공간에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곧바로 범죄로 이루어지므로 즉시 청결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안점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보, 유지관리

■ 공통 설치 기준

- 대중교통시설물은 이용 수요에 따라 설치하되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야간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수목이나 다른 시선 장애물에 의해 시야를 가리는 장소는 피하여 설치한다.
- 버스 승강장 등 공간이 구획된 시설물은 내부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 별도 조명 설치가 어려우면 가로등 등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광원의 조도는 25lux이상, 색온도는 4000K의 주광색 대역을 적용한다.
- 보행로 등 공간 내에 조성될 경우 시설물 공간과의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 바닥재질이나 패턴 등 차이를 두어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시설물 영역 내에 접근하도록 한다.
- 버스 승강장 등 공간이 구획된 시설물은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디자인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투시가 가능한 벽면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한다.
- 파손 및 훼손된 구조 및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시설물 내부나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표시한 관리기호를 크게 부착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위치를 인지도하도록 한다.

■ 개별 설치 기준

- 버스승강장 내부에 대기하는 사용자가 앉거나 선 자세에서 외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벽면 개방성을 확보한다.
 - 승강장 버스 벽면에 부착한 각종 정보와 표지를 간결하게 정돈한다(공공시각이미지 가이드라인 참고).

- 부스형태가 아닌 표지판 형태의 승강장에는 표지판 기둥에 조명을 부착하여 활용한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은 주변에 별도의 조명이 없는 경우, 반드시 조명을 설치하고 방범용카메라 및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관리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다.
 - 충전소 영역을 주변과 차별되는 밝기나 색온도의 조명환경을 조성하여 야간에 시각적 인지를 높이는 한편 장소 영역성을 확보한다.
- 공공기관 등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는 주 건물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를 원활하게 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도난 및 파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방범용카메라의 가시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절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내구성이 높은 견고한 재료의 유형을 선택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사용자가 잠금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보행안전시설물

- 보행안전시설물은 보행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시설물로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항목은 안전펜스, 보행유도등, 보안등, 보도블록을 들 수 있다.
- 공간 영역의 구분 및 이동 경로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공간에서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보행자에게 해당 장소의 지리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 밝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 주안점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 공통 설치 기준

- 보행안전시설물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 및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로서 구조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은 시인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 보행안전시설물이 무단으로 넘기 쉬운 구조이거나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범죄예방 효과가 감소되므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고 안전펜스나 조명기구 근처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게 한다.

■ 개별 설치 기준

- 안전펜스는 차량통행이 많거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안전 확보를 비롯하여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의한 범죄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안전펜스는 무단으로 넘지 못하는 구조와 크기로 설치하여 분리하려는 영역을 확실히 차단한다.
 - 펜스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고 내부 바는 세로 형태로 하여 딛고 넘지 못하게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전펜스의 내부 바는 반드시 세로 형태로 한다.
- 안전펜스는 맞은편이나 차량 안에서 잘 보이도록 구조물의 표면 면적이 최소화된 개방 형태로 계획한다.
-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석 높이를 20cm 이상으로 하여 차량의 접근을 막게 한다.
- 충분한 유효 폭이 확보된 보행로에는 보도블록의 패턴 변화나 고보조명 등으로 보행공간, 녹지공간, 시설물 설치공간의 영역을 구분한다.
- 공원 및 주택밀집지역 등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는 주 조명 외에 보행 유도등을 설치하여 밝은 환경을 조성한다.
 - 보행유도등은 단독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주 조명의 보조조명으로 기능하게 한다.
- 공간의 출입구 지점이나 공간이 연결되는 구간에는 보행 유도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경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 원도심나 경로가 겹치는 복잡한 공간에서는 고보조명 설치로 보행자가 공간을 인지하거나 길 찾기가 쉽도록 계획한다.

편의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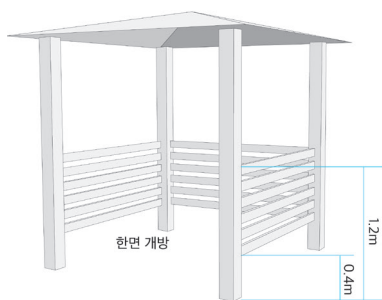
- 편의시설물은 이용자에게 휴식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로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항목은 벤치, 퍼걸러, 그늘막을 들 수 있다.
- 편의시설물은 외부 시선에서 격리된 장소 등 관리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될 경우 범죄에 노출되거나 잠재 범죄자의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 확대 및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 주안점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 공통 설치 기준

- 편의시설물은 이용 수요에 따라 설치하되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야간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설치한다.
- 진입부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하며 수목이나 다른 시선 장애물로 인해 시야를 가리는 장소는 피하여 설치한다.
- 폐쇄된 공간인 퍼걸러는 벤치와 한 공간에 연계되게 배치하여 다양한 이용에 대응한다.
- 공간 내에 보행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물 공간과의 영역 구분을 분명히 한다.
- 파손 및 훼손된 구조 및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시설물 내부나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게 한다.

■ 개별 설치 기준

- 벤치는 이용자가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야간에 안전한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나 구석진 장소,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 설치 등 안전방안을 강구하여 설치한다.
- 야간에 이용되는 벤치는 보안등 등 조명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 벤치는 다른 이용자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선택하며 긴의자형 벤치는 앉음판 중간에 팔걸이를 부착하여 특정한 이용자가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 퍼걸러는 야간에 안전한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나 구석진 장소,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 설치 등 안전방안을 강구하여 설치한다.
 - 야간 안전 관리가 어려운 곳은 시간대를 정해 이용 및 출입을 제한시킨다.
- 퍼걸러는 사면 중 한 면은 출입구로 전면 개방 구조로 설치하고 다른 면은 중앙부 외에는 개방구조로 하여 내부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한다(하단부 지면에서 40cm 개방, 상단부 지면에서 1.2m 이상 개방).
- 퍼걸러 내부에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접한 곳에 이미 설치된 가로등 등 조명을 활용한다.
- 이용자의 상황 관찰을 방해하는 현란한 색채 및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그늘막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 파라솔형 그늘막은 주변 가로등 등의 조명을 활용하고 스마트그늘막은 자체 조명을 활용한다.
- 그늘막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저해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도로시설물

-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의 연장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형태의 시설물로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은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교량, 방음벽, 가로등이 있다.
- 구조 특성상 외부에서 시야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용자가 단독으로 고립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이 있다.
- 도로시설물은 차로와 보행 공간이 함께 조성되는 구조로서 오토바이 등 차량에 의한 범죄가 발생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대한 구조 및 안전 시설의 계획이 면밀하게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 주안점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유지관리, 활용성 증대

■ 공통 설치 기준

- 터널, 지하차도의 입구와 출구는 굴절부가 없는 일직선 형태로 서로 바라보이는 구조로 계획한다.
- 보행 경로에 기둥이나 요철부로 인해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공간이 생기지 않게 계획한다.
- 지하 및 터널 내부의 보행 통로는 차로에 비해 보행자의 상태가 잘 인지될 수 있게 적절한 광량의 조명을 설치한다.
- 지하보도 및 터널 등에 조성되는 보행로는 교행이 가능한 폭을 확보하여 보행 중에 보행자 간 밀접으로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한다.
-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는 차량 충돌에 견딜 수 있으며, 투시부가 넓은 형태의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 차량에서 보행로로 진입이 어려운 구조로 계획하며, 안전펜스는 맞은편 보행로의 보행자나 주행 중인 차량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지하보도 및 터널 등에 조성되는 보행로는 자전거 통행은 가능하되 내려서 끌고 가게 유도한다.
- 보행 경로 중 사각지대나 필요한 지점에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및 반사경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게 하며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
- 터널 및 지하차도의 벽체 및 천장은 밝은 색채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윤곽이 쉽게 인지되게 한다.
 - 파손 및 훼손된 구조 및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게 철거한다.
- 톨게이트 또는 관문 성격이 요구되는 지점은 바닥이나 벽에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조명 설치를 통해 영역표시를 강화한다.
 - 색채 및 패턴의 변화, 조명의 색온도 및 광량의 차이를 적용한다.
- 지하보도 및 터널 등에 조성되는 보행로에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 지점에서 70lux 이상 조도를 유지한다.
 - 주광색에서 연청색 대역대의 광원을 사용한다.

- 공간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표면에서 돌출이 작은 밀착형 발광 유도장치를 설치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본래 기능에 충족되게 구조와 정보 표기, 색채 및 패턴을 단순 명료하게 한다.
- 터널 및 지하차도에 조성되는 관리용 출입문은 잠금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 개별 설치 기준
 - 지하보도의 입구에는 시야를 가리는 수목 식재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행 및 상황 인식에 적합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지하보도의 진출입부에는 방범용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구간이 길거나 굴절되는 경우 중간에 추가 설치한다.
 - 구간이 긴 터널에는 사고 및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게 비상벨을 설치하며, 잔여거리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거리감을 인지시켜 준다.
 - 터널 내 설치되는 피난시설은 다른 부분과 대비되는 색채를 활용하여 피난구간에 대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
 - 교량 하부에 편의·운동시설을 조성할 경우 선명한 색채로 도색하거나 주변보다 밝은 조명으로 공간 이용률을 높인다.
 - 도색은 경쾌하고 발랄한 색조를 지향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타일부착 방식을 적용한다.
 - 교량 하부는 위압감 해소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은 주광색 대역의 광원을 적용하고,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
 - 교량의 보행로에는 가로등주를 활용해 보행등을 설치하며 보행로 표면 및 난간 등에 매입 형태의 보행유도등과 같은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활력 있는 장소로 분위기를 연출한다.
 - 방음벽의 배후 공간이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부득이 생성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방음벽 후면에 조명을 설치할 때 도로 쪽으로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한다.
 - 가로등은 어두운 장소나 야간에 빛을 발생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범죄예방에 중요한 요소로서 시설물 및 공간 조성 시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 가로등은 동일한 구역 및 구간(경로)에서 광량, 색온도, 조사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광원의 변화를 통해 가시성을 높이며 영역성의 차별을 갖게 한다.
 - 가로등이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정한다.
 - 가로등 설치 등 조명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는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솔라 표지병을 활용한다.
 - 가로등 및 농어촌 유형의 보안등 설치가 원칙으로 태양광 방식은 전원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국한한다.

임시시설물

- 임시시설물 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항목은 이동식 화장실, 흡연부스로 사방에서 시야가 차단되는 폐쇄되는 구조를 가져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 임시시설물은 주요 활동 장소에서 이격된 장소에 설치되며 사용자 단독으로 폐쇄공간에 머무르는 이용 특성을 보이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물이다.
- 또한 이용 시간 등 이용 행태가 불규칙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자연적 감시 및 인위적 감시, 유지관리가 각별하게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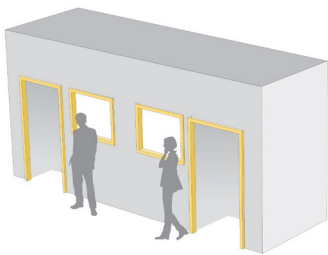
* 주안점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보, 유지관리

■ 공통 설치 기준

- 임시시설물은 이용이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되,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야간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수목이나 다른 시선 장애물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장소는 피하여 설치한다.
- 입구부는 구별이 명확하게 설계하고 시야가 원활하게 개방감을 확보한다.
- 내부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별도 조명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로등 등 기존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바닥재에 차이를 두어 시설물 공간과의 영역 구분을 분명히 한다.
 -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만 시설물 영역 내에 접근하도록 한다.
- 야간 안전 관리가 어려운 곳은 시간대를 정해 이용 및 출입을 제한시킨다.
-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시설물 내부나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게 한다.
- 외벽은 밝은 색채를 적용하며 시야를 방해하는 현란한 색채나 그래픽, 패턴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개별 설치 기준

- 이동식화장실은 가능한 남 · 녀 부스를 분리하여 설치한다.
- 이동식화장실은 외부에서 이용자의 움직임이 잘 인지되도록 외벽은 밝은 색채를 적용한다.
- 이동식화장실은 사방 공간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수목 식재를 하지 않는다.
- 이동식화장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탈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을 선택한다.
 - 창문은 내부 윤곽이 파악될 수 있는 반투과성 유리 재질을 적용한다.
- 여성화장실 내에는 필수적으로 안심벨을 설치한다.
 - 안심벨은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외부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벨과 연동되는 경광등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이동식화장실 내부와 외부는 주변보다 밝은 밝기의 조명을 상시 작동한다(내부 평균조도 100lux이상 유지).
- 흡연부스는 야간에 안전한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나 구석진 장소,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 설치할 경우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 설치 등 안전방안을 강구하여 설치한다.
- 흡연부스의 외벽은 내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투시성 재질 및 반 개방성 구조로 계획한다.



방범용카메라

- 방범용카메라는 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 대한 보완수단의 한 방편으로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경비원 및 경찰력 등 인력에 의한 근본적인 감시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계획

-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고립된 장소,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 통행량이 많고 상점 등 개별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된 큰 도로보다는 후미진 골목길의 진·출입부, 막다른 골목 주변, 어린이 놀이터 및 근린공원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주민의 이동 및 이용이 적은 공간 등 사각지대와 출입자 및 차량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진입로에 배치한다.
- 범죄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 감시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주요지점은 야간감시가 가능하도록 적정 화질 및 부가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 방범용카메라는 긴급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설치 기준 및 기능

- 방범용카메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사람 손이 쉽게 닿기 어려운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우천 시 빗물 침투가 우려되는 건물의 외곽이나 옥외에는 방수가 되는 유형을 선정하거나 장치를 덧붙인다.
- 조경(수목)이나 시설물에 의해 촬영부분이 가리지 않게 설치한다.
 - 가로등 및 가로수, 규모가 큰 가로시설물,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 등으로 인해 가시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한다.
- 방범용카메라는 얼굴 인식 등 영상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와 필요에 따라 부가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한다.
 - 가급적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설치를 권장한다.
 - 고정형 4대 중 1대의 비율로 360° 회전감시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여 상황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며 중요한 장소에는 지능형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야간 감시가 요구되는 방범용카메라는 반드시 적합한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 야간에 선명한 화질을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근거리인 경우 적외선 LED카메라, 원거리에는 감도가 높은 저조도 카메라 설치를 권장한다.
 - 카메라가 야간 감시기능이 결여된 경우, 별도의 조명을 부가적으로 설치하며 감시에 방해되지 않는 광량과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 야간에는 방범용카메라가 조명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설치지점의 조명은 가능한 주광색 대역의 조명을 설치한다.

■ 운영

- 범죄자의 행위 위축과 주민 안심감 확보,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방범용카메라 안내시설을 명료하게 공지한다.
 - 안내표지판은 주변과 차별화되는 채도가 높은 색상(노랑색, 주황색 등)이나 야간인식을 고려하여 형광 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방범용카메라의 설치, 성능관리, 보수,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 상업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의 방범용카메라는 가능한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색채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그밖에 방범용카메라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벨(안심벨)

- 비상벨은 인적이 드물어 자연감시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범죄 등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작동하여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설비이다.

■ 계획

- 비상벨은 인적이 드문 장소, 자연감시에 한계가 있는 장소, 야간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등 범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비상벨은 긴박하고 시야가 불리한 상황에서 쉽고 신속하게 위치를 인식하고 접근하여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이용자의 시야에 노출된 벽면, 조명이 비춰지는 가로등주 등을 활용한다.
- 방법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한 곳을 설치 대상으로 하며 여성 상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계절별, 시간대 별 이용자 수 등 이용행태가 불규칙한 해안가,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 비상벨 시스템은 경찰 및 보안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비상 시 즉시 통보가 되는 연계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비상벨을 방범용카메라 주변에 설치하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효과성을 높인다.
 - 비상벨 작동 시 방범용카메라를 통해 1차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범용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지구대)로 연계되어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벨은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비하여 견고성을 갖고 우천시에도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설치 기준 및 기능

- 비상벨 등은 개별적인 유형이 아닌 견고하고 범용화 된 형태로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 긴급한 상황이나 야간에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랑색과 빨강색 등 주변과 차별되며 주목성이 높은 색상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 여성 화장실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비상벨은 눌렀을 때 경보음, 경광음과 함께 조명과 음성지원이 동시에 작동되어 해당 장소의 비상 상황을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설치한다.
 - 비상벨은 100db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한다.
- 비상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설치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야간에도 분명한 인식이 되도록 조명 기능을 갖춘다.
 - 비상벨에 야간 식별을 위한 표시등을 내장하며 가능하면 점멸식을 채택한다.
- 비상벨에는 가능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여 장소 인지가 명확하게 한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20~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I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도로(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 도로는 차량과 보행인이 통행하는 이동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잠재)범죄자의 접근과 도주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 특히 야간에 이용자의 이용이 불규칙하거나 지형적으로 사용자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고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도로는 자연적 감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출입통제, 영역성 확보, 이용 활성화, 유지관리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전반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 구조 계획

- 모든 도로는 접근과 통행이 용이하고 시야에서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 굴곡 등 선형의 변화나 발생하는 상황의 관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막다른 도로는 끝나는 지점의 관측이 용이하도록 곧게 일직선으로 계획한다.
- 보행로는 보행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폭을 유지하며, 차로에서 침입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에서 1.5m 이상 이격된 완충공간을 둔다.
- 보도는 차로와 인접하거나 나란하게 배치하여 주행 중인 차량(운전자 및 영상 녹화장치)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공간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자전거·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는 표면 재료나 색채 차별에 의해 통행 동선이 구분되게 계획한다.
- 통행량이 적은 보도에는 활동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운동시설, 판매소, 퍼걸러 등 사람이 모이는 시설물을 배치하고 공동 주택 및 건물의 출입구를 배치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게 계획한다.
-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한적한 장소의 자전거 도로에는 시야를 가리는 수목의 식재를 지양하고 비상전화,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조명 계획

- 도로의 조명 계획은 과도한 광량 및 확산광에 의해 연접한 상가, 주택의 여건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도로 조명은 가로등을 기반으로 활용하되 도로의 규모와 이용 여건에 따라 보안등 또는 보행 유도등을 활용하거나 함께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도로에 설치되는 조명은 구간별 또는 구역별로 동일한 색온도 및 밝기, 등주 높이 및 조사거리를 주어 균일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균일한 조명과 차별되는 조명으로 계획한다.
- 연속되는 조명은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빛을 제공하는 동시에 야간에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경로가 복잡한 도로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접속 경로에는 보행을 유도하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편의성과 영역성을 확보한다.
 - 터널 입구 등 도로 환경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에는 조명의 변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장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야간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이벤트 조명을 통한 움직임을 주어 잠재 범죄자의 의도를 저하시킬 수 있게 한다.
- 식재 계획
- 도로에서의 식재는 가로수를 기반으로 녹지대, 관목류의 생울타리, 화단 등 도로의 규모 및 주변 용도 등 여건에 맞게 조성한다.
 - 가로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교목류로 하되 촘촘하게 식재하지 않고 지하고(枝下高)를 1.8m 이상 유지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게 계획하고 유지·관리한다.
 - 관목의 수고는 1.5m 이하를 유지하며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더 낮은 높이를 적용한다.
 - 도로에 식재되는 수목에 의해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의 화면이 가리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한다.
 - 산책로 내 수목의 위치 및 식재 간격은 보행자의 시선 확보,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 공간 생성, 인접 가로시설물(방범용카메라, 조명)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그 밖의 가로공간의 식재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적 가이드라인 조정 편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시설물 계획
-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큰 공간을 점유하여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외에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외에 별도의 안전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안전한 영역 확보 및 출입 통제 기능을 가진 시설물과 큰 규모나 연속설치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야간에 조명이 닿지 못하는 은폐공간을 만들어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안전펜스 및 볼라드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제한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시설물로서 영역성 확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 버스쉘터, 퍼걸러,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같은 밀폐형 구조의 시설물은 시야를 차단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방성 확보를 위해 설치 장소를 면밀하게 선정한다.
 - 그 밖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편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공원

■ 구조 계획

- 공원에는 다양한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유도한다.
- 공원 외부에서 공원 내부 이용자의 활동이 관찰될 수 있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원 내에 계획되는 보행 경로는 주 보행로와 보조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 한다.
 - 여러 지점에 진 · 출입로를 조성하되, 이용자가 경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로 패턴, 공원구조 안내판, 보행 유도등을 활용한다.
- 공원 출입구는 주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개방되어 잘 보이는 지점에 배치한다.
 - 출입구는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높도록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며 너무 많은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게 제한한다.
- 공원 출입구 및 경계는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영역성을 강화한다.
 - 공원 출입구는 외부에서 눈에 잘 보이도록 조형물, 상징문주(조형 게이트) 등을 설치한다.
 - 공원 경계부에는 투시성이 좋은 펜스나 높이가 낮은 관목을 식재한다.
 - 출입구에는 주변과 구별되는 밝은 밝기의 조명을 설치하고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보행 경로와 차량 경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 등 차량을 통제 하는 차단 시설물을 설치한다.
- 출입구는 바닥표면에 지질 등으로 변화를 주어 공원 입구와 내부의 영역차이가 되게 조성 한다.
- 출입구에는 공원이름이 표시된 공원이용 안내사항 및 공원구조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 성을 확보하며 이용자가 공원 구조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조명 계획

- 공원의 조명 계획은 공원 내 식생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을 위한 적정 조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원에 식재되는 수목이 조명에 의해 식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명 방식을 채택한다.
 - 조사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컷오프방식의 등기구를 사용하거나 후드를 등기구에 부착한다.
- 공원 특성상 수목에 의한 조명 효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볼라드 조명을 설치 하며 일반 조명보다는 투광조명을 설치한다.
- 공원 진 · 출입구 조명은 원거리에서도 인식되는 투광 방식 조명으로 한다.
- 공원경계부에 설치되는 조명은 40lux 이상의 조도와 20m 이하의 조명거리를 유지한다.
- 식재 수종과 이용 형태에 따라 조명 밝기 및 조명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숲에 인접한 산책로의 가장자리에는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공격을 피할 수 있거나 시야 확보를 위해 3m 이상의 완충공간을 둔다.

-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며 공원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조명으로 영역성을 강화한다.
- 야간에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이벤트 조명으로 움직임을 주어 안전성을 강화한다.
- 식재 계획
 - 공원 경계에 식재되는 수종은 영역 구분 기능과 자연적 감시를 위해 은폐가 되지 않는 관목 위주로 계획한다.
 - 공원 경계의 관목의 수고는 적정 높이인 50~75cm로 한다.
 - 공원 내에 식재되는 교목류는 수고가 2m 이상이면 지하고를 1.8m 이상으로 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 산책로 주변에 식재하는 관목은 수고가 1.5m 이하를 유지하게 관리한다.
 - 산책로 내 수목의 위치 및 식재 간격은 보행자의 시선 확보, 잠재 범죄자의 은신 공간 생성, 인접한 방범용카메라, 조명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시설물 계획
 - 공원 경계에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높이와 간격 등을 조절하고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 투시형 구조나 1m 이하 높이로 설치하여 시야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접근을 통제하게 한다.
 - 도로가 접한 구간은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펜스와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
 -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며 산책로에는 원거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확산형 조명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 공원 내 휴게·운동공간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지속하게 한다.
 - 공원 내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범죄에 취약하여 이용자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며 주변에 식재를 지양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한다.
 - 공원 내 자전거보관소는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며 주변에 식재를 지양한다.

광장

■ 구조 계획

- 단순한 통행과 머물러서 이용하는 사용행태가 혼재된 공간 특성에 따라 범용적인 활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며 유지관리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한다.
- 4면에 통로를 두어 접근성이 원활하고 공간 전체가 시야가 트인 개방구조로 계획한다.
 - 여러 지점의 통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보행로 패턴, 안내판, 야간 유도등을 활용한다.
- 사용자가 해당 광장을 주변 공간과 구분된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게 바닥면의 재질, 패턴, 색상 등을 계획한다.
- 광장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주 동선에서 이용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이동하려는 공간이 드러나 보이거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바닥포장 방식 등으로 조성한다.
- 소규모 광장은 우범화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한다.
 - 평지보다 높은 위치에 전망대나 단을 설치하여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한다.
- 광장의 이용공간과 차도는 3m 이상 이격시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게 계획한다.
- 야외무대를 설치할 경우 뒷면이 고립되거나 시야에서 벗어나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빈번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조명 및 식재 계획

- 광장중앙에 설치되는 조명은 확산형으로 평균 조도는 20lux 이상으로 유지하고 조명 거리는 20m 이내를 유지한다.
-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시야가 은폐된 곳에는 조명이 연속되게 계획한다.
- 출입구 등 진입 공간, 통로, 표지판, 야외무대 및 공중화장실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하며 주변지역도 밝게 유지한다.
- 통행로 주변은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1.5m 이하를 유지하여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광장에 식재되는 교목은 경계를 구분하는 용도보다는 그늘 조성용으로 식재하며 수고가 2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의 지하고가 유지되어 시야 확보가 잘 되게 계획한다.

■ 시설물 계획

- 시설물 설치 시 광장의 공간과 영역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게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바닥면의 재질, 색상 등을 계획한다.
- 야외무대 및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광장 및 야외무대 주변의 가로수나 수목 등이 시야를 차단하지 않게 하며 다른 공간과 경계나 광장 입구에는 펜스나 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한다.
- 펜스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내부 구조 바는 닫고 넘지 못하게 세로 형태로 한다.
- 구역별 안내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 상시 조명이 가동되고 고유 번호나 알파벳을 활용하여 인지성이 제고되게 디자인한다.
- 이용객들의 안전 및 방법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시 즉각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한다(방범용카메라와 비상벨 설치).

수변공간/하천 및 해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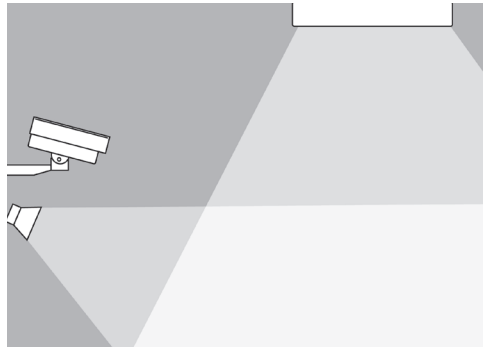
■ 구조 계획

- 수변공간은 계절 및 시간대에 따라 불규칙한 조수 및 수위 등 환경 여건을 보이며 이용자의 행태가 달라지는 장소 특성을 가진 넓은 범위의 공간으로 무엇보다 자연적 감시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 수변공간은 육로에 의한 접근 외에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다각적인 원칙 및 방법에 의한 범죄 예방이 요구된다.
- 가시성을 최대로 확보하여 수변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 또는 수변 공간 내에서 식재와 시설물 설치 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이용 공간과 위험 공간의 영역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제한공간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펜스나 경고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어한다.
- 수변공간의 출입구 및 경계부는 보행로의 포장 재료나 색채로 차별화하거나 바닥 단차를 통해 영역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여항 및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은 24시간 상시, 절도 등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설계한다.
- 교량 하부에 생성된 공간은 위압감을 주거나 시선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동적이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간 내에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경우 도로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천에 조성할 경우에는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 조명 및 식재 계획

- 수변공간에 설치하는 조명은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상시 작동되게 계획한다.
- 수변공간에 설치하는 조명은 직접 조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반간접조명이나 간접조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수변공간 조명의 조도는 평균 10lux 이상을 유지하며, 항·포구에 위치한 야외 작업장은 평균 40lux 이상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방풍림 등 수목이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조명기구가 수목에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조명 등으로 낮게 설치하거나 투광방식의 조명을 설치한다.
- 조명으로 인해 해수욕장의 방풍림 등 수목의 생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 방식으로 설치한다.
- 방파제와 같이 실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광량이 충분한 LED등 조명 설치를 검토하며 장소에 따라 우울한 감정을 전환시키는 청색 광역대의 조명을 설치한다.

- 해수욕장 안내시설물은 24시간 상시 조명이 되어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밝은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 야간에 우범화 우려가 있는 해수욕장 주변은 다양한 이벤트 요소가 가능한 고보 조명 등을 도입하여 활기 있고 안전한 공간이 되게 계획한다.
 - 수변공간의 산책로 주변에 식재하는 관목은 수고 1.5m 이하를 유지하게 하며, 수고가 2m 이상의 교목은 1.8m 이상의 지하고를 확보하게 계획하고 관리한다.
- 시설물 계획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내판을 비롯하여 비상구호장비를 비치하고 가능하면 국가번호지점과 연계한다.
 - 장소에 따라 접근금지, 출입통제에 관한 안내를 표시한다.
 - 주요 이용공간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카메라 및 비상벨을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구 및 접근로는 사방에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화장실 출입구가 복도를 통하는 구조인 경우 바깥 출입구에 문이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 해수욕장 입구, 통로, 표지판의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게 한다.
 - 보행로 내 벤치, 퍼걸러, 운동시설 등에는 반드시 조명을 설치하고, 긴 벤치에는 앉음판 중간에 돌출된 팔걸이를 두어 특정인의 장시간 점유를 방지한다.



공용주차장

- 공용주차장은 지상 주차장 위주에서 지하주차장 또는 타워형 주차장과 같은 실내 주차장으로 계획되는 추세에 따라 차량내부 절도 및 여성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 구조 계획

- 주차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를 차단하는 요인이 없는 장소에 가시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주차면을 구획한다.
-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면과 여성 우선 주차면을 배치한다.
- 주차장 내 모든 보행자 동선 구간은 조명의 조도를 높여 안전감을 향상시킨다.
 - 빛 확산에 의한 시각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채택한다.
- 조명시설은 차량, 기둥, 벽 등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배치한다.
 - 그림자 진 공간이나 카메라 배후인 벽면에 보조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촬영할 수 있게 한다.
- 지하주차장 천장조명은 주차 구획선 상단 천장에 설치하여 주차된 차량을 비추게 하며 성인 눈높이(1.5~1.8m)에 별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한다.

■ 안전시설

-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차량의 출입, 이동 등 차량에 대한 상시 관찰이 가능하게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에는 반드시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보행 통로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관리실과 25m 이내에 설치한다.
 - 비상벨의 설치 바탕은 비상벨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색상 등으로 구분되게 한다(비상벨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절도 및 훼손을 예방한다.
- 주차장 감시를 위한 방범용카메라 및 조명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지상주차장

- 주차장은 자연감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상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주변 건물이나 보행로 등에서 자연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주출입구 외에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주차장 주변에 수목이나 시설물에 의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게 한다.
- 주차장에서의 식재는 차량과 이용자를 시야에서 가리며 수액 분출로 인한 차량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양한다.

- 차량을 가리는 높이의 담장 등 울타리는 지양하며 개방형 펜스 형태로 설치한다.
 - 부득이 식재할 경우 경계 용도의 규모가 작은 관목을 식재한다.
 - 대형 차량은 밀집되지 않게 주차면을 구획하며 주변에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한다.
 - 해안가의 지상주차장은 전·후면과 보행로가 경비실에서 감시가 가능한 지점에 설치게 하며, 조경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의 주차장은 구획선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야간에 운전자가 구획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솔라병 방식의 조명을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시선을 차단하는 구조물이나 수목 식재를 지양하여 원활한 자연 감시가 이루어지게 한다.
 - 지하주차장은 시야 확보를 넓히기 위해 자연광을 유입시키는 천창 및 선큰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벽면, 천장은 조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면에 규칙적으로 배치한다.

2.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

| 조경 일반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다른 공간과 경계에 조경이나 담장이 설치되었는가?				
	· 설치된 조경 및 담장의 형태나 크기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가?				
	· 설치된 조경이나 담장의 형태 및 재료가 자연친화적인가?				
	· 설치된 담장이 외부와 내부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개방적인가?				
수목 식재	· 식재 수목의 수고가 1.5m 미만인가? (관목인 경우)				
	· 식재 수목의 지하고가 2m 이상인가? (교목인 경우)				
	· 식재 수목이 건축물과 1.5m 이상 이격되었는가?				
	· 식재 수목의 간격이 0.25~0.75m 이상인가? (관목인 경우)				
	· 식재 수목의 간격이 6m 이상인가? (교목인 경우)				
	· 출입부에는 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조명 일반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조명이 대상의 상황 및 인물 윤곽, 색채를 인지하기에 적절한가?	
	· 동일 구간에 설치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균일한가?	
	· 조명 조사를 방해하여 그림자를 만드는 장애물이 없는가?	
	· 조명이 집중 설치 되지 않고 여러 지점으로 분산되었는가?	
조명 및 식재	· 시야가 가려지는 장소에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버스정류장 등 공공공간이 주변보다 밝게 조성되었는가?	
	· 야간에 출입구, 통로,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설치되었는가?	
	· 조명의 밝기가 장소의 규모나 상황에 적합한가?	
	· 공간의 경계에 조성된 시설에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대중교통시설물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통행량이 많으며 야간에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 통행량이 적고 야간에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시설물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는가?	
	· 바닥이 해당 시설물 영역임을 알 수 있게 구분되었는가?	
	· 훼손이나 변색된 부분은 적절한 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주변에 쓰레기 등 방치물이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는가?	
개별 사항	· 승강장 내부에 조명이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조명이 있는가?	
	· 승강장 부근은 다른 장소보다 밝게 조성되어 있는가?	
	· 승강장 벽면 재료는 유리 등 내부가 보이는 재질이 사용되었는가?	
	·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정보 및 표지판은 잘 정돈되었는가?	
	· 농어촌 지역 승강장은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는 조명 및 비상벨이 설치되었는가?	
	· 부지 내 자전거 보관대는 주 건물과 맞닿아 설치되었는가?	
	·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자전거 보관대는 견고한 재질과 구조인가?	
	· 자전거 보관대는 잠금장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가?	

| 보행안전시설물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해당 시설물이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가?			
	· 해당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			
	· 해당 시설물 주변에 쓰레기 등 방치물이 없이 깨끗이 유지되는가?			
개별 사항	· 안전펜스의 높이가 1.2m 이상으로 설치되었는가?			
	· 안전펜스의 내부 구조가 세로바 형태인가?			
	· 안전펜스 구조가 맞은편에서 보았을 때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적은가?			
	·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보행유도등이 설치되었는가?			
	· 공간이나 시설 출입구 및 연결 지점에 보행유도등이 설치되었는가?			
	· 보도블록이 보행동선을 인지하는데 도움되는 형태인가(패턴 및 색상의 연속)?			
	· 연결을 차단해야 할 차도와 20cm 이상 단차를 두었는가?			

| 편의시설물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해당 시설물은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되었는가?	
	· 그럼에도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진입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다른 시설물을 피해 설치되었는가?	
	· 퍼걸러는 벤치와 한 공간에 설치되어 감시가 훨씬 용이한가?	
	· 해당 시설물이 보행로 등 공간에 설치된 경우, 다른 공간과 영역 구분이 되는가?	
	· 해당 시설물이 보행로 등 공간에 파손,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	
	· 해당 시설물 주변에 쓰레기 등 방치물이 없이 깨끗이 유지되고 있는가?	
개별 사항	· 벤치가 야간 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 긴 벤치의 경우 중간 팔걸이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구조로 되어있는가?	
	· 퍼걸러가 야간 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 퍼걸러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되었는가(4면 중 한면 개방, 벽면 위 아래 부분 개방)?	
	· 공간이나 시설 출입구 및 연결 지점에 보행유도등이 설치되었는가?	

| 도로시설물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터널 및 지하차도의 입구에서 출구는 굴절부가 없는 일직선 형태로 되었는가?	
	· 통행 동선에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나 요철부가 없게 조성되었는가?	
	· 지하 및 터널 내부의 보행 통로는 차로에 비해 광량이 밝은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지하보도 및 터널 등에 조성된 보행로의 폭은 교행이 가능한 넓이인가?	
	·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견고하고 개방적인 형태인가?	
	· 지하보도 및 터널 등에 조성되는 보행로에는 자전거 통행이 제어되는가(내려서 끌고가기)?	
	· 사각지대나 필요한 지점에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및 반사경이 설치되었는가?	
	· 터널 및 지하차도의 벽체 및 천장은 밝은 색채의 재료로 마감되었는가?	
	· 터널 및 지하차도의 관리용 출입문 상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 주변에 쓰레기 등 방치물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되는가?	
개별 사항	· 지하보도 입구는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이 없는 개방된 형태인가?	
	· 지하보도에는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지하보도 진출입구에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터널 내 설치되는 피난시설은 다른 부분과 대비되는 색채로 조성되었는가?	
	· 터널 내 설치된 비상벨은 찾기 쉬운 위치와 형태(색상 등)인가?	
	· 교량 보행로에는 가로등을 비롯한 안전한 보행에 필요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교량 하부는 안전한 보행에 충분한 조명 및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이 설치되었는가?	
	· 교량 하부에 설치된 편의 시설은 외부에서 잘 보이는 밝은 색상으로 처리되었는가?	
	· 범죄예방이 요구되는 지점의 가로등은 더 밝게 설치되었는가?	
	· 가로등이 근처 방범용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야간 보행 환경을 위한 별도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I 임시시설물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 사항	·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는 범죄 발생 우려가 적은 곳인가?				
	· 그림에도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사방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을 피해 설치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영역이 바닥재 차이 등으로 다른 공간과 영역 구분이 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은 야간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되는가?				
	· 해당 시설물 외벽은 주변에서 잘 보이도록 밝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었는가?				
	· 해당 시설물 주변에 쓰레기 등 방치물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되는가?				
개별 사항	· 이동식화장실은 남·여 공간이 분리되어 설치되었는가?				
	· 이동식화장실의 문 등 입구부는 개방감 있게 디자인 되었는가?				
	· 이동식화장실 외벽은 내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었는가?				
	·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었는가?				
	· 이동식화장실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설치되었는가?				
	· 흡연부스는 야간에 사용하기에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 흡연부스의 외벽은 내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재질이나 구조로 설치되었는가?				

| 방범용카메라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설치계획	·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고립된 장소,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등 적합한 지점에 설치되었는가?	
	· 다른 방범용카메라와 중복되지 않으며 충분한 범위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 긴급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설치기준 및 기능	· 훼손을 방지하여 높은 위치에 빗물을 막는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 수목이나 다른 시설물에 의해 촬영면적이 가려지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 사람의 얼굴 인식이 가능한 화질의 해상도를 갖추었는가?	
운영	· 방범용카메라 중 일정 비율(1/4)이 360° 회전이 가능한 유형인가?	
	· 방범용카메라 설치 및 운용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는가?	
	· 방범용카메라의 설치, 성능관리, 보수,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비상벨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설치계획	· 인적이 한적하거나 자연감시가 어려운 야간에 어두운 장소 등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되었는가?	
	· 긴박하고 시야가 불리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아 작동시킬 수 있게 설치되었는가?	
	· 비상벨 작동 시 주변 방범용카메라와 연계가 이루어지는가?	
설치기준 및 기능	· 파손 및 우천에 대응하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었는가?	
	· 비상벨 형태가 개별적이지 않고 범용적인 유형인가?	
	· 여성화장실에 설치된 경우 경고음과 경광음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형인가?	
운영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경우 25m 간격마다 설치되었는가?	
	· 비상벨 설치 및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는가?	

| 도로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구조계획	· 도로 전체 형태가 감시 및 관측이 용이하게 개방된 직선 구조인가 ?	
	· 차로와 보행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 중간에 분리되지 않고 인접하여 조성되었는가?	
	· 보행로는 차로에서 1.5m 이상 이격된 완충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 보행자·자전거·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인 경우, 노면이 색채나 재료로 구분되었는가?	
	· 통행량이 적은 보도의 경우, 주민 운동시설, 판매소, 퍼걸러 등 여러 사람이 찾는 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 한적한 곳의 자전거 도로는 수목 등 은폐물이 없이 조성되었는가?	
	· 비상전화, 방범용카메라, 비상벨 등이 설치되었는가?	
조명계획	· 도로 조명 빛이 인근 상가나 주거지에 과다하거나 산란되게 비추지 않는가?	
	· 가로등과 보행등, 보행유도등이 효율적으로 단독 또는 복합 설치되었는가?	
	· 동일구간 내의 조명은 색온도 및 밝기, 등주 높이가 균일한가?	
	· 범죄발생이 우려되거나, 터널 입구 등 도로환경이 변화하는 곳의 조명은 주변보다 차별되게 설치되었는가?	
	·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조명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가?	
	· 복잡한 도로나 연결 구간에서 경로를 유도하는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식재계획	· 가로수 등 수목의 가지나 잎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 가로수 등 수목이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식재되었는가?	
	· 산책로 내의 수목은 시선이 확보되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식재되었는가?	
시설물 계획	· 시설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크기로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 은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주변에 조명이나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공간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적절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 밀폐시설물(버스승강장, 퍼걸러, 간이화장실 등)은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개방감 있게 설치되었는가?	

| 공원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구조계획	· 해당 공원은 이용자의 수요가 많고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인가?	
	· 공원 외부에서 내부 이용자의 상태가 잘 보이는가?	
	· 공원 내 보행 경로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성되었는가(주보행로와 단선 차이, 표지판 등)?	
	· 공원 출입구의 수 및 위치가 적절한가(정해진 지점에서 출입, 출입구의 인자성, 방범용카메라 등)?	
	· 공원 경계부는 수목 및 울타리 등으로 영역 구분이 되어있는가?	
	· 보행 경로와 차량 경로가 구분되어있고 오토바이 등 차량 출입 통제가 되고 있는가?	
	· 숲에 인접한 산책로의 경우, 3m 이상 이격된 안전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조명 및 식재계획	· 공원 특성에 맞게 조명이 설치되었는가(낮은 위치, 컷오프 등기구 등 수목에 영향 감소 방안)?	
	· 공원경계부에 적합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40lux 이상의 조도와 20m 이하의 조명거리)?	
	· 공원 입구 및 표지판에는 야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야간에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벤트 조명 등 활동성을 높이는 조명으로 설치되었는가?	
	·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조명이 그 기능을 하는가?	
	· 공원 내부에 식재되는 교목은 1.8m 이상 지하고가 유지되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가?	
	· 공원 경계에 식재되는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아 내부와 상호감시가 가능한가	
시설물 계획	· 공원 경계에 설치된 담장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형태와 규모인가(투시형 구조, 1m 이하)?	
	· 도로에 접한 공원 구간은 안전펜스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 공원 내 휴게·운동공간은 접근성이 양호하며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가?	
	· 공원 내 설치된 화장실은 안전을 위해 시야가 확보된 개방적인 구조인가?	
	· 공원 내 자전거보관소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주변에서 잘 보이는 지점에 조성되었는가?	

| 광장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구조계획	· 다양한 사람의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는가?	
	· 4면에 출입 통로가 있어 접근성이 원활하며 시야가 트인 개방된 구조인가?	
	· 바닥면의 재질, 색상 등에 차이를 주어 주변 공간과 영역 구분이 되는가?	
	· 광장 이용공간이 차도와 연결한 경우, 3m 이상 이격 되었는가?	
	· 광장 내부에 무대가 설치된 경우, 뒷면이 고립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조성되었나?	
	· 오토바이 등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가?	
조명계획	· 광장중앙 조명은 확산형으로 평균 조도는 20lux 이상, 조명 거리는 20m 이하로 설치되었는가?	
	·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시야가 은폐된 곳에는 조명이 연속되어 설치되었는가?	
	· 출입구 등 진입 공간, 통로, 표지판, 야외무대 및 공중화장실 조명은 주변 조명보다 밝은가?	
	· 통행로 주변에 식재된 관목은 높이가 1.5m 이하인가?	
	· 광장 내부에 식재된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이 유지되는가?	
시설물 계획	· 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광장 공간과 바닥면의 재질, 색상 등으로 영역이 구분되었는가?	
	· 다른 공간과 경계에는 안전 펜스나 담장 등 경계를 구분하는 적절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 야외무대 및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 이용객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 정보가 제공되는가?	
	· 긴급 상황 시 알릴 수 있는 방법용카메라 및 비상벨이 설치되었는가?	
	· 벤치 등 시설물은 특징인이 상시점유하지 못하는 구조인가?	

| 수변공간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구조계획	· 수변 공간 외부와 내부사이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이 가시성이 양호한가?	
	· 출입 가능 지역과 불가능 통제 지역의 영역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는가(바닥 재료의 차별 등)?	
	·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출입통제 시설 및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었는가?	
	· 여항 및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은 24시간 감시 체계가 작동되는가?	
	· 위압감을 느끼거나 시선이 은폐되는 교량 하부공간에는 이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공간 내에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는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되는가?	
조명계획	· 수변 공간에 설치된 조명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는가?	
	· 수변 공간에 설치된 조명은 장소에 적합한 광량 및 방식인가(직접조명 방식, 10lux 이상, 항포구에 위치한 야외 작업장은 평균 40lux)?	
	· 수목이 있는 해수욕장의 경우 적합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가(낮은 위치,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	
	· 방풍림 등 수목 주변 조명은 수목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구조인가?	
	·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광량이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해수욕장 안내시설물에 설치된 조명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는가?	
시설물 계획	· 수변 공간 내 산책로에 식재된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관목의 수고 제한 및 교목의 지하고 확보)?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내판을 비롯하여 비상구호장비가 비치되었는가?	
	· 수변 공간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출입구 및 접근로는 사방에서 잘 보이는가?	
	· 야외무대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 주요 이용공간과 위험지역에는 방범용카메라 및 비상벨이 설치되었는가?	
	· 수변 공간 내에 설치된 벤치, 퍼걸러(그늘막), 운동시설 등에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 벤치 등 시설물은 특정인이 상시점유할 수 없는 구조인가?	

| 공용주차장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구조계획	· 주차장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이 주변에서 감시가 원활한 구조인가?	
	· 여성전용 주차장(면)은 출입구에 가까운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는가?	
	· 주차장 내 보행 동선에는 적절한 조명으로 야간에 밝게 유지되는가?	
	· 조명이 차량, 기둥, 벽에 가리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 밝은 조명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천장 주조명 외에 벽면 보조조명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공간 내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안전시설	·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었는가?	
	· 관리자가 없는 경우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 비상벨의 위치 및 형태가 이용하기 편리한가?	
	· 지하주차장인 경우 비상벨이 25m 간격으로 설치되었는가?	
	·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을 위해 별도공간이 마련되었는가?	
지상주차장	· 주차장은 주변 건물이나 보행로 등에서 자연 감시가 가능한 위치인가?	
	· 주출입구 외에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통로가 조성되었는가?	
	· 주차장 주변에 시설을 가로막는 수목이나 시설물이 없이 개방성이 확보되었는가?	
	· 해안이 주차장의 경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감시가 원활한 위치인가??	
	· 어촌 지역 주차장의 경우 구획선이 명확하며 야간 보안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야가 확보 되었는가?	
	· 지하주차장에 인공 조명 외에 자연광 활용이 이루어지는가?	
	· 벽면, 바닥, 천장이 밝은 재료나 색으로 도색되었는가?	
	· 기둥과 벽면 구조가 규칙적으로 조성되었는가?	

2.3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I 태안군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방향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신체적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말한다(Ronald L. Mace)¹.
 -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전 생애 디자인(Design for the Barrier-Free Design)이라고도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 지금까지는 공급자 관점에서 제품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으나 '유니버설 디자인(UD)'의 이념에 따르면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된다.
 - 사용자의 연령, 성별, 능력, 경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에 충실하고 조형미를 갖춰 친근감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없는 환경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를 보충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실된 능력을 보완해주는 환경과 상품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를 사이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에서 보듯이 그 대상을 모든 사람들(all people)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as many people as possible)로 규정한 것처럼 장애없는 환경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이나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과 같이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없는 환경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이나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과 추구하는 방향이나 성격 등에서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 표-12에 정리한 것과 같이 활용 영역과 제도적 기반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이 개별 시설이나 지역을 접근하거나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비해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디자인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누구나 공유하여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 장애없는 환경(Barrier-Free)은 건축 영역에서 확장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정의되며,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제품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¹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로날드 메이스(Ronald L. Mace) 박사는 '다양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미래의 제품제조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구분	유니버설 디자인(UD)	장애없는 환경(배리어프리BF)
개념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쉬우며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 가능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와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대상	- 성별·연령·국적·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 건축물·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설비·정보)의 장애물 제거
법적 근거	-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20 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 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9 개정)
탄생 배경	- 유니버설 디자인은 BF가 가진 장애라는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 관점에서 1980년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 1997년 North Carolina 주립대학 Ronald L. Mace가 현재와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를 완성하고 원칙을 정립 - 법적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의 필요에서 출발 -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설계」라는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 1990년대 관련 이론이 정립되면서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Barrier-Free(장애없는 환경)으로 명명 -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미국 장애인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ADA)에 근거하여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 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

[표-12]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없는 디자인 비교

- 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이른 시기에 받아들이고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정책이 저변에 확대되었고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없는 환경 지역 및 도시 만들기 운동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1997년 제정되어 2020년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이다.
 - 2005년 제정되어 2020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평균 수명의 증대, 이동성 확장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추세에 따라 세대 간, 특성별 통합을 위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전체 생애 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용 영역도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모두 23곳으로 충청 남도는 천안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태안군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 구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 태안군은 도어농촌이 모여진 복합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정주환경, 교통여건, 생활기반 시설 등 환경 수준 및 이용행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어느 지역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 태안군은 국제 수준의 해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익숙하고 편안하며 격조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생활 약자를 대상으로 하던 범주에서 벗어나는 넓은 범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요구된다.

4)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 유니버설 디자인이 선보인 초기에는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과 같이 4가지 원리가 사용되었으나 이것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의 론 메이스 박사가 미국 교육부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 후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이 마련되어 통용되고 있다.
- 7가지 원칙은 '동등한 사용'(Equitable Use), '유연한 사용'(Flexibility in Use),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실수를 감안'(Tolerance for Error), '최소의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하고 사용하기 적절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이 주요 내용이다.
-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은 다음 표-13과 같다.

원칙	디자인 방안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가치를 제공하게 디자인한다. - 가능한 모든 사용자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어떤 사용자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모든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 보안, 안전이 동등하게 제공되게 한다. - 모든 사용자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
유연한 사용 Flexibility in Use	개인적 선호나 장애, 능력에 따라 넓게 적용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 사용자가 다양한 사용 방법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사용자가 사용하는 손방향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사용자가 정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다. - 사용자의 보폭이나 속도에 맞출 수 있게 한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언어, 집중도와 관계없이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게 한다. - 사용자의 사전 예측과 직관에 부합하게 한다. - 사용자의 읽기 능력이나 사용언어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우선 순위대로 배열한다. - 행위(작동) 도중이나 이후에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격려한다.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사용자의 감각 능력이나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 필수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촉각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 필수 정보와 부가 정보가 적절히 대비되게 한다. - 필수 정보에 대해 판독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요소들을 차별화 한다. - 감각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나 도구에 상응하게 한다.
실수를 감안 Tolerance for Error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이나 역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위험과 실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요소를 배치한다(사용빈도가 높은 요소는 가장 접근하기 쉽게 하고,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거나 격려하는 방식). - 위험이나 실수에 관해 사전에 경고한다. -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한다. - 주의를 요구하는 일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사용하기 편하고 피로를 줄이도록 설계한다. - 균형잡힌 자세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반복하는 동작을 최소화 한다. -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힘을 최소화 한다.
접근하고 사용하기 적절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체격, 자세, 이동성과 무관하게 접근과 사용이 편하도록 크기와 공간을 디자인한다. - 사용자가 앉아 있든 서 있든 중요한 요소들이 잘 보이게 한다. - 사용자가 앉아 있든 서 있든 모든 구성 요소에 손이 닿도록 한다. - 다양한 손 크기가 적용되게 한다. - 보조기구나 개인별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표-13]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과 디자인 방안

- 2012년 버팔로대학교 인클루시브 디자인과 환경접근센터는 사회 참여, 보건, 건강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면서 증거 기반 디자인에 근거를 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8대 목적을 개발했다.

목적	내 용
몸에 맞게 Body Fit	- 사용자의 체격과 장애와 관련하여 넓은 범위로 적용시킨다.
편안하게 Comfort	- 몸을 움직여서 닿거나 잘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도 이내를 요구한다.
알 수 있게 Awareness	- 사용할 때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다.
이해할 수 있게 Understanding	- 작동방식이나 사용법을 애매하지 않게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건강에 도움되게 Wellness	- 질병을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보건 증진에 기여하게 한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Social Integration	- 모든 집단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우한다.
각자에 맞게 Personalization	- 선택 기회를 주며 개인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문화에 맞게 Cultural Appropriateness	-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존중한다.

[표-14] 유니버설 디자인 8대 목적

| 비전 및 목표

1) 미래비전

- 태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 추구하고 도달하려는 미래 비전을 비롯한 목표와 지역별 전략을 제시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편한 태안”

누구나 쉬운 태안	누구나 편한 태안	누구나 함께하는 태안
군민과 외래 방문객 모두가 익숙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주민 및 외래 방문객의 활동을 증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실천

2) 목표 및 핵심가치

- 연령, 성별, 장애유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태안군을 만든다.

사람중심 보행환경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정보전달의 원활
다양한 신체 조건 및 연령대의 사용자가 편하게 걷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 사용자의 이용 특성에 적합한 규모, 사용의 난이도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활용 및 효과 증대	저시력자, 외국인을 포함한 전 사용층이 쉽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핵심가치

무장애 디자인 Barrier-Free Design	공평과 평등 Equity & Equality	안전과 안심 Safety & Relax	정보 소통 Information Corresponding
지역 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의 사람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태안군민을 비롯한 외지(외국) 방문객 모두가 연령대, 신체조건, 국적에 상관 없이 편리하게 조성된 기반을 공평하게 누림	태안군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여 활동이나 심리적으로 안심하여 영위할 수 있게 함	저시력자, 언어의 해독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읽기 쉽고, 획득하기 쉬운 체계로 구축함

3) 추진전략

- 전략 1.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진
 - 누구나 걷기 쉬운, 이동하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정보를 얻기 쉬운 태안군을 지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가 실현되는 물리적, 구조적으로 정비
- 전략 2.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환경 조성
 - 고령자 거주지, 공공·복지 시설, 공공·복지 시설, 여성(임산부), 다문화 가정 집중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주차환경, 시설물을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
- 전략 3.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참여와 공감대 마련의 시작
 - 눈높이 행정서비스에 기반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행정서비스의 우선 추진으로 지역민 등 공동체가 참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확대
- 전략 4.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과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통합 품질 관리 체계 구축, 교육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I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1)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입

- 태안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다양한 조건을 갖춘 사용자를 수용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뿐 아니라 해당 마을과 나아가 태안군이 보다 격조있는 단계로 도달과 주민 공동체 향상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 태안군은 내적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요구되며 외적으로는 국제수준의 해양휴양도시의 지향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사업은 태안군 유니버설 디자인 4가지 전략에 따라 아래 표-15와 같이 크게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안심되는 환경 조성, 함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착과 확산이라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가지 사업유형은 개별적이지 않고 다른 유형과 함께 시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운용한다.
- 삶의 질을 높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물리적 성향의 사업으로서 그중 대표적인 보행 환경의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정보체계 개선을 담고 있다.
- 안전하고 안심되는 환경조성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성을 보이며 낙후된 장소에 사람(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 개선을 통해 불편함과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최근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은 범죄예방 인식 개선과 홍보,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환경 개선 및 정비, 주민 커뮤니티 강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함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환경조성에 있어 주민참여 방안과 행정서비스 관점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담고 있다.

사업유형	사업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 보행공간 확보, 기울기 개선, 장애물을 제거하는 보행권 회복 사업 - 다양한 사용자와 목적에 대응, 보행경로를 알려주는 정보맵 개발 - 관공서 및 관광지 주요지점에 안내, 안전 관련 정보체계 개선 - 스마트 다기능이 탑재된 관광안내 네트워크 구축(키오스크) - 문화·관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디자인 - 농어촌 주요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보행권, 조명)
안전하고 안심되는 환경 조성	-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업소 감시 및 순찰 강화 - 외래 방문객이 집중되는 관광지 등 감시 및 순찰 강화 - 재개발지역, 원도심, 공사중단 건축물, 폐가 및 공실 등 범죄 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도 및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원룸촌 및 여성친화지역 순찰 및 안심 시스템 구축 - 범죄 발생 예측 지도 및 안전지도 제작
함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주민참여단(가칭) 운영 - 지역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근무 체계 수립 및 장비 지원 - 마을 지킴이 양성 및 운영, 안전망 구축/안전한 마을 만들기 - 행정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및 활용 - 행정서비스에 다기능 커뮤니케이션 도입 - 공공공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유기반 확산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 및 확산	- 범죄예방 조례 제정 및 운영 - 유니버설 디자인 시기별 유니버설디자인 운영방안 수립 - 관련 사업 및 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 필수 적용 방안 마련

[표-15]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유형 및 내용

2) 사업 프로세스

가. 사업 대상지 선정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적용 과정은 크게 ①대상지 선정, ②대상지 분석, ③계획 수립, ④사업 실행 및 평가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업대상지의 선정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장소에 주목하되, 고령층 및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과 낙후지역 등을 우선 시행할 대상으로 선정한다.
- 대상지 선정에 앞서 태안군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맵을 작성한 후 현장조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업방식은 크게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과 공모에 의한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공모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사업 대상지 분석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과정은 대상지의 현황 파악으로 주거 및 이용자 현황, 조성된 물리적 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 사전에 작성된 유니버설 디자인 맵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불편함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시설 도입 등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 및 행정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요구 및 참여가 수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해당 지역에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보편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점 장소를 먼저 조성한 후 미적용 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 현장조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 평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사업 계획 수립

-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해당 사업의 장소, 대상,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결정이 따라야 한다.

장소(Where)	대상(What)	주체(Who)
지역의 정확한 위치와 환경을 확인	거주자 및 이용자의 연령 및 특수성 파악	사업 수혜자, 행정 및 사업 참여 주민 등 모든 관계자

- 연령대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이용 대상의 요구를 범용적으로 수용하여 해당 지역에 효율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 및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대상지 분석을 토대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공간 개선 및 시설, 정보체계 개선 등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과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 예산 확보, 주민참여 가능성, 적용된 전략 및 대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범위를 설정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해당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 사업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면밀하게 계획한다.
- 수립된 사업 계획은 관련 주체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라. 사업 실행 및 평가

- 계획안의 내용을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과 주민참여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공 설치, 실행 및 운영을 진행한다.

사업 시행 시 유의점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수단과 목적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공공공간 및 시설물의 범용적인 편의성을 지향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및 활동을 증진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 밝고 정돈된 환경,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 및 시스템 확충, 행정 서비스 체계의 단순화 및 간결화, 안내 사인 등 정보체계의 전달력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목표로 하는 성과가 된다.
 - 이러한 결과들은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실천 및 경제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의 시공 및 실행 이후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용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어지게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 및 확산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수립, 지속성을 담보로 하는 연계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등이 포함된 사후 조사 및 평가를 일정 기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 과정을 거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한다.
 - 태안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진행 과정을 다음 표-16과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며 단계별 주민 참여방안을 명시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프로세스	주민참여 방안
1단계/대상지 선정 - 관련 자원사업 경향 파악 - 인구 특성 및 활동 형태 파악 - 지역 특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요구 지역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 인식 및 요구 사항 - 주민협의체 구성
2단계/대상지 분석 대상지 현황조사 - 지역 주민 요구 사항 파악 - 대상 지역 공간 및 시설물 등 현장 조사 - 대상 지역 활동 저해 현황 파악 대상지 유니버설 디자인 맵 작성 - 대상 지역 관련 정보 수집 - 활동 저해 요인 및 현황 시각화/사업 추진체 구성 - 태안군, 해당 주민센터, 주민협의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 추진체 구성 - 사업 추진체 의견 수렴	주민 교육 및 사업 설명 - 인식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 의견 청취를 위한 워크숍 - 선진 사례 탐구 - 주민 요구 사항 취합 및 전달
3단계/계획안 기획 계획안 작성 - 태안군, 해당 주민센터, 주민협의체, 전문가(태안군 공공디자인 위원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로 이루어진 사업 추진체 구성 계획안 협의 및 결정 - 사업 안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선별 - 사업 추진체의 검토 및 결정	계획안 검토 - 사용자 관점에서 계획안 검토 - 주민 요구 사항의 여부 파악
4단계/사업 실행 및 평가 시공 및 실행 - 계획안에 따른 시공 진행 - 시설물 등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실행 유지 관리 - 조성 환경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 지자체 및 주민 등 관리 주체별 운영 평가 및 피드백 - 시공 및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도 평가 - 개선 사항 및 미 이행 부분의 피드백	주민 커뮤니티 역할 -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 이행 만족도 평가 - 사용자 관점의 만족도 및 평가 제시

[표-16] 범죄예방 사업 프로세스 및 주민 역할

3) 시범사업 1(안)

'누구나 편하게 걷는 보행로 개선사업'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방 소도시 특유의 보행환경 낙후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보행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악화되고 있다.
- 유효보도 폭 확보 및 급경사 구간의 교통약자 기준의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 농어촌지역 등 고령층의 생활기반이 되는 장소의 낙후된 보행환경은 안전하고 편한 보행환경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나) 사업내용 및 효과

- 보행로 유효 폭 확보
 - 상업지역 가로 건축후퇴선 이행 및 불필요한 시설물 정비로 유효보도 폭을 확보한다.
 - 농어촌 주요 보행구간의 유효보도 폭 확보, 안전한 보도 재질, 적정 광원으로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충한다.
- 보차혼용도로 정비
 - 지방소도시에 일반적으로 형성된 보차혼용도로의 보행로와 차로를 구분하며 지중 매입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 보행로 기울기 개선
 - 급경사 및 횡단·종단 복합경사로 등에 기울기 및 단차를 완화하는 경사로 등 접근방법을 개선한다.

(다) 사업대상 및 추진방식

- 보행 여건이 낙후된 도심 상업지역 및 원도심, 농어촌 주요도로(마을회관 등 보행 경로)등
-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 태안군 자체 시범사업

4) 시범사업 2(안)

'통합형 길찾기 안내표지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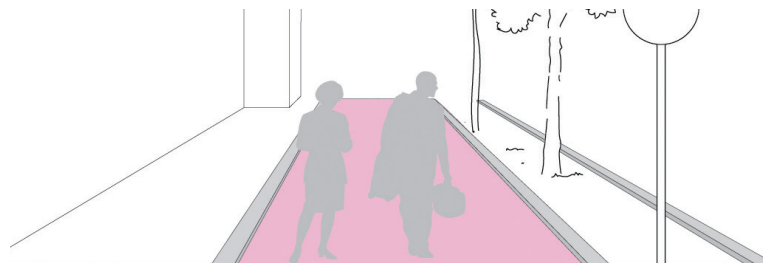
- (가) 배경 및 필요성
- 길찾기 안내표지판은 체계성 및 인지력 부족, 다양한 이용자 대응 미흡 등으로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전달 확산으로 실질적인 효용이 떨어지는 대형 관광안내 사인 형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나) 사업내용 및 효과
- 문화·관광지 다국적 표기
 - 문화재 및 관광지 안내사인의 다국적 표기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여 태안군 방문층의 확대 및 보도 또는 차량을 이용한 활동 영역을 넓힌다.
 - 공공안내표지의 표준화
 - 다양한 유형의 공공안내표지의 형태 통합과 표기 내용 등 콘텐츠의 정돈을 통해 정보전달을 쉽고 명확하게 한다.
 - 태안해변길 사인의 통합화
 - 현재 3가지 유형으로 제각기 설치된 태안해변길 사인을 통합하여 설치 장소의 효율성 및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
 - 보행 여건이 낙후된 도심 상업지역 및 원도심, 농어촌 주요도로(마을회관 등 보행 경로)등
 -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 태안군 자체 시범사업
- (다) 사업대상 및 추진방식
- 문화재 지역 및 해수욕장 및 범죄발생이 높은 관광지 등에 도입한다.
 - 문화재청에 사업 요청, 태안군 자체사업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도로

■ 가.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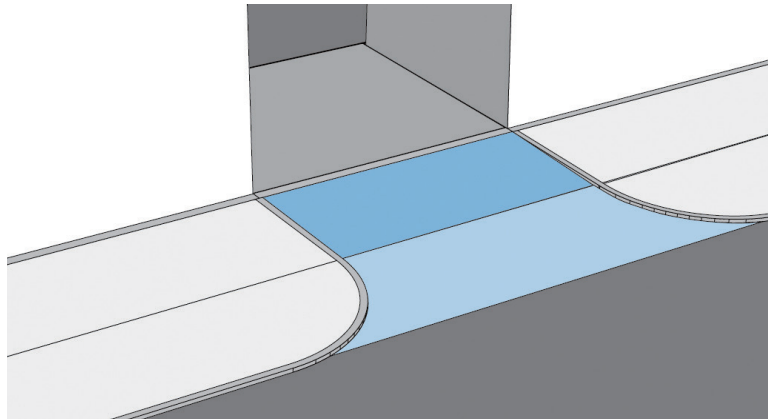
- 보행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한다.
 - 보행로 폭은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여행용 가방이나 화물을 휴대한 사람 등 다양한 이용 형태 및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보행로에 전신주·가로등·안내표지 등 기둥이 있는 시설물이나 버스승강장과 같은 크기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유효 보행로 폭인 2m를 유지하며 다른 시설물과 정돈되게 배치한다.
- 최소 유효 폭 1.2m를 확보되지 않은 보행로에 시설물 설치나 식재를 할 경우, 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진행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한다.
- 1.5m 미만의 보행구역이 이어질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교행구간을 설치한다.
- 지하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로 인해 경사가 생기거나 보행거리가 늘어나 보행이 불편해지는 경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한다.
- 보행로 및 횡단보도는 장애인·노인·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단차가 없이 평탄한 상태가 되도록 하며 횡단방향에 경사가 생기지 않게 한다.
- 보행로는 건축물 등의 출입구 및 공원, 광장, 대중교통 승강장 등의 연결부와 단차나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 보행로는 우천·폭설·폭염 등 가혹한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조성한다.
 - 보행로 재질은 투수성 및 마찰계수를 갖추며, 보행자가 넘어져도 충격이 최소화 되는 재질을 사용한다.



■ 나. 보·차도 분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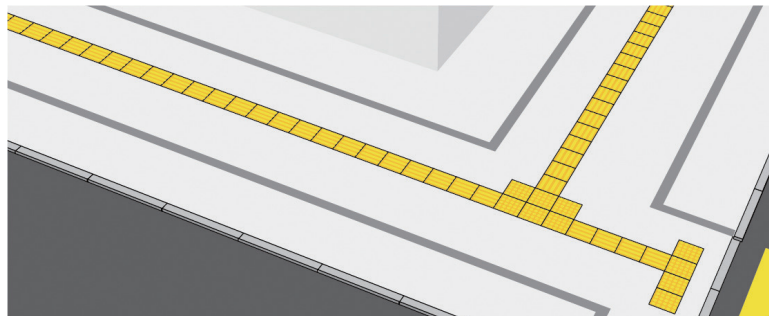
- 보·차도가 분리되는 부분은 연석·안전펜스·식재대 및 바닥마감재의 색채나 재질에 차이를 두어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 보행로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차도보다 보행로를 높게 조성한다.
- 보행자가 우선되는 주거단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에서 보·차도가 교차되는 경우, 보행로를 차도보다 높게 조성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높이는 보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연결부에 경사가 생길 경우,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사각을 적용한다.

- 단차가 생길 경우, 진행방향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 보행로에 기울기가 종·횡단으로 복합적으로 생기지 않게 설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한다.
- 건물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건물 출입구 바닥과 수평 및 높이를 유지하고, 단차가 생길 경우 연결되는 입구 바닥 경사를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진행 방향 횡단기울기는 1/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1/18 이하인 경우는 50m마다, 1/120이하는 30m마다 1.5m×1.5m 크기의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 경사가 이어지는 구간에는 중간에 평탄한 구간을 조성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편의와 안전을 도모한다.
- 경사구간 및 경사각도가 표시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보행자가 보행로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 보행로는 미끄러지거나 포장재 연결부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 휠체어나 유모차, 높은 굽을 신은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보행자를 고려한 포장재 및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경우, 결구부의 틈이 벌어져 단차가 생기거나 개별 포장재(블록)가 이탈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치한다.
- 맨홀덮개나 배수구 덮개와 같은 시설물은 바닥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마감하며, 바닥포장재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할 경우 재료의 크기 및 패턴 등을 동일하게 연결한다.
- 배수구 덮개의 격자구멍이나 틈새는 간격이 1cm 이하로 하며 보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설치한다.
- 배수구에 불순물이 걸려 배수를 막지 않도록 틈새 간격을 여유 있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겨울철 폭설 및 결빙이 예상되는 보행로 구간에는 마찰력을 높이는 노면 요철시공이나 열선 설치를 권장한다.
- 보·차도내 보행로 포장 재료는 색채 및 질감 차이를 주어 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 안전구역 내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야간 보행 시 안전 여부 및 설치되는 조명을 고려하여 포장재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한다.
- 시각장애인이 시·지각적으로 혼동하지 않게 어두운 색의 보도패턴, 혼합한 패턴, 점자블록과 유사한 색이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적합한 유형의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다른 보행자와 동선 마찰을 막고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안전구역 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60cm 이격하여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일직선을 이루도록 설치하되, 지형 및 다른 시설물로 인해 직선 형태가 어려우면 우회하여 설치한다.
- 그 밖의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따른다.



■ 다. 차량 진·출입부

-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교차되는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 진행방향으로 평탄한 형태의 안전구역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자 우선으로 한다.
- 진·출입부의 바닥 마감재는 주변과 색상 및 질감을 다르게 한다.
- 차량 감속이나 보행환경 증진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나 보도 턱낮춤 등을 적용할 경우 보행로의 높이 기준으로 설계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색채 등으로 표시한다.
- 주차장 등 차량 출입이 빈번하고 진입 구간이나 폭이 넓은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 진출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로의 최소 유효 폭인 1.5m를 유지한다.
- 보행로 면은 높이 변화가 없이 평탄하게 조성하고 차도와 경계부는 턱낮추기를 한다.
- 보·차도 경계의 단차가 5cm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도 1/8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보행로 폭이 좁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폭 만큼 보행로 전체를 턱낮추기 한다.
-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이 예상되는 보행로에는 마찰력을 높이는 노면 요철 시공이나 열선 설치를 권장한다.

■ 라. 자전거 도로

- 지역 및 현장 여건,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와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通行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전후방 총 20m를 암적색 포장재로 포장하고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인접한 경우 포장면 등으로 안전하게 구분하고 주변 시설물이 운행이나 시야를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는 도중에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지하보도나 육교 등 계단 구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수 있는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하게 표지판으로 알린다.
- 자전거 도로에 볼라드 설치의 지양하되 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 오토바이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 한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의 난간 설치의 자전거가 도로 밖으로 이탈된 것보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충격이 적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한하여 안전한 재질로 설치한다.
 - 난간의 높이는 1.2m, 한 프레임의 길이는 1.5~2m 범위로 설치한다.
- 야간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된 쉼터, 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적절한 조명 시설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대가 보행로 상에 설치되는 경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하며, 자전거 보관대를 보행자가 인지하기 쉽게 반사판 부착 및 바닥 영역을 구분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이용자의 동선 및 이용행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편의에 적합한 지점에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간이 화장실 및 주차시설, 수리센터, 쉼터, 벤치 등의 편의 시설을 한데 모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대에는 위치 및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기주입기 등 편의 설비를 갖추어 놓는다.
- 자전거 도로의 표면은 평탄하게 하며 보행로 등 다른 도로와 인접된 경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재 색상 및 재질에 차이를 둔다.
- 자전거 도로의 포장재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40BPN(British Pendulum Number) 이상 되도록 시공한다.
- 우천, 폭염, 폭설 등 악천후를 대비하여 투수성 재질을 사용하며, 동절기에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깊이 20cm 이상의 동결방지층 조성을 권장한다.
- 자전거 도로의 포장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색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쉼터 등 이용자의 인지가 필요한 지점은 포장 색상 및 재질, 패턴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기 쉽게 한다.

■ 마.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장애인 및 노인·유모차 등이 편안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 노면은 고회도 반사 재료를 사용한 패턴으로 도색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연결되는 보행로와 동일한거나 유사한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횡단보도 진입부는 수직단차가 생기지 않게 하며 부득이한 경우 2cm 이내의 턱 또는 30°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횡단보도에 연결되는 보행로는 1.2m 이상을 확보하며 횡단보도 폭과 동일한 보행자 대기 공간을 설치한다.
 - 기울기는 1/18 이하, 경사로 옆면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한다.
- 보행로와 횡단보도 경계 및 횡단보도 위에는 배수구나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
-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이미 설치된 점자블록과 보도높이에 맞추어 설치된 경계부분을 함께 철거한다.
- 도로 폭이 넓어 건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횡단보도에는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는 신호등과 연동되는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신호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 설치하는 펜스는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적은 유형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보행로 상의 보행자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한다.
- 펜스는 지면에서 펜스 상단까지 높이를 1.2m 이상으로 설계하여 보행자가 넘지 못하게 한다.
- 안전펜스의 구조물 사이로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내부 구조물을 닫고 넘지 못하는 세로 형태의 바 구조로 설치한다.
- 펜스의 기둥은 자주력과 토압저항을 고려하여 지면에서 수직을 이루도록하며, 기둥의 매설 깊이는 해당 제품의 성능시험에 적용한 수치대로 설치하여 견고성을 유지한다.
- 안전펜스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시작되게 한다.



■ 바. 고원식 교차로

- 고원식 교차로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면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설치를 권장한다.
- 고원식 교차로에는 보도 양편에서 횡단하여 건널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고원식 교차로 설치 대상지는 교통량이 많은 넓은 도로, 하중이 무거운 화물차, 긴급한 응급차 등 고원식 교차로에 의해 감속을 해야 하는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다.
- 고원식 교차로는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
- 고원식 교차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횡단보도 부분의 경사는 단차가 없이 완만하게 조성한다.
- 고원식 교차로 진입부 경사로부터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측구(gutter) 등 배수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 고원식 교차로 면 전체는 주변도로와 구분되도록 도색 등을 다르게 하고 횡단보도 면은 횡단보도에 맞는 띠 형태의 도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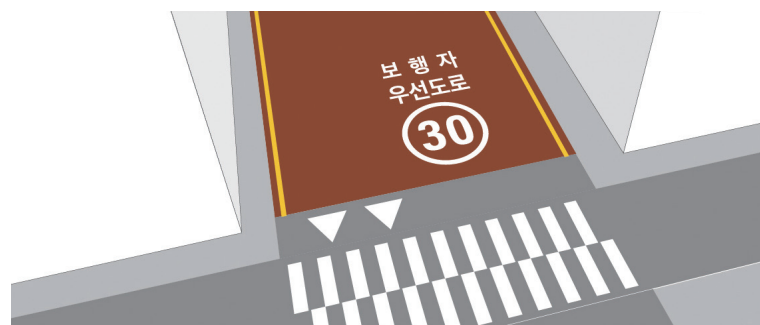
■ 사. 보행섬 횡단보도

- 편도차로가 4차로 이상인 넓은 도로는 횡단 거리가 길기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보행자가 일시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보행섬)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섬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교통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섬과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단차가 생기지 않게 하며 조경 설치 시에는 그 부분의 연석은 높이를 높여서 설치한다.
 - 폭은 1.5m, 단차는 2cm 이하를 유지한다.
- 보행섬 포장재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나 보행로와 다른 재료를 적용한다.

■ 아.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폭이 좁은 도로 중 차량 통행량이 적고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선정한다.
- 횡단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도 보행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보행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횡단보도가 보행로(경계석) 높이만큼 올려서 설치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권장한다.
- 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유지하여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바닥표면은 빗물 등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바퀴가 있는 휠체어, 유모차, 여행용 가방 등을 위한 별도의 경로를 조성한다.
- 보도블록 시공시 블록간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단차가 0.5cm 이하가 되도록 정교하게 마감한다.

-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가 보행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입부에 입식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도 표기한다.
 - 현재 위치 및 주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노면 포장은 보도블록 등 보행로 포장재를 사용하여 차량 통행보다 보행이 우선임을 표시한다.
- 도로나 건물에 접한 경계에는 녹지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이 되게 한다.
- 녹지대 설치를 확대하고 녹지대 조성 시에는 차단용, 경관용 등 장소에 적합한 용도의 수목을 식재한다.
- 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주행 차량과 마주하는 방향에는 식재의 높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50cm 이하로 계획한다.
- 주변의 공원이나 주요 건축물, 공개공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연속성 있는 보행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결빙으로 미끄러움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노면요철 시공이나 열선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도로 표면은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요철을 주어 해당 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한다.
-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에는 별도로 조명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공간 등 보행 경로의 적절한 지점에 보행자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 보행로 경로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하게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 방향은 보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 덮개의 표면이 보행로 포장재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덮개 설치 시 격자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기준 1cm 이하).
- 우수 처리시설은 차로 쪽이나 녹지대 쪽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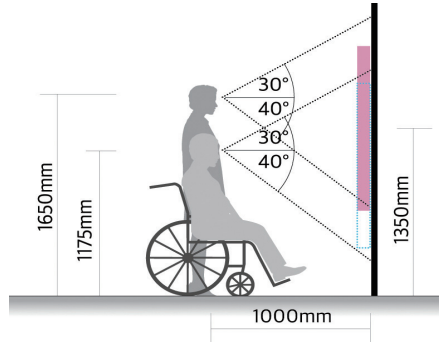


공원 및 광장

■ 가. 진입공간

- 공원 및 광장으로 이어지는 연결 보행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양한 사용자의 통행 행태를 고려하며 공원 내 주요시설과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한다.
- 진입공간에 연결되는 지점은 보행자나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단차가 없게 하며 부득이 단차가 생기는 경우 1cm 이하로 경사지게 조성한다.
- 보행로가 차도에 맞닿아 있거나 교차하는 경우 바닥 포장재의 색상이나 질감에 변화를 주어 공간 영역에 대한 인지가 명확히 될 수 있게 한다.
- 바닥 포장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 포장재의 이음매 사이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구두굽이 걸리지 않게 정교한 마감 처리를 한다.
- 공원 및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공원 내 보행로와 재료나 색상을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안내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공원 및 광장 출입구는 보행자·자전거·차량 경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오토바이 등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경우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주출입구는 시야가 트여 개방감을 주고 장애인·노인·어린이의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한다.
 - 공원 주출입구는 공원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절한 유효 폭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공원 주출입구의 보행로 폭은 2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 출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할 때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 1.5m 내외의 간격을 두며 볼라드 반경 1.5m 이상 주변 바닥은 평탄하게 조성한다.
- 공원 주출입구 주변에는 공원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를 권장한다.
- 공원 및 광장 입구에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공원 입구 부근 개방된 곳에 설치한다.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계획 시, 이용수요, 유지관리 비용, 주변에 동일한 기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결정한다.
- 매표소나 관리사무소는 주 출입구 근처에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조성한다.
 - 매표소나 입장권 발매기 앞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1.5m × 1.5m 이상 면적의 공간을 확보한다.
- 매표소나 입장권 발매기 앞에는 가방이나 간단한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과 우산 및 목발 등을 걸 수 있는 걸개를 설치한다.

- 매표소나 입장권 발매기가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 비·눈·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한다.



■ 나. 공원 내 보행로

- 공원 및 광장 내 보행 동선은 차량 동선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치한다.
- 차량 통행 제한 및 관리를 위해 볼라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매입형 볼라드를 설치한다.
- 주요 시설에 연결되는 보행로는 바닥재 색상이나 패턴 등을 연속성을 주어 저 시력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한다.
- 산책로 중 한 곳 이상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 폭 및 기울기를 확보하고 용도에 적합한 바닥재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 공원 및 광장 내 보행 경로에는 급격한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게 하며 부득이 설치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를 계단과 함께 설치한다.
 - 경사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연결 보행로와 동일한 폭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로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를 권장하며 시작과 끝 지점, 높이 75cm마다 1.5m 이상의 평탄한 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 및 계단 마감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경사로 및 계단의 양 측면에는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2단 안전손잡이 설치를 권장한다.
 -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한다.
- 산책로 바닥재는 투수성 블록이나 잔디 블록 등 투수 기능을 가진 친환경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추락이나 미끄럼, 경로 이탈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다. 공원 내 휴게공간

- 공원 내 휴게 공간은 보행로에서 가깝고 평탄한 접근과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조성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개방된 위치를 선정한다.

- 휴게공간에 연결되는 보행로 포장은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웅덩이나 경사가 생기지 않게 한다.
 - 유모차 및 휠체어의 진입과 교행이 가능하도록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휴게 공간에는 다양한 인원의 이용이 가능한 퍼걸러, 벤치를 설치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늘막 설치로 대체한다.
 - 휴게공간에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 휴게공간 접근로는 1.5m 이상 폭을 확보한다(최소 1.2m).
 - 휴게공간 접근로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휴게공간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수고 60c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한다.
- 라. 공원 내 공간형 시설
- 공간형 시설은 공원 내에 설치되는 안내소·매표소·판매부스 등 건축물 형태의 밀폐된 시설물로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지점에 배치한다.
 - 공간형 시설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도 및 안내 표식을 하고 전면부 등에 머무를 수 있는 평탄한 공간을 조성한다.
 - 이용자가 대면하는 창구는 키 작은 어린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하고 창구 하단에 선반형태의 보드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공간형 시설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인터폰이나 비상벨을 설치한다.

주차장

- 가. 배치
-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인지하기 쉽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거나 주차장 설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주차장 운전자가 주차장 위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입구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설치된 표지가 주차장 이용자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와 규모를 조절한다.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출입구 또는 해당 건물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주차구역(주차면)과 보행통로의 경계는 단차가 없게 하며 부득이 단차가 생길 경우 기울기를 1/12로 완만하게 조성한다.
 - 주차장에는 차량 통행경로와 구분된 보행로를 조성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 주차면, 차량 통로 및 보행 통로 바닥은 재질·패턴·마감방법을 달리하여 영역을 구분한다.
 - 바닥표면은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침수 및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 설비를 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주차장 내 보행 통로는 단차 없이 평탄한 상태로 1.2m 이상 폭을 유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폭을 0.9m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주차장 입구를 비롯한 모든 구간은 야간 이용에 안전하도록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은 규정에 따라 면적을 여유있게 구획하여 편리한 승하차가 되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폭 3.3m, 길이 5m 이상이 되게 계획한다.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서 건물 출입구 등 목적지에 이르는 보행 통로는 눈·비·햇볕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장 출입구에는 주차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노면에는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부터 연속되게 유도표시를 하고 바닥 색상 및 재질, 마감방법을 달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조성할 경우 설치하는 유도표지 및 안내표지에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규모가 큰 옥외주차장에는 그늘 조성을 위해 수관 폭이 넓은 교목 식재를 권장한다.
 - 수목 진액 분출로 차량에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택한다.
 - 재해 및 안전사고의 상시감시를 위해 전체 구역을 볼 수 있는 지점에 24시간 작동되며 음성 전송 기능을 갖춘 방범용카메라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경우, 가까운 공용주차장과 연결되는 접근로를 조성하고 해당 주차장을 찾기 쉽게 안내 및 유도표시를 한다.
- 나. 식재
- 보행로 영역 및 횡단보도 전면, 교통표지 지주의 반경 5m 이내에는 시선을 가리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다.
 - 교차로 각각부에 식재하는 경우 수목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눈높이 1.1m~2.1m).
 - 보행로 유효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띠녹지나 가로화분 설치로 대체한다.

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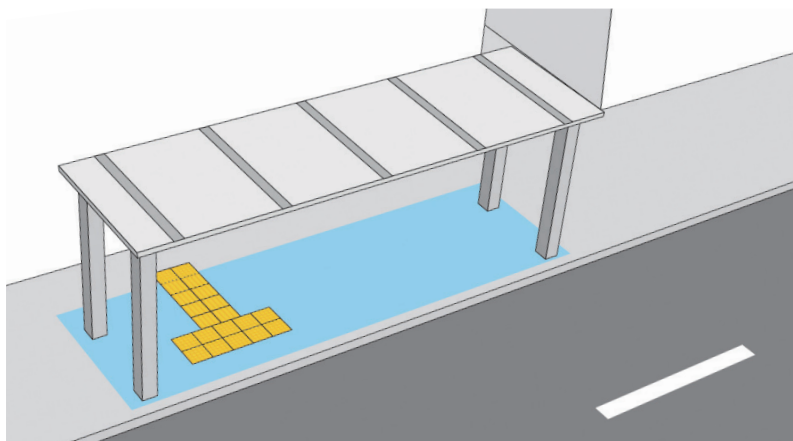
시설물 일반

- 시설물 설치의 사전에 수요의 긴급성과 설치 시 제공될 편의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시설물은 기능성을 우선으로 하며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며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한 곳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시설물 설치로 인해 공간, 특히 보행공간이 좁아져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게 한다.
 - 보행로와 식재대가 구분된 폭 2m 이상인 보행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로 구간을 피하여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규모가 작은 유형의 시설물로 설치한다.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우선적용하며 사용자 및 설치 장소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은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며 경사진 장소에는 수직과 수평이 유지되게 설치한다.
- 시설물이 설치된 영역은 경계석으로 구분하거나 바닥 포장재 색상 및 재질, 마감방법을 달리하여 보행자나 사용자가 영역의 차이를 인지하게 한다.
- 시설물에 보행자나 이용자가 부딪치더라도 충격이 완화되게 모서리가 각지지 않은 형태를 갖춘다.
 - 크기가 크거나 이용자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물은 이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시설물 적용색상이 눈에 띄지 않아 보행자나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물 모서리 등에 부분적으로 밝은 색을 적용한다.
 - 시설물에 적용되는 표준색이 저명도, 저채도 색채임을 고려한다.
 - 밝은 색은 색상, 면도, 채도 등에서 바탕색과 일정한 대조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한다.
- 야간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 조명이 있는 곳에 설치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별도로 설치한다.
- 시설물이 보행자나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차단물로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어린이 눈높이를 맞추어 크기 및 높이를 결정한다.
- 보행안전구역 및 횡단보도 전면, 교통표지판 지주 설치 지점 반경 5m 이내, 교차로 각각 부에는 시설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한다.

대중교통시설물

■ 가. 버스택시 승강장

- 주 이용자, 이미 설치된 다른 승강장과의 거리, 보행자 및 보행로 여건, 구간 내 자전거 도로 등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승강장 유형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 보행로 폭이 좁은 장소에서는 보행로 방향으로 개구부가 향하게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한다.
- 버스승강장의 개구부 폭을 85cm 이상으로 하며 유모차 통행이나 짐을 휴대한 승객을 고려하여 폭을 90~100cm 정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버스운전자의 승강장 대기자 확인 및 승강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명을 설치한다.
 - 조명이 진입하는 버스운전자를 직접 향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버스승강장 유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크기 및 유형을 선정한다.
- 승강장 안내표지 및 노선 안내도는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한 서체(태안군 지정 서체)를 사용하며 픽토그램, 영문 표기를 함께 표시한다.
- 무장애버스가 정차하는 승강장의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시각장애인 동선과 일반 대기 공간을 분리하고 승강장 위치를 표시한다.
- 무장애버스 승강장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는 위치에 높이 1.2m 이하의 입식표지판 및 전자식 음성시설 및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담은 관리기호를 크게 부착하여 사용자가 현재 정류장 위치를 인지하도록 한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은 주변에 별도로 조명이 없는 경우 반드시 조명을 설치한다.



■ 나.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는 대중교통 환승지점 및 학교, 관공서 등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다양한 신체조건의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자전거를 들어올리는 2단 유형보다 단순한 1단 유형을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 위치가 보행 동선과 겹치거나 너무 낮은 크기로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자전거 보관대에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자전거 보관대의 구조물은 견고하면서 사용자가 부딪치더라도 충격이 적도록 원형 구조로 제작한다.
- 자전거 보관대 간의 간격은 이용하기 어렵지 않게 충분한 폭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고령층 이용이 많은 장소에서는 폭을 넓게 배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사용자가 잠금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편의시설물

- 가. 기본지침
 - 편의시설물은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 빈도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 편의시설물이 보행공간을 지나치게 차지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설치공간을 확보 한다.
 - 편의시설물이 주변 조망을 가리거나 조경 및 녹지대 등을 침범하지 않게 계획한다.
 - 편의시설물이 설치된 장소가 야간에 어두울 경우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나. 벤치
 - 공원 내 벤치는 시야가 트인 장소에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설치하며 벤치 영역의 바닥을 주변과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수목이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그늘을 조성하는 경우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계획한다.
 -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되 여러 사람이 앉는 벤치보다 일인용 벤치나 각기 앉음판이 간격을 두어 이격된 유형을 권장한다.
 - 벤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이 평탄하여야 하며 벤치 높이는 바닥에서 앉음판 면까지 40~45cm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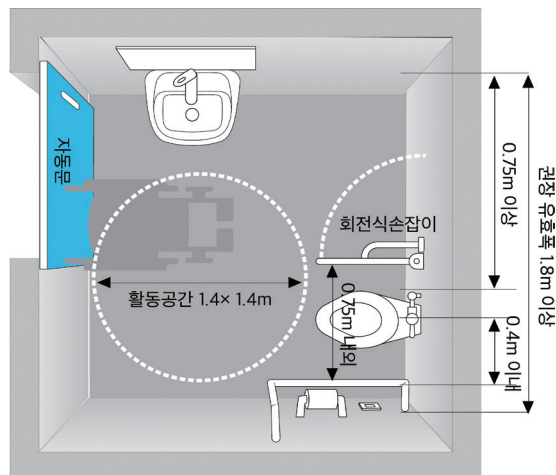
위생시설물

■ 가. 기본지침

- 위생시설물은 장애인 및 노인·어린이·영유아 동반자·외국인을 비롯한 짐을 휴대한 사람 등 다양한 이용 행태의 동작 범위, 필요 치수, 활동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위생시설물은 휠체어 사용자 및 노인·어린이 등 신체조건이나 이동 형태가 다른 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정한다.
- 위생시설물 사용시 실수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설계한다.
 - 부득이 단차가 생기는 경우 1/18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위생시설물의 진입 및 이동 경로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단차가 없게 하며 특히 출입문에 문턱 등에 단차가 생기지 않게 한다.
- 위생시설물은 벽체의 색상이나 재질, 마감 방법 및 시설물 바닥을 주변과 다르게 하여 영역 구분이 되도록 한다.

■ 나. 상세지침

- 위생시설물의 출입구는 1.2m 이상, 출입문은 85cm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통행이 이루어지는 출입문은 90cm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바닥면은 1/30 이하의 기울기로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며,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위생시설물의 출입문은 이용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가볍고 안전한 구조로 설치한다.
 - 자동문 설치가 가능한 여유 폭이 있는 경우 자동문을 설치한다.
- 위생시설물의 출입구 측면 1.5m 높이에 사용자 구분 및 설비 등 표지를 부착한다.
 - 표지에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점자표기를 함께 표시한다.
- 수도꼭지(수전)는 가급적 작동이 쉽고 간단한 유형을 선택하며 냉·온수 구분은 명확한 색상 표시와 함께 점자표시를 한다.



■ 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주변이 개방되고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찾기 쉽게 하며, 주·야간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남녀 사용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출입구 위치나 방향을 분리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출입문 상단에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지붕(차양을) 설치하여 일반인 및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 공중화장실 접근로는 1.5m 이상 폭을 확보한다(최소 1.2m).
- 천창이나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용하기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한다.
- 화장실 내부 바닥 표면은 마찰력이 있는 재질이나 요철이 있는 소재가 결합된 바닥재를 사용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조성한다.
- 화장실 출입문 하단은 사용자가 쓰러지는 등 위급사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이격된 공간이 있게 계획한다.
 - 외부에서 사용자의 노출 정도는 프라이버시를 감안해 적정 규모로 한다.
- 화장실 출입문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에 문밖의 파손 없이 들어 뚫수 있는 경첩구조로 한다.
- 야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출입구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출입문 손잡이가 사용자가 직접 개폐하는 레버식인 경우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게 바닥 면에서 1m 높이에 설치하며, 손잡이에는 사용상태 표시장치를 부착하되 색상 및 문자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화장실 칸막이(부스) 내부에는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옷을 걸 수 있는 걸개 등을 설치한다.
 - 도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며, 사용을 마친 후 개인 물품을 놓고 가지 않도록 출입문 등 잘 볼 수 있는 전면에 설치한다.
- 별도의 장애인(다목적)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화장실 부스 중 1곳은 여유 있는 규모(1.4m × 1.8m 이상)로 설치하며 내부에 안전 손잡이(가이드 바)를 부착하여 편의를 증진한다.
- 어린이 이용이 많은 장소나 행사장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는 비상벨(비상호출 장치)을 설치한다.
 - 비상벨은 화장실 입구 및 부스 내부에 설치하며 작동법이 적힌 안내판을 비상벨 옆에 설치한다.
 - 경광등은 작동상태가 외부에서 잘 보이고 신고 등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는 기능을 갖춘다.

- 장애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단차가 있는 곳에는 적합한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권장한다.
- 접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 장애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에는 부스 내부에 소형 세면대를 설치하여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이용자가 바닥에 쓰러지거나 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버튼 또는 줄 형태의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라. 샤워부스
 - 샤워부스는 하절기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해수욕객이 간편하게 이용하는 시설물로 한정하며 이용 특성에 따라 별도의 탈의실을 갖추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 샤워부스는 이용수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통행 및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접근로의 유효 폭을 1.5m 이상 확보한다.
 - 샤워부스의 출입문은 인적이 붐비는 곳이나 통행로와 직접 맞닿지 않는 방향에 설치하며 외부 출입문을 열었을 때 직접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 내부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별도의 전실 공간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문 외부에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차양이나 가림막을 설치한다.
 - 샤워부스 내부는 이용에 필요한 적정 공간 외에 휠체어가 통행하고 회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쾌청한 주간 사용을 염두에 두며 천창 등 자연 채광을 충분히 활용한다.
 - 출입문은 가벼운 재질과 구조로 하여 여닫음을 쉽게 하되, 물기 및 바닷물로 인한 부식을 막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출입통로에서 출입문, 내부에 이르는 바닥은 평탄함을 유지하며 물기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요철 구조로 마감한다.
 - 바닥의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별도의 미끄럼방지 패드를 깐다.
 - 배수 및 환기가 원활한 구조로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샤워기 헤드의 설치 높이는 신체 조건이 다양한 이용자 특성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형이나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에 각각 설치한다.
 - 물 조절 레버(수전)는 샤워 도중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샤워기(헤드) 높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높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를 조정한다.
 - 샤워부스 입구 및 내부에는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는 비상벨(비상호출 장치)을 설치하고 작동법이 적힌 안내판을 비상벨 옆에 설치한다.
 - 물 조절 레버 높이의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가이드 바)를 설치하여 편의와 안전을 확보한다.

표기지침

■ 가. 표기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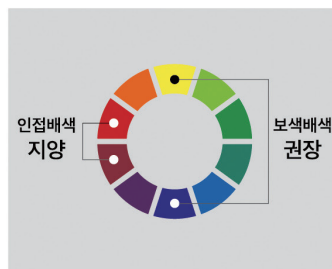
- 주요 건물 및 기관 등의 명칭이 표시된 안내표지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서체 및 색상으로 디자인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통행이나 반려견 동반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입구에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 공원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에는 공원 내 분기점, 주차장, 화장실 등 주요 지점의 위치를 표시한다.
- 안내표지는 단순 명료하게 구성하며, 표기해야 할 정보량이 많은 경우 주요 정보 표기와 상세 정보표기 부분을 구분하고 픽토그램을 활용한다.
 - 서체의 크기나 색상 등으로 정보 표기를 구분한다.
- 안내표지의 정보를 다양한 대상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준 픽토그램, 명료한 서체 및 크기를 적용하고 저시력자를 위한 색상을 적용한다.
-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는 한글과 영문 병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장소의 방문 외국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어를 첨가한다.
 - 많은 종류의 외국어 표기는 명칭표기 외에 지양하며, 중국어나 일본어 표기 시 의미표기보다는 발음표기가 되도록 한다.
- 외국어 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표기의 외국어 표기 사항을 참조한다.
- 이동거리가 긴 목적지를 표시하는 경우 이동 동선과 거리를 함께 표시하여 이용자가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한다.
- 주의, 경고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 명료하게 표기하고 해당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그밖에 안내표지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은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공공시각매체편」을 참조한다.

정보표시

가. 문자

-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한다.
 - 제목 등 주요 표기 내용은 태안군 지정서체인 산돌 고딕체 및 산돌 명조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자 크기는 이용자 유형 및 가독거리, 정보량, 다른 정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다.
- 시간이나 금액 등 숫자로 표시되는 정보는 노인을 비롯한 약시력자가 잘못 읽지 않도록 명료한 서체와 색상, 크기를 적용한다.
- 문자의 자간은 문자 크기나 문자수에 관계없이 한 면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기한다.
- 문자의 장평은 허용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110~75%).
- 문자색은 배경색과 대비차가 큰 색상으로 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한다.
 - 대비는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를 한 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명도대비 효과를 우선으로 한다.

●색상대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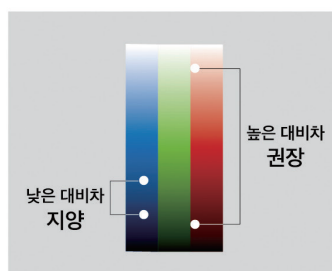
식별이 쉬운 색상 배색



식별이 어려운 색상 배색



●명도대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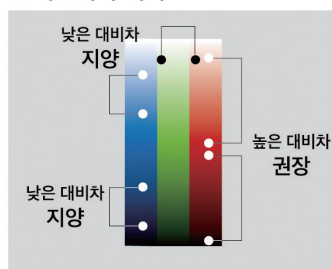
식별이 쉬운 명도 배색



식별이 어려운 명도 배색



●채도대비 예시



식별이 쉬운 채도 배색



식별이 어려운 채도 배색



■ 나. 색채

- 색각이상(色覺異常)인 색맹(色盲), 또는 색약(色弱)자의 정보 인식을 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는 색채의 배색이 필요하다.
- 색각이상 유형은 주로 적색약, 초록색약이며, 특히 대비 효과가 강할 경우 황토색, 황색 등이 적색에 인접해 있을 때 보색인 초록색계로 보이거나, 초록색계에 인접해 있을 때도 보색인 적색계로 인지되는 현상을 보인다.
- 명도대비는 색각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방법이며 3색 이상을 사용할 때에도 명도 위주의 색상으로 구분하여 배색한다.



정상



제1색약



제2색약



제3색약

- 1색약: 적색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녹색 수용체에 가까운 파장에 반응하여 적색-녹색의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
- 2색약: 녹색 수용체가 반응하는 파장의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서 적색-녹색의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
- 3색약: 청색(황청) 수용체가 반응하는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서 청색-황색의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
- 지양하는 색채 및 색 조합
 - 청색+녹색, 적색+녹색, 황녹색+황적색, 황색+황녹색+밝은 녹색, 적색과 녹색의 중간색, 적색과 청색의 중간색, 적색과 자주색의 중간색
- 권장하는 색채 및 색 조합
 - 황색계열(주황-노랑-연두)+청색계열(청록-파랑-보라), 청색이 가미된 강한녹색, 적색+녹색 대비를 제외한 대비 색채 조합

■ 다. 외국어 표기

- 안내표지에 표기하는 외국어는 한글과 영문 병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장소의 방문 외국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어를 첨가한다.
 - 외국어는 영문 외에 첨가되는 중국어나 일본어이며 가능한 첨가를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한다.
- 표기 외국어는 주요 지점을 제외하고 의미의 번역보다는 발음을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외국어를 표기하는 경우 문자수를 최소화하고 긴 단어는 약칭을 사용한다.
- 외국어 배열을 한글이 상단, 영문은 하단에 위치하며, 좌우 배열 시 한글은 왼쪽, 영문은 오른쪽에 표기한다.
 - 다른 외국어가 첨가 될 때는 한글→영문→중문(간체)→일문 순서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 라. 픽토그램

- 픽토그램은 언어나 연령, 문자의 이해능력과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문자로 태안군은 어느 지역보다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 픽토그램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경쟁적 개발로 사용자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외국 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국제기준(ISO 9186)을 수용하거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한 300종의 공공시설 안내표지와 안전표지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다.
 - 안내표지 209종(공공시설 84종, 교통시설 29종, 상업시설 21종, 관광·문화시설 33종, 스포츠시설 42종)과 안전표지 91종(안전유도 5종, 화재안전·긴급 5종, 금지 39종, 경고·주의 27종, 지시 15종)으로 구성된다.
- 픽토그램 색상은 안전표지 외에 안내표지는 태안군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2.4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I 공공공간_도로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보행로	다양한 이용 행태 및 통행량에 따라 적절한 폭이 확보되었는가?	
	최소 유효 폭 1.2m가 확보되지 않고 시설물 설치나 식재한 경우, 안전구역이 확보되었는가?	
	1.5m 미만의 보행구역이 계속될 경우, 횡차로 교행구역이 확보되었는가?	
	지하보도나 육교 설치로 인해 보행거리가 늘지 않았는가?	
	보행로 및 횡단보도가 단차가 없고 경사가 최소화 되었는가?	
	보행로와 건축물 등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단차 없이 원활하게 이어지는가?	
	보행로 표면은 투수성 및 마찰계수를 갖추었는가?	
보차도 분리공간	보·차도가 분리부분이 구분이 되었는가(연석, 안전펜스, 식재대 및 바닥재 색채 및 재질)?	
	보행로와 차도의 높이차를 두거나 교차하는 경우 보행로가 높게 조성되었는가?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횡단보도의 높이가 보도면과 같으며 경사가 있는 경우 완만하게 처리되었는가?	
	보행로가 종단, 횡단으로 복합 경사가 생기지 않게 조성되었는가?	
	진행 방향 횡단기울기는 1/30 이하로 조성되었는가?	
	건물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건물 출입구 바닥과 수평 및 높이가 유지되고 단차가 생길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경사가 진 보행로 경로에는 기준에 맞게 1.5m×1.5m 크기의 수평 휴식침이 설치되었는가?	
	경사가 이어지는 구간 중간에 평탄한 구간을 조성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였는가?	
	포장재 연결부(이음매 틈)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시공되었는가?	
	보행로 포장재가 맨홀덮개나 배수구 덮개와 같은 시설물과 연속성 있게 설치되었는가?	
	배수구 틈새 간격을 여유 있게 설치되었고 주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보·차도 혼용지역 내 보행로 포장 재료는 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는가?	
	안전구역 내에 배수구가 설치되었는가?	
	보행로 포장재 색상 및 재질이 야간에 잘 보이게 시공되었는가?	
	시각장애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두운 색의 보도패턴, 혼잡한 패턴, 점자블록과 유사한 색이나 재료를 피하여 사용하였는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적합한 유형의 점자블록을 설치되었는가?	
	점자블록은 정해진 설치 방법에 따라 일직선을 이루어 설치 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차량 진출입부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교차되는 차량 진·출입부에 보행 진행방향으로 평탄한 형태의 안전구역이 설치되었는가?	
	진·출입부의 바닥 마감재는 주변과 색상이나 질감이 다르게 시공되었는가?	
	차량 진출입부에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 보행로의 최소 유효 폭인 1.5m가 유지되었는가?	
	보행로 면은 평탄하게 조성되었고 차도와 경계부는 턱 낮추기가 되었는가?	
	보·차도 경계의 단차가 5cm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도 1/8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도로	보행로나 차로에 인접한 경우 포장면 등이 안전하게 구분되었는가?	
	주변 시설물이 운행이나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도중에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설치되었는가?	
	지하보도나 육교 등 계단 구간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수 있게 별도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도로의 규격에 맞추어 안전한 구조와 재질로 설치되었는가?	
	야간에 이용되는 쉼터, 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통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도로의 포장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색상이 적용되었고 쉼터 등의 포장 색상 및 재질, 패턴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기 쉽게 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가 보행로 상에 설치되는 경우 충분한 유효 폭이 확보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에는 위치 및 이용 안내표지가 설치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장애인 및 노인·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었는가?	
	노면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재료로 도색되었는가?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연결되는 보행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질인가?	
	횡단보도 진입부는 수직단차가 제거 되었는가?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행로는 1.2m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횡단보도 폭과 동일한 보행자 대기공간이 설치되었는가?	
	보행로와 횡단보도 경계 및 횡단보도 위에는 배수구나 맨홀이 없게 설계되었는가?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 설치하는 펜스는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적은 유형이 설치되었는가?	
고원식 교차로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면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인 경우 고원식 교차로가 설치되었는가?	
	고원식 교차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횡단보도 부분의 경사는 턱이 없이 완만하게 조성되었는가?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게 측구(gutter) 등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가?	
	고원식 교차로 면 전체는 주변도로와 구분이 되도록 도색 등이 차별되는가?	
보행섬 횡단보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면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인 경우 설치되었는가?	
	보행섬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었는가?	
	보행섬과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단차가 생기지 않게 설계 되었는가?	
	보행섬 포장재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나 보행로와 다른 재료로 포장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보행자 우선도로	횡단보도나 차도의 교차지점은 보행 연속성이 유지되는 구조인가?	
	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가 1/50 이하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용이한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바퀴가 있는 휠체어, 유모차, 여행용 가방 등을 위한 별도의 경로가 조성되었는가?	
	보도블록간의 틈새가 0.5cm 이하가 되도록 정교하게 마감되었는가?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가 보행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이나 바닥 표기가 되었는가?	
	노면 포장은 보도블록 등 보행로 포장재를 사용하여 차량보다 보행이 우선임이 표시되었는가?	
	도로나 건물에 접한 경계에 녹지대가 설치되었는가?	
	주변 공원이나 주요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연속성 있는 보행공간이 되도록 조성되었는가?	
	도로 표면에 거친 질감의 재료를 적용하거나 요철을 주어 진입 차량의 감속이 이루어지는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에는 별도로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보행자 대기공간 등 적절한 지점에 보행자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늘막이 설치되었는가?	
	보행로 경로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에 있는 곳을 제거했거나 안전하게 덮개가 설치되었는가?	
	덮개 설치 시 격자나 틈새가 생기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우수 처리시설은 차로 쪽이나 녹지대 쪽으로 설치되었는가?	

| 공공공간_공원 및 광장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진입공간	연결 보행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조성되었는가?	
	진입공간에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고, 부득이한 경우 1cm 이하로 경사지게 조성되었는가?	
	보행로가 차도에 맞닿아 있거나 교차하는 경우, 공간 영역이 구분되도록 조성되었는가?	
	바닥 포장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었는가?	
	바닥 포장재의 이음새가 정교하게 마감 처리되었는가?	
	공원 및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별도의 안내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조성되었는가?	
	공원 및 광장 출입구는 보행자·자전거·차량 경로가 구분되었는가?	
	주출입구는 시야가 트여 개방감을 줄 수 있게 조성되었는가?	
	공원 주출입구는 공원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정해진 유효 폭으로 조성되었는가? (출입구 2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블라드가 설치된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 1.5m 내외의 간격을 두었는가?	
	공원 주출입구 주변에 공원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었는가?	
	공중화장실은 공원 입구 부근 개방된 곳에 설치되었는가?	
	매표소나 관리사무소는 주 출입구 근처에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는가?	
	실외에 있는 매표소나 입장권 발매기에는 비·눈·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시설이 설치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원 내 보행로	공원 및 광장 내 보행 동선은 차량 동선과 명확하게 분리 설치되었는가?	
	주요 시설에 연결되는 보행로는 바닥재 색상이나 패턴 등이 연속성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산책로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된 곳이 있는가?	
	보행 경로에 급격한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으며, 부득이 설치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가 계단과 함께 설치되었는가?	
	경사로 및 계단 마감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 사용되었는가?	
	표지판 등으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안내되는가?	
	위험발생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위험안내표지가 부착되었는가?	
공원 내 휴게공간	공원 내 휴게 공간은 접근이 용이하며 평탄하면서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조성되었는가?	
	보행로 포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었으며 물웅덩이나 경사가 생기지 않도록 되었는가?	
	유모차 및 휠체어의 진입과 교행이 가능한 1.5m×1.5m 이상의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휴게 공간에는 퍼걸러, 벤치 및 그늘막이 설치되었는가?	
	휴게공간에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의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휴게공간 접근로는 1.5m 이상 폭이 확보되었는가?	
	휴게공간 접근로는 단차가 없으며, 부득이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공원 내 공간형 시설	휴게공간 주변에 수목이 식재된 경우, 수고 60cm 이하의 관목인가?	
	공간형 시설은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지점에 배치한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고 전면부 등에 머무를 수 있는 평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이용자가 대면하는 창구는 키 작은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선반이 설치되었는가?	
	공간형 시설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인터폰이나 비상벨이 설치되었는가?	

| 공공공간_주차장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배치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측에서 인지되어 진입이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조성되었는가?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진입부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주차장 위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 유도 표지가, 입구에는 안내표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출입구 또는 해당 건물 입구와 가깝게 배치되었는가?	
	주차구역(주차면)과 보행통로의 경계는 단차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완만하게 조성되었는가?	
	주차장에는 차량 통행경로와 구분된 보행로가 조성되었는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로 평탄하게 마감되었는가?	
	주차장 내 보행 통로는 단차 없이 평탄한 상태로 1.2m 이상 폭이 확보되었는가?	
	주차장 입구 및 모든 구간이 야간 이용에 안전하도록 적절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면은 규정에 맞는 크기로 설치되었는가?	
	주차장 출입구에는 주차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치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주차장 바닥에는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부터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시되었는가?	
식재	주차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경우 가까운 공용주차장 안내가 잘 되어있는가?	
	보행로 영역 및 횡단보도 전면, 교통표지 지주의 반경 5m 이내에는 시선을 가리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상태인가?	
	교차로 가각부에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되었는가?	

| 공공시설물_공통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구분	○	△	×	-
검토항목	반영여부			
공통사항	설치된 시설물이 이용 수요에 적합하고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시설물 설치로 인해 보행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계획되었는가?			
	시설물은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며 경사진 장소에서는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되었는가?			
	시설물이 설치된 영역은 보행자나 사용자가 영역의 차이를 알 수 있게 조성되었는가?			
	시설물 모서리는 각지지 않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시설물 적용색상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시설물 모서리 등에 부분적으로 밝은 색이 적용되었는가?			
	야간에 이용되는 시설물은 조명이 있는 곳에 설치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조명이 별도로 설치되었는가?			
	다른 차단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조성되었는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시설물은 어린이 눈높이 맞는 크기 및 높이로 설치되었는가?			
	보행안전구역 및 횡단보도 전면, 교통표지판 지주 설치 지점 반경 5m 이내, 교차로 가각부에는 시설물이 시야가 가리지 않게 조성되었는가?			

| 공공시설물_대중교통시설물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버스 택시 승강장	주 이용자인 보행자 및 보행로 여건을 고려했으며 이미 설치된 다른 승강장 및 주변내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되었는가?	
	보행로 폭이 좁은 장소에서의 승강장은 보행로 방향으로 입구가 향하고 있는가?	
	승강장의 입부 폭이 이용에 편한 규모로 조성되었는가?	
	전원이 공급되는 장소의 승강장에는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의 경우,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버스승강장 유형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유형인가?	
	승강장 안내표지 및 노선 안내도는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구성되었는가?	
	무장애버스가 정차하는 승강장의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시각장애인 동선이 조성되었는가?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담은 관리기호가 표시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는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는 다양한 사용자가 자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 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 위치가 보행 동선과 겹치지 않게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가 야간에 식별이 잘 되도록 부착물 등이 설치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 간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자전거 보관대는 잠금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었는가?	

| 공공시설물_편의시설물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기본지침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 빈도에 따라 적절한 유형으로 설치되었는가?				
	편의시설물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합한 규모와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편의시설물이 주변 조망을 가리거나 조경 및 녹지대 등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편의시설물이 설치된 장소가 야간에 어두울 경우, 적절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벤치	공원 내 벤치는 시야가 트인 장소에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수목이나 그늘을 조성하는 경우,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되었는가?				
	여러 사람이 앉는 벤치보다 일인용 벤치나 각기 앉음판이 간격을 두어 설치되었는가?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앉기 편한 높이로 설치되었는가?				

| 위생시설물_이동식 간이화장실, 샤워부스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기본지침	장애인 및 노인·어린이·영유아 동반자·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 행태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었는가?	
	사용 시 실수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설치되었는가?	
	위생시설물의 진입 및 이동 경로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단차가 없게 설치되었는가?	
	위생시설물이 주변과 차별되도록 벽체 색상이나 재질, 마감 방법 및 시설물 바닥이 조성되었는가?	
상세지침	출입구는 1.2m 이상, 출입문은 85cm 이상의 유효 폭이 확보되었는가?	
	진입 및 이동 경로, 출입문에 단차가 없게 조성되었는가?	
	출입문은 이용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가볍고 안전한 구조인가?	
	출입구 측면 1.5m 높이에 사용자 구분 및 구비된 설비 등 표지가 부착되었는가?	
	수도꼭지(수전)는 작동이 쉽고 힘이 적게드는 유형으로 설치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이동식 화장실	이용이 쉽고 안전하도록 주변이 개방되고 평탄한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남녀 사용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출입구 위치나 방향이 분리되었는가?	
	출입문 상단에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지붕(차양)이 설치되었는가?	
	접근로는 1.5m 이상 폭이 확보되었는가?	
	천창이나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한 구조인가?	
	화장실 내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되어있는가?	
	화장실 출입문 하단은 응급 상황 시 내부를 볼 수 있게 틈이 있는가?	
	진입로와 출입구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출입문 손잡이는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었는가?	
	화장실 칸막이(부스) 내부에는 안전하게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걸개 등이 설치되었는가?	
	어린이 이용이 많은 화장실은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가 설치되었는가?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는 비상벨(비상호출 장치)이 설치되었는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접근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인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적합한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었는가?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샤워 부스	이용수요가 있으며 통행 및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었는가?	
	접근로는 1.5m 이상의 유효 폭이 확보되었는가?	
	출입문은 통행로와 직접 맞닿지 않고 출입문을 열었을 때 직접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샤워부스 내부는 휠체어가 통행하고 회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천창이 설치되어 자연 채광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출입문은 여담음이 쉽고 물기 및 바닷물로 인한 부식에 강하게 계획되었는가?	
	출입통로에서 출입문, 내부에 이르는 바닥은 평탄하며 물기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배수 및 환기가 원활한 구조로 되어있는가?	
	샤워기 헤드의 설치 높이는 다양한 이용자 특성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가?	
	샤워부스 입구 및 내부에는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는 비상벨(비상호출 장치)이 설치되었는가?	
	벽면 적절한 높이에 안전 손잡이(가이드 바)가 설치되었는가?	

| 안내표지

적용 (70% 이상 적용시)	부분적용 (70% 미만 적용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검토항목	반영여부
설치지침	안내표지는 보행자나 차량 진행 방향과 마주하여 멈춰 서서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시설물이나 가로수에 가려지지 않게 적절한 크기와 높이로 이격하여 설치되었는가?	
	규모가 큰 장소에는 공간 내 주요 시설이 표시된 종합안내도 기능의 안내표지가 설치되었는가?	
	안내표지판이 야간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 조명이 설치되었는가?	
	유도표지는 빠른 시간에 정보를 인지하여 진행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디자인되었는가?	
	가로나 공원 등에 설치되는 유도표지는 하단부가 가리지 않는 구조로 되었는가?	
	안내표지는 조명 및 태양광이 반사되지 않는 형태인가?	
	보행로 등 외부에 설치되는 표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5m 이격되었는가?	
	벽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는 3m 이내의 근거리에서 잘 읽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는가?	
표기지침	주요 건물 및 기관 등의 명칭이 표시된 안내표지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서체 및 색상으로 디자인 되었는가?	
	통행이나 반려견 동반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입구에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나?	
	표기해야 할 정보량이 많은 경우 주요 정보 표기와 상세 정보표기 부분을 구분하여 디자인 되었는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픽토그램, 명료한 서체 및 크기로 디자인 되었는가?	
	저시력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이 적용되었는가?	
	이동거리가 긴 목적지를 표시하는 경우 이동 동선과 거리가 함께 표시되었는가?	
	주의, 경고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 명료하게 표기되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가?	

03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3.1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개요

3.2 표준디자인(안)

3.3 특화디자인

3.4 시설물 보완

3.1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활용 개요

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전개방향

－ 전반적인 문제점 및 진단

지방 소도시의 일반적 특징

유형화된 블록이나 랜드마크, 가로 구간 형성이 어려워 연속성 및 규모화에 한계,
배경이 되는 건축물의 노후,
다양한 교통수단 및 시각매체가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 정체성 형성이 어려움

가로공간의 협소

공간의 협소로 시설물 설치 및 식재가 어려워 오히려 편의를 저해
보행권 미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좁고 과밀한 공간을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행

도시계획의 이행 미흡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이 모호하며, 건축 후퇴선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현상이 만연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개발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참여

－ 태안군의 문제점 및 진단

사용자의 다변화 및 규모의 한계

단순한 도시 지역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을 넘어 해안관광지역(국립해안공원)등으로 공간 특성
화가 필요하나 대상의 세분화로 대상지의 규모가 작아져 새로운 유형 및 모델 개발에 한계를 보임

인구의 고령화

태안군은 정주인구 중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임

상위 계획 및 별도 지침이 혼재

상위 지자체인 충청남도가 설정한 도 전체, 권역별 디자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부분 및 대상에 따라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I 디자인 개발 방향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은 충청남도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며 도시지역을 비롯한 해안관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형태별, 구조별, 재질 및 색채, 시공성별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디자인 요소	방향
형태 shape	-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되며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동일한 공간(가로 블록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통합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야 함 - 가로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개별 형태를 넘어 집합 형태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
구조 structure	- 안전성을 우선시하여 견고하고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일체형 부품이나 구조보다는 분리가 가능한 부품의 결합 구조로 하여 설치되는 공간여건의 다양성에 원활한 대응이 요구됨 - 제작 수량의 한계로 별도의 몰드가 필요한 구조보다는 기성 관재나 판재 등을 활용하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함
재료 material	- 해안기후의 특성에 대응하는 구조와 견고한 재료 적용(원형, 기둥)이 우선되어야 함 - 좁은 공간과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인체 친화적인 재료를 적용해야 함 - 구조를 이루는 재료와 표면에 덧대는 재료의 결합성을 고려되어야 함 - 설치 후 세척 등 유지관리에 효율적이고 불법 부착물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재료를 갖추어야 함
색상 color	- 도색이 필요한 부품 및 부분에는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색상을 근거로 한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 색상을 적용하는게 원칙임 -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표준색상과 강조색을 결합하여 인지성을 높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 - 인공색상 외에도 석재나 목재의 재료 본연의 색이 적극 활용되어야 함 - 설치 후에 재도색이 용이하도록 제작사별 도료를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시공/유지 construction/ maintenance	- 시설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재질이나 블록 등 구조체를 파악하여 장소와 일체감을 이루도록 함 - 협소하고 평탄하지 않는 설치 공간에서 설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합부 등의 형태 고려가 요구됨 -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 단순·경량 구조의 채택이 필요함 - 설치 이후 원활한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해 분해·해체가 용이하며 대체품 공급이 원활한 구조의 채택이 원칙임

| 디자인 연계성

- 태안군 공공시설물은 태안군만의 고유한 형태를 갖춘 디자인 외에 국가단위에서 범용되는 시설물 범주, 충청남도에서 범용되는 범주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
 - 그 중 충청남도와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 설정한 공공시설물 기본 방향을 따르며 세부적으로는 형태, 재질, 색채, 표기 내용 및 방식이 서로 연관성을 갖추고 있다.
- 기본방향
-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보여주는 기본 방향은 크게, ‘조화로운 디자인’, ‘보행자 통합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유지관리 디자인’, ‘문화관광 디자인’, ‘그린 에코 디자인’이며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태안군과의 적용성은 아래 표 17과 같다.

기본 방향	추구 내용	태안군 적용
조화로운 디자인	기능 중심의 간결, 조화되는	알기 쉽고 사용이 쉬운
보행자 통합디자인	컴팩트, 통합으로 보행권 확보	공간이 좁은 태안군 적합
배려하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추구	고령층을 위한 방향 일치
안전한 디자인	조명을 통한 범죄예방	농어촌 지역 조명확대
유지관리 디자인	내구성, 세척이 용이한 재료	유지 관리가 이슈화
문화관광 디자인	지역 상징성 요소 활용	고품격 해양레저도시 지향
그린 에코 디자인	자원과 에너지 절감	화력발전 지역으로 신재생 에너지 추구

[표-17] 표준디자인 기본방향

- 형태 및 재료
 - 충남도에서 규정하는 형태의 핵심은 구조물의 연결부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좁은 가로 환경을 가진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질 또한 견고하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갖는다.
- 색채
 - 태안군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채는 충청남도 표준 색채 중 공공시설물 및 사인물에 적용되는 색채 규정과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표준 색채 중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이 기준이 된다.
 - 충청남도 표준 색채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를 근간으로 하는 먼셀 체계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재료색은 각 지자체의 고유색을 사용하도록 일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로고 및 패턴은 백색인 N9, N10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의 표준 색상 체계는 흑색량과 순색량의 비율로 표시되는 NCS 색상 체계를 사용하며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상은 지정색이 아닌 넓은 영역 안에서 기초색과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 태안군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채는 주거 권역 뿐 아니라 광활하게 펼쳐진 해안 관광지역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좁은 도시권역 가로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인지성이 떨어지는 무채색 계열의 색상 외에 보조색을 활용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태안군 공공디자인 표준 색상은 기초색으로 '백색', '열은 회색', '회색', '갈회색', '모래색', '바다색'으로 정하였으며 강조색은 무채색을 벗어난 '황색', '청색', '녹색', '갈색'으로 지정하였다.

바탕색			
1) S0300-N(백색)		2) S2000-N(열은 회색)	
3) S6005-Y50R(갈회색)		4) S1010-Y(모래색)	
표기색			
1) S0300-N(백색)		2) S6000-N(회색)	
3) S9500-N(검정색)		4) S6005-Y50R(갈회색)	
상징색			
1) 1070 Y80R 동백적색		2) 2060 R80B 안면청색	

| 제작방식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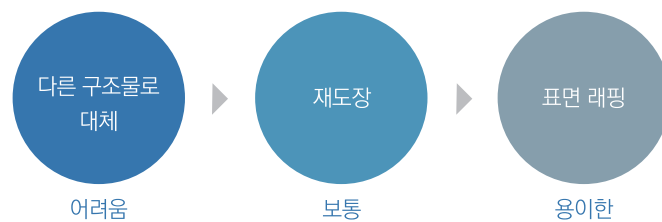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규모가 큰 지자체에 비해 설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몰드가 요구되는 태안군만의 전용형태 개발에는 제약이 있어 비용의 효율성 면에서의 제작·가공 가능성을 고려한다.
- 새로운 공공시설물 개발은 시설물을 구성하는 구조체(부품)의 가공 용이성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재료 및 가공 방식에 따라 형상 표현의 정도 및 품질의 우위가 판가름 된다.
- 가공 방법으로는 금형(mold)에 의한 새로운 형태, 기성화 된 기존 부품의 적절한 활용, 규격화된 판재(원형, 각재)의 활용, 판재의 재단 및 절곡 등의 가공 방법이 결합되며 각각의 비중에 따라 구조체의 완성도 및 품질이 달라진다.

주요부품 금형주조 casting/ die casting	- 금형에 의한 주조법을 말하는데 주조 및 다이캐스팅까지 포함되며 동일하고 정교한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식, 금속 외에도 플라스틱의 사출 성형도 포함	제품의 균일 및 품질 대량 생산 체계 생산성
보조부품 금형주조	- 금형에 의해 제작되는 부품으로 주요부가 아닌 연결재 등에 장착되며 개별적인 형태 보다는 규격화 된 보편성을 보인다. - 소요량이 적을 경우 요구되는 색상을 적용하기 어렵다.	연결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 생산성 별도 도장 필요
기성판재 (원, 각)	- 기둥 등 구조체에 주로 활용되며 규격화된 압출 성형 방식의 원형, 각형의 판재로 절단, 연결하여 사용한다. - 금형주조에 비해 적은 수량이라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요구되는 강도에 따른 재료의 선택 폭이 가능
판재 (원, 각)	- 판재(sheet) 형태의 철재, 금속재, 목재, 유리, 수지 등이 있으며 일정한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필요하나 적은 수량의 경우 재단, 절곡, 용접 공정이 요구된다. - 비교적 적은 수량이라도 제작이 가능하다.	적은 수량이라도 요구되는 형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표-18] 제작 방식 별 난이도 및 특성

I 기존 시설물의 변형

- 기존 시설물의 변형 (reform, redesign)은 시설물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결합 방식에 따라 난이도가 구분된다.
- 다른 구조물로 대체 : 개별 형태의 구조물(몰드 형태)을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데 반해 규격화된 부품은 수월하며, 이 경우 해당 부품의 물성(재질, 강도, 표면 도장 도료 및 방식)이 면밀하게 검토된 후 적용되어야 한다.
- 재도장 : 새롭게 도장하는 과정은 해당 구조체의 결합방식에 따라 공정이 달라지는데 볼트 등을 통한 결합 방식인 경우 해체가 가능하여 섬세한 재 도장이 가능하나 용접 방식인 경우 해체가 어려워 도색 공정이 까다롭고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 재도장의 결과물은 정확한 지정 도료의 사용, 도장 방식, 다중 도막인 경우 이행 등이 따라야 하는데 재도장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공정이 이행되기 어렵다.
-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품의 제작 방식은 완성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 표면 래핑 : 기존의 시설물 위에 새로운 색상을 적용하거나, 표기 문구의 수정, 지자체 상징물 첨부 등의 목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필름형태의 도막을 덧씌우는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대상물의 표면 물성(광고지 부착 방지막)이 부착을 어렵게 하거나 부착지의 낮은 접착력으로 완벽한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물성 파악이 요구된다.



[그림-4] 변형 방식에 따른 난이도

| 표준디자인 선정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항목은 충청남도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을 범위로 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은 제외하고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은 항목에 추가하거나 확장 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
- 국가 또는 광역(충남도) 차원에서 표준 디자인이 마련되었거나 다루어져야 할 시설물, 태안군의 여건(가로 공간 및 농어촌 지역, 해양 관광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 설치 수량이 적어 신규 디자인 적용이 무의미한 경우, 시설물 범주에서 벗어난 구조체로서 장소에 부합되는 섬세한 설계가 우선되어 일률적인 디자인이 적합하지 않은 대상은 제외한다.
-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중 존속 기간이 많이 남아 신속한 시기에 교체가 어려운 시설물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 디자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특화사업시(특화가로)에는 별도의 특화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 표준디자인 적용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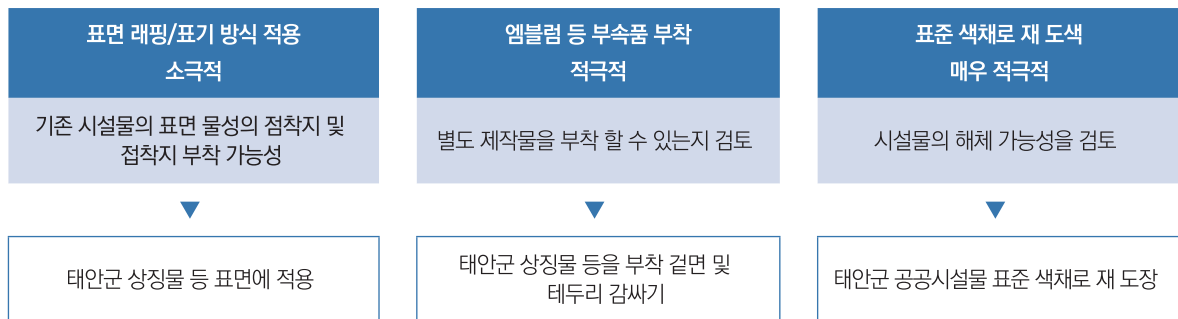
국가/광역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항목	태안군 여건에서 제외될 항목	설치 수량이 적거나 표준디자인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 도지정문화재(충남도) 공사장가림막(충남도) 관광지 안내사인(충남도) 전기자동차충전소, 점자블록, 소화전	철도 및 전철 관련 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음수대	방음벽, 육교, 지하차도/지하보도, 터널, 교량, 고가도로, 인포메이션 버스, 이동식 화장실, 맨홀덮개

태안군 적용	가이드라인에 제시, 표준디자인으로 개선 방향 구체화
--------	------------------------------

표준디자인(안) 제시	시설물 보완 제시	미적용
대중교통-버스승강장 도시기반-가로등 보행시설물-블라드 편의/휴게-벤치, 재활용거치대	대중교통-버스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보행시설물-안전펜스 편의/휴게- 흡연버스, 가로화분대 공급시설-지상기기 구호장비-구명장비보관함, 자동제세동기 안내시설-관광지사인, 방향사인, 게시판, 안내표지판	대중교통-택시승강장 보행시설물-점자블록 편의,휴게-쓰레기통, 퍼걸러 공급시설-맨홀덮개 가로녹지-가로수보호덮개 안내시설-해상구조타워 임시시설- 공사장가림막

I 개선 디자인 방안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항목에 포함된 시설물 중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내구 연한이 아직 오래 남아있어 즉각적인 교체가 어려운 경우 표준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개선 할 수 있다.
- 재 디자인은 시설물의 해체 여부 등 구조, 새로운 도색이 가능한 여건인지 등을 검토하여 재 디자인의 적용 정도를 다음과 같이 달리 할 수 있다.



I 기성 디자인의 연계방안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항목에서 제외된 시설물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적용하여 태안군 공공시설물이 추구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다른 시설물 과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 반드시 준용하여야 할 사항은 표준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태안군 엠블럼이 표시되어야 하는 대상은 시설물 제작 시점에 적용되게 한다.
- 이러한 제작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별도 제작한 상징물을 부착하게 하며 표기 내용의 색상 및 서체를 지정된 기준으로 적용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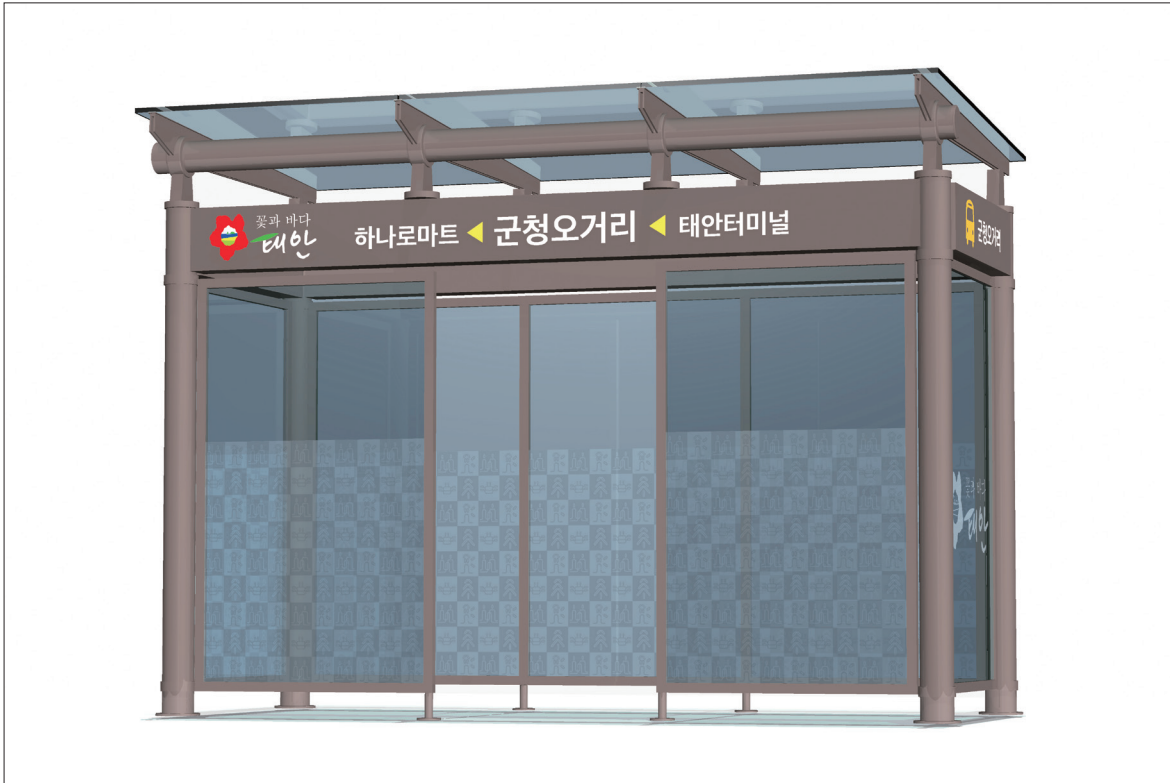
유형	시설물	표준	특화	보완	마적 용	방식/사유
도시기반	가로등	√	√			- 대표적인 시설물 혼합한 유형으로 표준 디자인 필요/기존 가로등 중 가능한 대상 리뉴얼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	√	√		- 노선 등 정보체계 적용/새 유형 적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시설물/접근 이격에 따른 벤치 적용
	택시승강장				√	- 수요 미흡/설치 시 가이드라인 적용
	자전거 보관대			√		- 다양한 기성제품 보유/안전 반사띠 부착
보행 시설물	보도블럭		√			- 다양한 기성제품 보유/패턴 지정 무의미
	점자블록				√	- 별도의 디자인 적용이 불필요
	보행 유도등				√	- 돌출형 지시/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 확대
	볼라드	√	√			- 다양한 기성제품 보유/설치 시 가이드라인 적용
	안전펜스				√	- 다양한 기성제품 보유/도로면 반사판 부착
편의/휴게	소형 세면대				√	- 기존 설치 미흡/신규 디자인 적용 가능
	재활용 거치대	√				- 기존 시설물의 파손에 따라 신규 디자인 적용
	벤치	√	√			- 접근 이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할 대상
	퍼걸러				√	- 설치 수량 미흡/다양한 기성품 보유
	그늘막				√	- 기성품에 상징물 및 명칭 표시
	흡연부스			√		- 기존 디자인이 범죄예방 원칙과 달라 리뉴얼
공급	맨홀덮개				√	- 수요 부족/별도 디자인 적용 현실적 불가
	지상기기			√		- 별도 디자인 불가/명칭 등 래핑 방식 표기
가로 녹지	가로수 보호덮개				√	- 주물방식으로 새로운 디자인 적용 한계
	가로화분대				√	- 다양한 형태가 요구, 표준 디자인 규정 어려움
안내 시설	게시판			√		- 태안군 CI 매뉴얼 디자인을 제작 가능하게 변경 디자인
	안내표지판			√		- 태안군 CI 매뉴얼 디자인을 제작 가능하게 변경 디자인
	현수막 게시대			√		- 새로운 디자인 적용 불필요/정보 표기 적용
	인포메이션 부스				√	- 별도 디자인 불가/표지판 등 정보 표기 적용
구호장비	구명장비 보관함			√		- 별도 디자인 불가/명칭 등 래핑 방식 표기
임시	이동식 화장실				√	- 다양한 기성품 보유/정보 안내 체계 적용
	공사장 가림막				√	- 도에서 정한 디자인 적용

3.2 표준디자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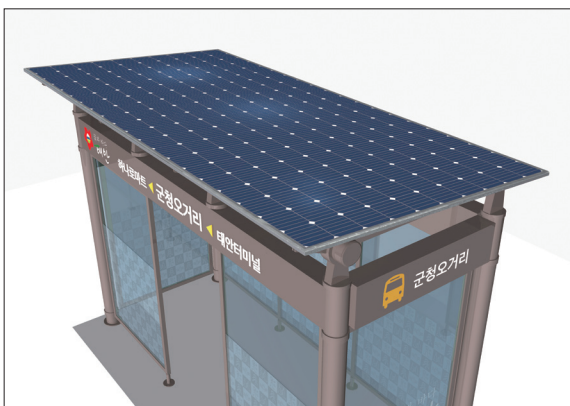
| 표준디자인

-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가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항목에 적용되는 규범적인 사양으로서 장소와 이용자의 적합성, 수시로 사양이 변화되지 않는 지속성과 보수와 소량 발주의 용이성 및 설치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항목을 확대한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방향	- 태안군의 기후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대응하여 견고성을 높이고 이용 시기 및 여건에 따라 개방구조와 닫힌 구조가 전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3,820 × D1,940 × H2,800mm - 주재료 : 철판(THK 1mm), 원형철관, 사각철관 규정색 불소수지 도장 - 부재료 : 저철분 강화유리(THK 5mm, 10mm), 폴리카보네이트 - 부착지 재료 : 색상별 시트지, 반투명 시트지(브랜드 표기용도) * 외관 규격은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설치 장소의 적합성, 이용 수요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작 자재의 범용 여부에 따라 폭 및 돌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이는 본래 규격을 준수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를 따른다(도시형 갈회색/해안형 모래색), 색가 표시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인근 정류장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표기규정	- 태안군 전용서체(.)를 활용하여 정류장 상단 바에 현재 정류장 명칭을 비롯하여 이전 정류장 및 다음 정류장 명칭을 차등되게 표기하고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의 측면부에는 버스승강장 픽토그램과 현재 정류장 명칭을 나란히 표기한다. - 문자의 색상은 백색과 황색(Y100%+M10%)이며 전면부 문자는 두께 5mm의 입체형을 이후 명칭 변경에 따른 교체가 용이하게 부착한다.
부속시설물	- 정류장 내부에 설치하는 벤치는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벤치를 적용한다. - 정류장 내부 천장부에는 조명을 설치한다.
파생 디자인	- 설치 장소에 따라 색채로 도시형과 해안관광지형으로 구분되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장소의 태양광 지붕 유형을 비롯하여 설치 장소의 공간 및 이용 수용에 따라 폭 및 돌출 규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관리번호	- 해당 버스정류장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전면부 상단 바에 정류장 명칭과 차등되게 표시한다.
연계 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택시승강장, 벤치, 그늘쉼터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시야를 가리는 각종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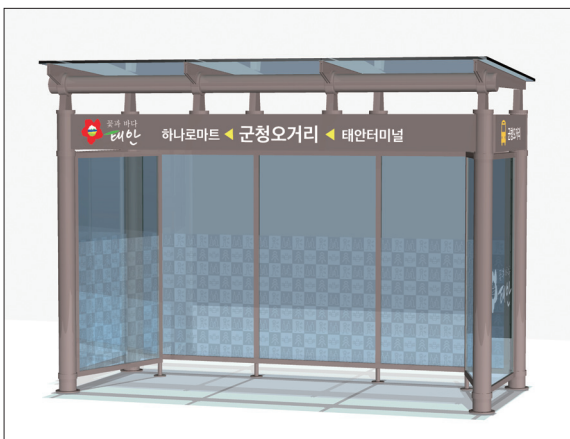
▲ 도시형



▲ 태양광 적용시



▲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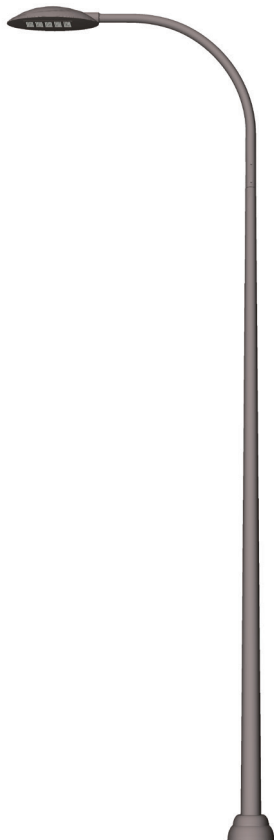
▲ 문을 열었을 때



▲ 해안관광지형

가로등

디자인 방향	- 태안군 표준 가로등은 기능성 위주로 좁은 설치 공간과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원형관재를 주재료로 하여 설치 공간의 최소화 및 보행 안전성 확보, 강풍에 의한 영향력 최소화. 빗물고임 등으로 인한 부식을 최소화하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전체 규격 : W468 × D2,750 × H8,500mm / 등주 규격 : W200 × D1,600 × H8,350mm(등주 및 브래킷) - 주재료 : 등주 원형철관(Ø200~120mm), 브래킷 원형철관(Ø100~100mm), 보호 커버 : 폴리프로필렌 - 등기구 : 기성 사양(LED 등)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를 따른다(도시형 및 해안관광지형).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의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부속 시설물	- 등주에 부착하는 배너 및 국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최초 가로등 발주시에 일관된 사양으로 하며 이후 설치 시에는 해당 등주의 색채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 농어촌 지역 경작지나 어장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범위가 정해지는 컷오프 방식의 조명을 적용하거나 빛을 차단하는 후드를 부착한다.
파생디자인	- 설치 장소에 따라 색채로 도시형과 해안관광지형으로 구분되며, 차로의 중앙에 설치하거나 풍부한 광량이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두 개의 브래킷과 등기구가 양측에 설치된 쌍등형을 적용한다.
관리번호	- 해당 가로등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높이)에 표찰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보행등, 보안등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대 - 가로수 등 식재 등 이격한다.



▲ 도시형



▲ 해안관광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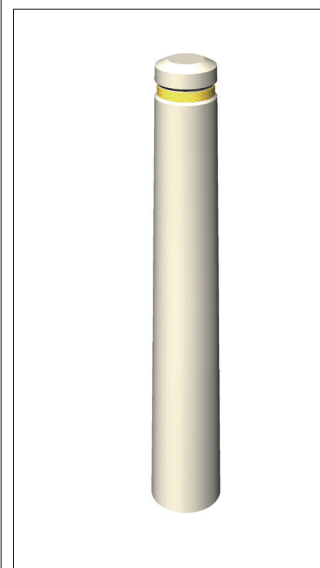


블라드

디자인 방향	- 태안군 표준 블라드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어 좁고 불안정한 설치 공간과 보행 환경에 적합하게 테퍼형 원형 형태와 연질 소재로 기초원통을 덮어 설치 공간의 최소화 및 보행 안전성 확보, 손상의 최소화 및 부분 교체가 용이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규격 : $\varnothing 187 \times H1,200\text{mm}$(하단 $\varnothing 187$~상단 $\varnothing 134\text{mm}$/테퍼형) - 내부 철관 규격 : $\varnothing 120 \times H1,100\text{mm}$ - 주재료 : 외피는 연질의 폴리프로필렌 또는 탄성 있는 우레탄, 내부는 원형 철관 - 반사지 : 황색의 기성 사양 * 외피재 및 반사지는 분리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 블라드 표준형은 차량의 충격력을 지탱할 수 있는 고정식(지중 매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설치나 이후 시설물 및 도로 정비계획이 준비된 장소에서는 이동식을 설치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를 따른다(도시형 및 해안형), 색가 표시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의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파생디자인	- 설치 장소에 따라 색채로 도시형과 해안관광지형으로 구분한다.
연계시설물	- 기능이 대체되는 시설물 : 안전헬스, 가로화분 - 연계되는 시설물 : 자전거 보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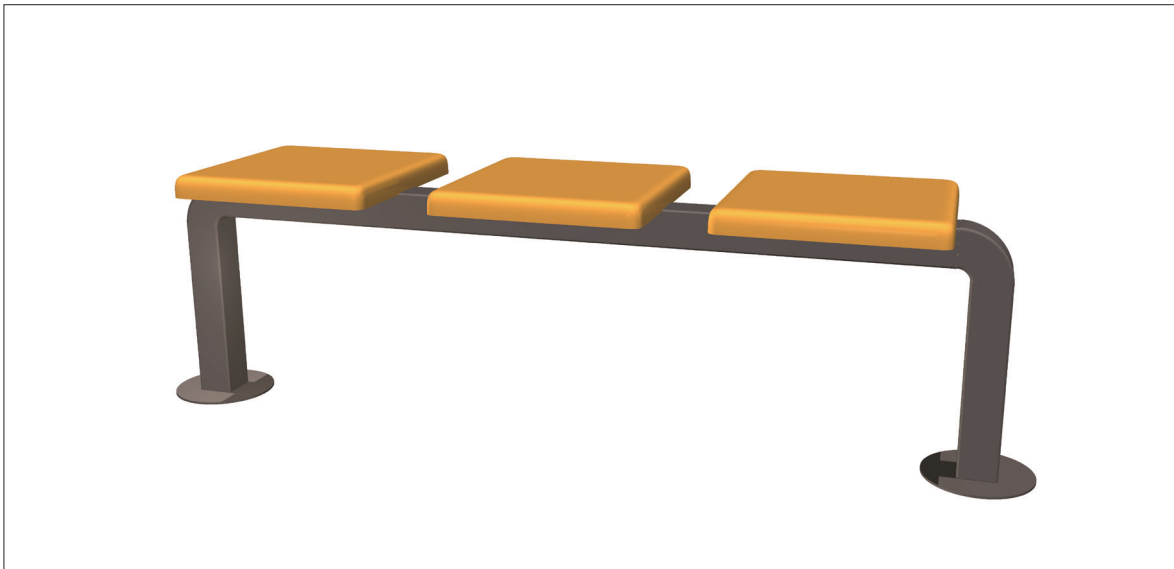


▲ 도시형



▲ 해안관광지형

벤치	
디자인 방향	- 태안군의 기후환경과 타인의 접촉을 기피하는 이용자 요구 및 시대 경향에 대응하여 기반부의 견고성을 높이고 앉음판을 분리 이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1,700 × D380 × H500mm - 기단 규격 : W1,250 × D100 × H450mm - 앉음판 규격 : W380 × D380 × H50mm - 주재료 : 철판(사각철판), 폴리프로필렌, 방부목 * 외관 규격은 설치 장소의 적합성, 이용 수요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작 자재의 범용 여부에 따라 폭 및 돌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이는 본래 규격을 준수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 중 도시형 갈회색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인근 벤치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파생디자인	- 설치 장소에 따라 앉음판을 목재로 제작할 수 있다. - 버스승강장등 내부에 설치되는 벤치 중 수요가 있는 경우 앉음판에 온열기능을 장착한다.
관리번호	- 해당 벤치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기단 측면에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택시승강장, 퍼걸러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 일반형



▲ 목재형

재활용거치대

디자인 방향	- 재활용거치대는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1차 분리수거하여 투입하는 보관함 기능의 시설물로서 태안군 표준디자인은 태안군의 기후 여건, 거치대에 접근을 고려하는 이용자 특성 및 제작의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분리쓰레기를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종이류, 캔류로 단순화하며 내부의 적치 상태가 보이며 폐달을 이용해 투입구를 개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뚜껑부분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는 색상을 활용하였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2,570 × D500 × H370mm - 용기 규격 : W2,400 × D600 × H1,000mm(폐달 및 뚜껑 제외) - 뚜껑 규격 : W500 × D500 × H150mm - 주재료 : 철판(THK 1mm) - 부재료 : 기성 뚜껑, 기성 폐달 - 부착지 재료 : 색상별 시트지 * 설치 장소의 적합성, 쓰레기 배출량 등 수요에 따라 폭 및 돌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이는 본래 규격을 준수하며 기성제인 뚜껑과 폐달은 공통으로 사용되게 설계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 중 도시형 갈회색을 공통으로 적용한다(색가 표시). - 뚜껑은 기성품을 사용하되 태안군 표준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선택한다.
표기규정	- 태안군 전용서체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거치대 전면에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분리 유형을 표기하고 전면 좌측 상단에 태안군 브랜드를 표기한다. - 문자의 색상은 백색과 황색(Y100%+M10%), 브랜드는 지정색이며 컬러시트지로 부착한다.
관리번호	- 해당 거치대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후면부에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버스정류장, 벤치, 퍼걸러, 그늘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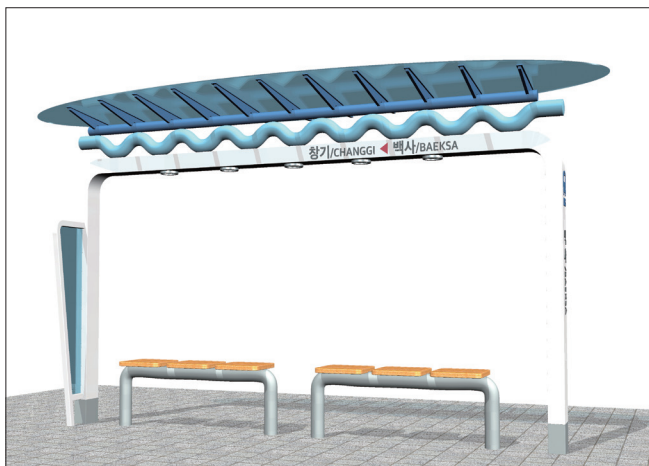
3.3 특화디자인

특화디자인

- 태안군 공공시설물 특화디자인은 통일성과 보편성을 갖는 표준디자인과 달리 지역 및 장소의 특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적용하는 디자인이다. 이용의 편의성 보다는 조형성에 치중하며 대량 생산 및 제작 비용의 합리성에 비해 장소 특화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이다.

버스승강장 1

디자인 방향	- 고품격 해양휴양도시 태안을 상징하기 위해 파도 형상과 서핑보드 형태의 지붕을 적용하였으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5,600 × D620 × H2,600mm - 프레임 규격 : W4,300 × D150 × H2,600mm - 지붕 규격 : W5,600 × D620 × H10mm 서핑보드 형태의 타원유리 - 주재료 : 원형철관, 사각철관, 철판에 규정색 불소수지 도장 부재료 : 저철분 강화유리(THK 5mm, 10mm) * 외관 규격은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설치 장소의 적합성, 이용 수요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작 자재의 범용 여부에 따라 폭 및 돌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이는 본래 규격을 준수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와 별도로 백색, 연청색, 군청색, 회색을 적용한다. 연청색(C35%), 군청색(C100%+M40%), 회색(B25%)에 해당하는 색채를 적용한다.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인근 정류장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표기규정	- 태안군 전용서체를 활용하여 정류장 상단 바에 현재 정류장 명칭과 다음 정류장 명칭을 차등되게 표기하고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의 측면부에는 버스승강장 픽토그램과 현재 정류장 명칭을 세로쓰기로 표기한다. - 문자의 색상은 진한회색(B80%)과 군청색이며 전면부 문자는 두께 5mm의 입체형을 이후 명칭 변경에 따른 교체가 용이하게 부착한다.
부속시설물	- 정류장 내부에 설치하는 벤치는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벤치를 기반부를 원형 관재로 교체한 형태를 적용한다.
관리번호	- 해당 버스정류장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전면부 상단바에 정류장 명칭과 차등되게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택시승강장, 벤치, 그늘쉼터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시야를 가리는 각종 표지판



▲ 정면



▲ 우측면

버스승강장 2

디자인 방향	- 태안군 대표 상징물인 안면송 형태를 후면부와 유리창에 적용하였으며 기후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게 박스 형의 폐쇄구조로 디자인되었다. - 지붕부에는 원형의 천창을 설치하여 폐쇄형 구조가 주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3,760 × D1,600 × H2,560mm - 주재료 : 사각철형재, 철판에 규정색 불소수지 도장 - 부재료 : 저철분 강화유리(THK 5mm, 10mm) - 부착지 재료 : 색상별 시트지, 반투명 시트(창문 브랜드 표시) * 외관 규격은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설치 장소의 적합성, 이용 수요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작 자재의 범용 여부에 따라 폭 및 돌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이는 본래 규격을 준수한다.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인 갈회색과 별도의 회색과 녹색을 적용하며 녹색(C80+Y100%)에 해당하는 색채를 적용한다. * 설치가 경과한 이후 구조물의 부분 교체, 도색 및 소량 설치 시에는 인근 정류장 색상 변색을 감안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표기규정	- 태안군 전용서체를 활용하여 정류장 상단 바에 현재 정류장 명칭과 다음 정류장 명칭을 차등되게 표기하고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의 측면부에는 버스승강장 픽토그램과 현재 정류장 명칭을 표기한다. - 문자의 색상은 진한회색(B80%)과 태안군 표준색 중 적색?을 적용하며 전면부 문자는 두께 5mm의 입체형을 이후 명칭 변경에 따른 교체가 용이하게 부착한다.
부속시설물	- 정류장 내부에 설치하는 벤치는 태안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벤치를 기반부를 원형 관재로 교체한 형태를 적용한다.
관리번호	- 해당 버스정류장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전면부 상단바에 정류장 명칭과 차등되게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택시승강장, 벤치, 그늘쉼터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시야를 가리는 각종 표지판



▲ 정면



▲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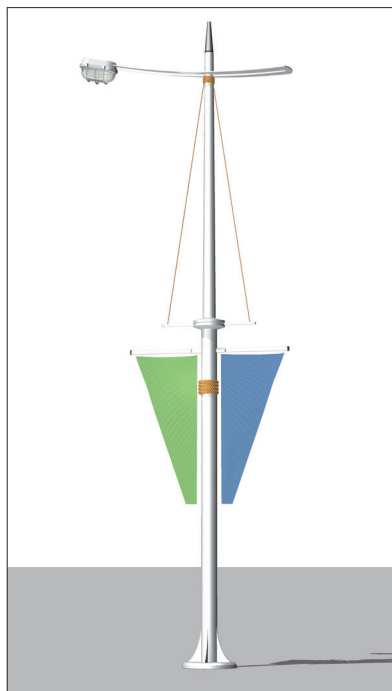
▲ 상단

가로등 1

디자인 방향	- 해양풍의 지역특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마스트 형태의 등주와 노 형태의 브래킷을 주요 구조로 하며 부수적으로 빗줄 요소의 도입, 복고풍의 선박램프를 적용하였으며 돛 모양의 배너로 경쾌한 연출한다. 해안지역에 적합한 유형이다.
규격 및 재질	- 전체 규격 : W3,840 × D912 × H10,000mm - 등주 규격 : 하단 Ø80 × H10,200mm - 등주 규격 : 상단 Ø210~150 테퍼 × H4,250mm - 브래킷 규격 : W3,180 × D518 × H30mm - 등기구 규격 : W660 × D400 × H400mm - 주재료 : 등주 원형철관(Ø200~120mm), 브래킷 원형철관(Ø100~100mm) - 등기구 : 주문 사양, 외형은 선박등(LED등 내장)
색채 규정	- 등주 및 등기구 연회색(B10%), 로프 부분 청동도금 색가 표시
관리번호	- 해당 가로등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높이)에 표찰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보행등, 보안등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대 - 가로수 등 식재와 이격



▲ 평상시



▲ 배너 부착시



▲ 등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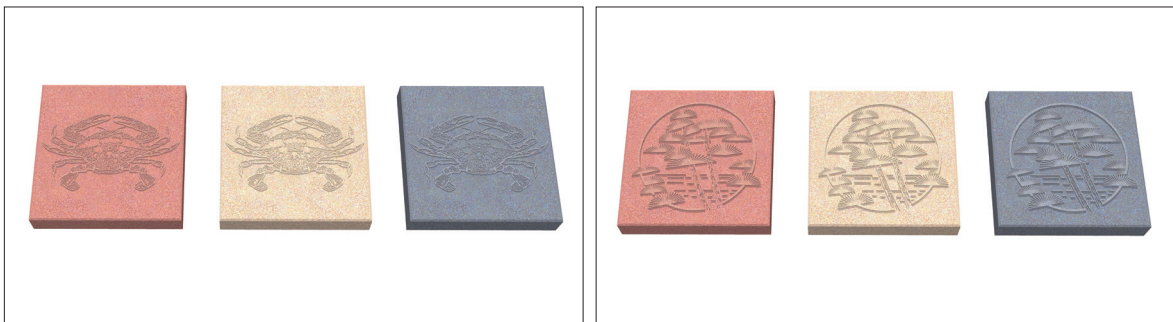
가로등 2

디자인 방향	- 해양풍의 지역특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갈매기 형태의 양측 브래킷 적용.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용도로 사용이 적합하다.
규격 및 재질	- 전체 규격 : W2,500 × D1,000 × H5,150mm - 등주 규격 : 하단 Ø220 × H2,250mm - 등주 규격 : 상단 Ø140mm × H2,700mm - 브래킷 규격 : W2,500 × D50 × H450mm - 등기구 규격 : W210 × D580 × H400mm - 주재료 : 등주 원형철관, 브래킷 철판가공 - 등기구 : 기성 사양(집어등)
색채 규정	- 등주 및 등기구 연회색(B10%)
관리번호	- 해당 가로등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높이)에 표찰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외관이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시설물 : 보행등, 보안등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대 - 가로수 등 식재와 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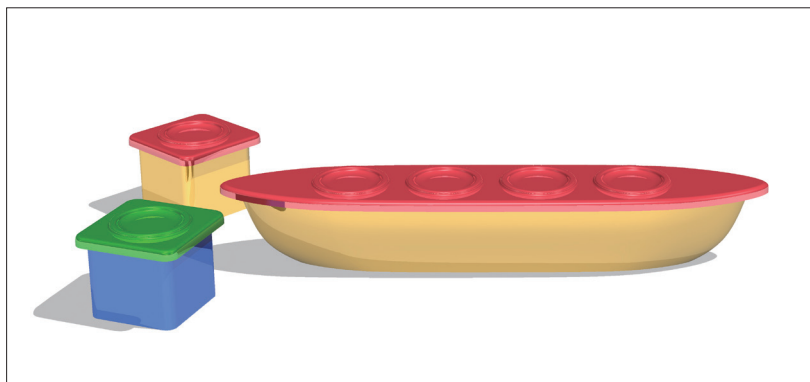
보도블럭

디자인 방향	- 태안군의 대표적인 자원인 모래의 질감을 나타내는 보도블록으로서 표면에 꽃게와 안면송 형상을 부각되게 나타내어 보행의 편의성과 지역 상징성 모두를 충족하는 디자인이다.
규격 및 재질	- 외관 규격 : W300 × D300mm(60T또는 80T) - 주재료 : 인조화강석 유형(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모래 표면 질감) - 표면 형상의 돌출 폭은 5mm 이내
색채 규정	- 일반적인 보도블록의 색상 중 아이보리게열, 핑크게열, 청색계열의 파스텔 톤 색상, 색가 표시
연계시설물	- 포장재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 : 택시승강장, 벤치, 그늘쉼터,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및 보안등, 식재대,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각종 표지판 지주



카약 벤치

디자인 방향	- 해양레저스포츠 카약의 메카로서 태안군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된 카약 형태의 다인용 벤치이다. 앉음판이 서로 떨어졌으며 원색계열의 색상을 채택해 누구나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다.
규격 및 재질	- 다인용 규격 : W2,580 × D500 × H380mm / 일인용 규격 : W500 × D500 × H380mm - 앉음판 규격 : Ø378mm / 주재료 : 폴리프로필렌
색채 규정	- 원색계열의 청색(C100+M65%), 황색(M25+Y100%), 적색(M100+Y90%)을 개별색으로하여 각 부분을 조합하여 연출한다.
파생디자인	- 동일한 콘셉트의 일인용 벤치를 함께 배치한다.
관리번호	- 해당 벤치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기단 측면에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포토존, 가로등 및 보안등 -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물 : 휴지통, 재활용거치대



파도 볼라드

디자인 방향	- 파도 볼라드는 해안지역에 특화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백색 몸통에 상단부는 황색으로 대별되게 표시되는 형태를 지지고 있다. - 몸통 상단부는 파형을 투각하여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의 인지성 및 장소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규격 및 재질	- 규격 : Ø187 × H1,200mm(하단 Ø187~상단Ø134mm/테퍼형) - 내부 철관 규격 : Ø120 × H1,100mm - 주재료 : 외피는 연질의 폴리프로필렌 또는 탄성있는 우레탄, 내부는 원형 철관 - 보조재료 : 황색 투명 수지 - 상단캡 : 반구형태 * 상단캡은 분리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색채 규정	- 몸통색 연화색(K 10%), 황색(Y100+M10%)	
연계시설물	- 기능이 대체되는 시설물 : 안전헬스, 가로화분 - 연계되는 시설물 : 자전거 보관대, 보행등	

안내사인

디자인 방향	- 사인의 판형태를 선박의 노형태 및 서핑보드형태로 하여 해양이미지를 촉진 시키는 디자인으로 해안지역 특화장소에 설치가 적합하다
규격 및 재질	- 사인의 높이를 2,000mm를 기준으로 하여 장소 및 용도에 따라 설치기준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지주의 굵기는 가급적 일관된 굵기를 범용한다. - 외관 규격 : W(가변) × D150 × H2,000mm - 판 규격 : W(가변) × D25 × H1,185mm - 주재료 : 철판(THK 1mm), 원형철관 규정색 불소수지 도장 - 부착지 재료 : 색상별 시트지(문자 표기용도)
색채 규정	- 태안군 시설물 표준 색채를 따른다(도시형 갈회색/해안형 모래색), 색가 표시
표기규정	- 태안군 공공시각이미지 표기 기준에 제시된 문자 색상과 배열 방법에 표시하며 판 색상에 따라 명시도가 분명한 색채로 조합한다.
관리규정	- 해당 안내사인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기내용 맨 마지막에 표시한다.
연계시설물	- 근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 가로등 및 보안등



3.4 시설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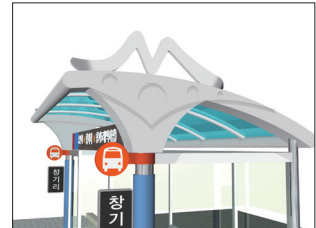
| 시설물 보완 이미지

-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남아있거나 상태가 양호해 계속 상용해야하거나 설치 수량이 미미한 대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수를 하여 사용성 및 동질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표준디자인으로 대체한다.

버스승강장

형태 및 색채

- 현재 구조 및 재료 유지(분해 및 재 구조화 불가), 상단 사인 교체 패널 구조에 흰색 입체문자 부착 (배경과 대조되는 색채), 현재 정류장 명칭 패널은 버스가 진입하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통일



지상기기(배전함)

형태 및 색채

- 일반적인 형태의 시설물로 설치 및 관리주체 표시, 위험 표지, 관리 번호 표찰 등이 제각각 부착되어 있음부착되는 표지 스티커는 용도별 정돈하며 배경색을 시설물 표면색(회색)을 적용하여 표지 내용의 인지가 잘 되도록 함. 캐비닛 하단 표면에 태안군 이미지 모티브가 활용된 스티커 부착
- * 배전함의 방열판 부분은 보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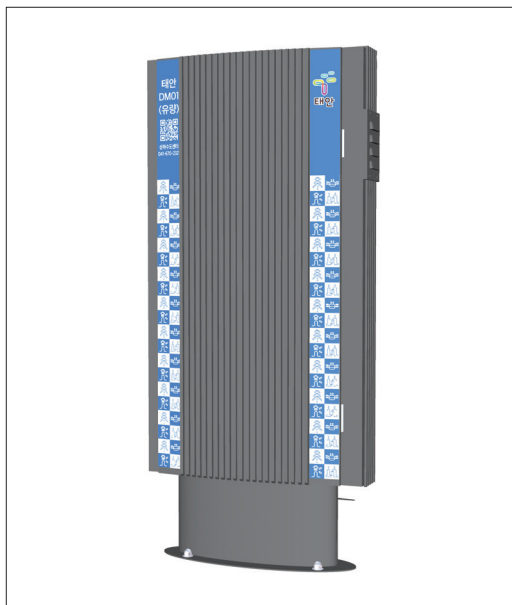


▲ 개선 전

지상기기(분전함)

형태 및 색채

- 가로변 설치에 적합한 기성 제품으로 양면 날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설물 용도 및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있음시설물 색상이 회갈색인데 반해 스티커는 군청색 계열로 조화되지 않아 표면색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스티커로 교체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지상기기는 태안군 시설물 표준색채를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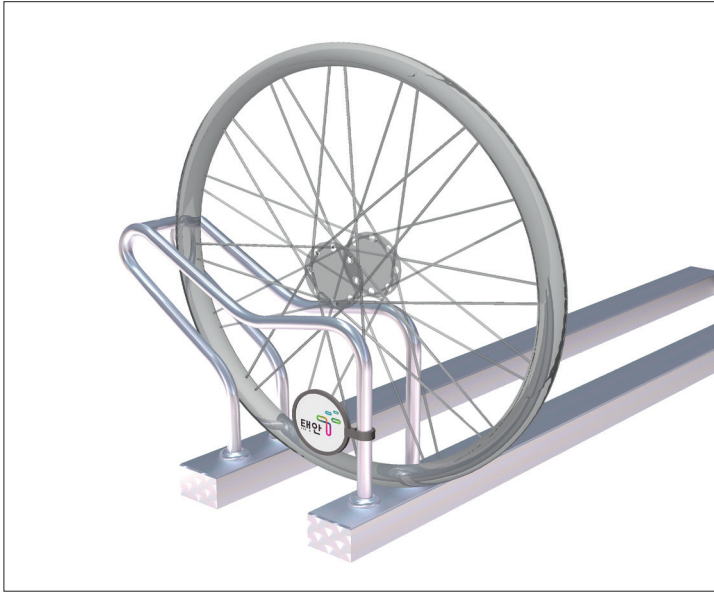


▲ 개선 전

자전거 보관대

형태 및 색채

-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노면형 자전거 보관대를 표준으로 전제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체에 시설물의 존재를 인지하기 쉽게 지자체 표지판을 덧붙여 안전을 향상시킴



▲ 개선 전

흡연부스

형태 및 색채

- 범죄예방을 위해 폐쇄적인 목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개방적인 유리로 변경 불투명한 시트지로 패턴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 기존 철재구조 형태 및 도색은 유지하며 목재 판재 대신 유리(중앙부에 반투과 시트 부착)로 대체하여 내부의 움직임 파악이 가능하게 함
- 표기방식의 체계화로 픽토그램, 한글, 영문 순으로 배치



▲ 개선 전

구명장비보관함

형태 및 색채

- 구명장비보관함은 해안휴양지에 현재 설치된 유형을 표준디자인으로 전제함/캐비닛 표면에 부착한 표지의 정돈이 필요
- 기존 형태 및 구조, 황색 색상의 유지(표준색 적용이 불필요)전면 상단부 및 측면에 보관함 명칭 표시(황색 바탕의 적색 문자 스티커), 사용 방법의 표시는 투명창 하단부에 가시런히 부착하여 내용물 확인과 정보의 가독성을 용이하게 함



자동제세동기

형태 및 색채

- 기기의 캐비닛 색상은 밝은 회색(백색) 계열로 하며 문자는 녹색 단일 색상을 적용한 명칭을 기기 상단부 및 측면에 표시,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일기 쉬운 기기 중앙 하단에 표시



관광지사인

형태 및 색채

- 관광지사인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방문객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설치되는 사인, 목재 및 철재 구조의 중량감 있는 형태로 형태의 복잡함으로 정보전달에 저해되며 경관을 차폐하기도 함
- 충남관광지 사인 형태를 차용하여 두 개의 원형 기둥에 패널을 부착하는 단순한 형태



방향사인

형태 및 색채

- 방향표시 및 시설물 사인은 태안군 상징체계에서 제시하는 사인 형태를 준수하여 실제 제작 및 활용에 맞게 디자인



현수막 게시대

형태 및 색채

- 현수막 게시대는 불필요한 장식과 정보를 최소화하여 정보전달에 용이한 형태로 계획



키오스크

형태 및 색채

규격 및 설치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지주 및 표지판 색채는 태안군 공공디자인 시설물 색상에 따라 도시형과 해안형으로 구분하며 사용서체는 태안군 지정서체로 한다.



04

부록

4.1 회의록

4.2 참고문헌

4.1 회의록

| 추진경과

2019.07.23.	착수보고회 관련 업무협의 1차
2019.08.13.	착수보고회 관련 업무협의 2차
2019.08.22.	1차 현장조사
2019.08.29.	착수보고회
2019.09.30.	2차 현장조사
2019.10.29.	3차 현장조사
2019.10.30.	4차 현장조사
2020.01.23.	과업협의
2020.02.11.	5차 현장조사
2020.02.14.	과업협의
2020.04.08.	군수간담회 사전협의
2020.04.17.	군수간담회
2020.05.13.	CI관련 군수보고회
2020.06.01.	과업협의
2020.08.01~10.	서면자문
2020.08.13.	중간보고회
2020.09.08.	태안군 부서워크숍
2020.11.04.	추가 현장조사
2020.12.02~08.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2021.02.02	최종보고회 사전협의
2021.05.26.	최종보고회

| 착수보고회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2019.08.29 14:00~15:30 _ 태안군청 상황실
참석자	태안군_가세로 군수, 허재권 부군수, 도시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외 충남연구원 연구진 5인

구분	내용	조치계획
태안군수	- 과업 성격이 콘셉트 설정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제안이 없어 제안하기 어려움, 진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발주부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요청 - 군 이미지 및 C.I(심벌) 제시 요청/강력한 전진, 웅비 등 콘셉트에 맞는	- 군이미지 체계에 대한 제안은 태안군 정체성 및 비전에서 도출되는 성격과 현 체계를 대비하여야 하며 제안이 가능하도록 시행
태안군 부군수	- 현재 진행되는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군수님 이하 실과장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기회가 필요함	- 관련 사업의 진행 고찰이 현황조사에 포함됨. 교육방식을 택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준비 가능
주무과장	- 현황조사 시 새로운 슬로건 적용 등 자료의 명확성 요구(현행화), 색채계획은 군 경관계획 기준을 따라해야 함. 권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성은 유지하되 태안군의 차별화가 필요	- 변경된 자료는 교체, 색채는 경관계획 틀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이해하거나 실질적인 활용이 되도록 적용 시 관용도의 확대하고 시설물 등에는 지정 등 활용방식에 초점. - 권역구분은 경관에서 제시된 권역구분과 공공디자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권역으로 검토하려함 - 색채 틀은 유지하며 실질적인 이해와 활용 방안 첨가, 권역 구분 재검토(타 지역 사례)
문화관광과장	- 진흥계획에서 수립된 기준(가이드라인)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의 조성 방향과 상이(충돌)할 경우, 현재 군 CI에 제시된 사인, 색채 등 기준과 상이할 경우 적용은? - 관문만들기 사업의 포함 여부, 군정 목표 및 슬로건이 포함되어야 함	- 진흥계획에 기준하여야 하며 다른 계획 및 기준에서 미흡하거나 시대상 안 맞는 부분은 개선안을 제시할 것임. 가이드라인은 폭 넓은 활용 범위 제시로 이해하면 됨. 관문만들기 사업은 진흥계획(마스터플랜 및 특별과제)에 포함됨, 군 CI에 제시된 관련 기준 검토

■ 중간보고회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2020.08.13 14:00~15:30 _ 태안군청 상황실
참석자	태안군_가세로 군수, 관련실과장 자문위원 4인 : 박봉철, 박창완, 조희정, 박인숙 충남연구원 연구진 2인

구분	내용	조치계획
자문위원	- 충청도 15개 시군의 차별화의 범주, 현재 표준디자인은 차별화가 부족함 색상 또한 너무 일반적임 - 해외사례가 부족함. 예시사례를 많이 붙였음 좋겠음 - 태안의 읍면, 마을단위를 똑같이 적용 할 것인지, 사업들의 연동상황을 고려 - 34p 픽토그램 88,92 올림픽 디자인 패턴이 직선에서 곡선화 됨 태안만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차별화한 픽토그램이 필요함 - 46p 버스정류장에 다양한 유연성있는 형태의 태양광을 적용하면 좋겠음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 - 맨홀도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유연성있는 제시를 해주면 좋겠음	- 표준디자인의 차별성은 CI의 적용과 함께 검토하겠음 - 태안군의 현실에 맞는 적용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례조사를 추가하겠음. - 픽토그램은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제시 - 맨홀은 태안군 실정을 참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추가 여부 논의
	- 신호등은 제외인가? 내포, 세종시의 신호등이 색다르게 보여서 바닥의 매립사인, 조명 등이 색다르게 느껴짐	신호등은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에 제외된 사항으로 미반영
	- 자전거거치대, 표시물 말고는 크게 변화될 것이 없어서 큰 틀에서는 15개 시군의 느낌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으나 공원, 도로의 펜스종류가 몇가지 더 예시로 나오면 좋겠음	다양한 예시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실과장 의견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첨가가 되어야 함 - 관련 실과의 협조로 실질적으로 만들고 계획하고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필요 무엇이 들어가야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가 검토하고 각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설 항목이 적용될수 있도록 반영 - 관련실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 이 영역서로 현재 만들어진 CI, BI를 모두 규정하는 것인지? 지킴서 역할이면 가로등, 승강장 등 별도 디자인이 나와야하는지? - 시각적인 부분이 현재 복잡해 보임 63p 프로세스대로 관광안내판을 만들려면 심의. 신청,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현장에 적용이 되는가?	시설물 모든 것이 심의대상이 아님 조례에 심의대상이 나와있음 현 표준디자인은 계획성 있게 반영하자는 의도이며 조례에 나오지 않은 사항들의 계획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였음



I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서면심의
	참석자	심의위원 12인

구분	내용	조치계획
심의의견	1-1) 강력하고 차별화된 색채, 형태 적용요망. 태안만의 차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색상, 캐릭터, 형태 등 타 시군과 차별성이 있어야 함 2-1) 공공시설물(가로등, 버스승강장, 벤치, 소형세면대, 흡연부스, 재활용 거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화분대, 벤치, 그늘막, 경계사인, 관광사인, 현수막 거치대, 방향사인, 관광안내표지판 등의 재질과 컬러 및 구조의 형태 등을 통일화, 단순화 할 것 2-2) 현재 공공시설물 구조에 사용되고 있는 컬러는 갈회색, 바다색, 파란색, 옐로우, 빨강색, 메탈색, 아이보리, 등 너무 다양한 컬러의 사용으로 통일성이 부족하고 버스승강장, 흡연부스는 비슷한 구조물 형태로 디자인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해줄 것. 2-3)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형태나 컬러들이 올드해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던하면서 세련미를 부여한 디자인으로 수정 보완할 것 2-4) 경계사인 색상은 원색계열은 배제하고 무채색 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포인트색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농어촌 가로등 전주형 및 폴대형은 시설 유지 보수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시내구간 대단위 가로등 설치 시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3-1)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도 중요하고, 태안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되도록 할 것 3-2) 광장에 식재하는 조경의 경우 태안에 적합한 수종 제시가 필요. 3-3) 잔디포함 포장재의 경우 투수율에 대한 제시 필요 3-4) 공원에 계단 및 경사로의 설치는 경사로의 경사도 제시가 필요하며, 공원의 고저차 심한 경우(예를 들어 산)의 예외안에 대한 표기 필요 3-5) 디자인 제안 중 버스승강대에 사용한 주황과 녹색의 배열과 안전펜스의 색상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6) 디자인분야 전문가 보강 및 전문가 아닌 주민들의 시선에도 검토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3-7) 보행로 :보행환경 개선과 경관개선을 위한 적절한 가로수 식재 3-8) 방음벽 : 투시형이 아닌 방음벽은 가급적 전면과 후면 양쪽에 덩굴식물 차폐 3-12) 해수욕장 : 공공주차장에 그늘 식재 3-13) 자동차 주행 중 불량경관은 일부분이라도 차폐가 가능하도록 가로수 식재	1-1) 태안군만의 차별성(강력하고 차별화된 색상, 캐릭터, 형태 등)은 특화가로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여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지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꽃과 바다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상징성을 나타내며 향후 새로운 관광브랜드 개발 완료시 교체 2-1,2,3) 공공시설물은 부서의견을 바탕으로 태안군의 지역적 특성,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나 표준디자인 이미지에서 색상과 형태를 통일화하고 모던한 형태로 변형하겠음 상위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관광표지 등은 제외하고, 흡연 부스 등 외관 변경 사항은 표준디자인이 아닌 개선 디자인으로 변경하겠음 2-4) 경계사인은 태안군 CI 매뉴얼의 연계방안으로 랜드마크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포인트 색채의 부분적으로 변경하겠음 2-5)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여 설치 환경을 반영하겠음 하여 이행하겠음 3-2, 3-3, 3-4, 3-7) 조경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관계계획에서 1차적으로 다루고 있어 세부사항을 제외한 포괄적인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추가 명시하도록 하며 설계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설치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겠음 3-5) 시설물 색상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재 수정하겠음 3-6) 사용자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민 대상의 설문 조사,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 등을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전문가 보강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3-8, 3-12, 3-13) 그늘 식재 조성, 차폐 기능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기본 방향인 개방성과 대비되어 개방감 있는 차양시설과 환경개선 방안 등을 추가 검토

최종보고회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2021.05.26. 16:00~17:30 태안군청 소회의실
참석자	태안군 :가세로 군수, 관련 실·과장 자문위원 2인 : 광봉철 교수, 사희민 교수 충남연구원 : 연구진 2인

구분	내용	조치계획
자문위원	- 각 부서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계획을 현실화시켜야 함 - 군수 혹은 부군수 산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디자인 심의 방법 중 서면심의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와 같은 디자인 심의 및 의결기구 관련 내용 가이드라인 내 수록 완료
	-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주체와 디자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일관적인 운영이 필요함 -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함	-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를 위한 충남연구원 및 태안군 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
실과장 의견	-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 및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디자인 적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방향과 통일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 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 - 지리적 조건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한 내용 수록 - 기관마다 다른 특성으로 디자인 방향의 통일은 무리되어 미반영



4.2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자료

경기도, 2011,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201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2,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군산시, 201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주시, 2013,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주시, 202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김해시, 2018,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논산시, 20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7,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령시, 202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2017, 서해안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충청남도, 2018,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201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태안군, 2014, 2014~2023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
 태안군, 2015, 경관계획
 태안군, 2016, 해수욕장 이용 및 관광활성화 방안
 하남시, 2018,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태안군, 2020,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 관련 법령

「경관법」, 국토교통부, 2019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9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21
 「도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1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201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1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권고 기준」, 환경부, 20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21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충청남도, 2017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2015
 「태안군 경관 조례」, 태안군, 2021
 「태안군 공공디자인 조례」, 태안군 2021

태 안 군

장 경 후 산업건설국장
최 병 구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장
김 미 선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도시마을팀장
이 병 삼 산업건설국 신숙민원처리과 주택팀장
장 혁 진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주무관
주 승 일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도시마을팀 주무관

연구수행기관 (재)충남연구원

연구책임

권 영 현 수석연구위원

연구간사

신 선 하 연구원

한 승 석 연구원

연구진

이 충 훈 수석연구위원

임 준 홍 선임연구위원

백 운 성 연구위원

조 봉 운 연구위원

오 병 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제 수 진 연구원

조 윤 설 연구원

최 정 현 연구원

외부연구진

이 형 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문위원

곽 봉 철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사 희 민 한남대학교 교수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발 행 처 태안군

발행부서 주민공동체과

발 행 일 2021. 09.

인 쇄 처 삼성애드피아

